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313-01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 인증심사 · 관리 방안 연구

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연구책임자 : 김 태 연 (단국대학교)

연 구 원 : 김 상 태 (단국대학교)

김 태 영 (경상국립대학교)

유 도 일 (서울대학교)

이 상 호 (영남대학교)

조 완 형 (단국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 혜 원 (단국대학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 인증심사·관리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연구 기관: 단국대학교

연구 책임자: 김 태 연

요 약

□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19년 8월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식품안전 중심에서 농업환경의 건강 중심으로 변경됨(법률 개정, 2020.03)에 따라 인증의 방향도 안전성 분석 중심에서 환경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인증은 재배 전 과정을 확인하나, 취소의 대부분이 농약검사 결과로 결정되어 인증기준에 농약검사가 주된 요인이라 인식
- 또한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증 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확산
 - 잔류농약검사는 인증 적부 판단 등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과정 평가가 소홀해 질 수 있고,
 - 적합/부적합의 이분법적 평가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평가를 통해서 인증 사업자가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친환경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업환경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환경가치 중심 인증체계' 도입이 필요
 - 특히, 친환경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환경보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를 통해 인증 심사기법 개편, 환경 위험평가 제도 도입, 환경보전 활동 확인,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 제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이 필요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방안 마련 및 도입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정착 방안 마련에 활용

□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산물 인증 세부 규정 및 기존 연구문헌 등을 활용하여 검토

□ 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비교

- 주요 국가(미국, EU, 영국, 일본 등), 기관(CODEX, IFOAM, ISO)의 인증체계, 활동규정 분석
 - 유기농산물 인증 체계,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관련 활동, 생산자의 환경보전 활동 규정, 생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인증 부적합 처분 규정 및 심사원의 권한 규정 등을 분석

□ 환경가치 중심 인증심사·관리체계 도입방안 제안

-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를 외국의 규정 등을 참고로 ‘환경가치 중심 인증’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의 목적에 환경가치 증진에 대한 부분과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친환경농어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관리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세부 인증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생산단계별 “생물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언급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 표본을 추출하여 농약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
- 인증 심사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및 토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과정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환경자원’이 적절하게 생산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의 위험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따른 점검 방식을 도입, 잔류농약 검사대상은 사전에 제시된 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함. 우선 위해요인에 따른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 표본을 선정하며 추진함
- 영농기록은 농촌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토양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 및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의 활동을 농업인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재배과정에서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농업인의 자율적인 관리 대책에 추가하여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및 인증기관 등에 알리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비의도적인 상황별 적용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그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시 국가별 적용기준을 참고하되, 나라별 재배환경과 여건 등이 다양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인증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발생 원인별 처분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사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절차를 마련함
- 환경가치 중심 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심사원들이 농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현장 심사에서 심사원이 생산과정에서 농업인의 환경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
-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기준과 방법은 외국의 허용기준, 점검방식 등을 비교하여 국내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

차 례

| | |
|----------------------------------------|-----|
| I. 서론 | 1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 II.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9 |
|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현황 | 9 |
|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세부 규정 검토 | 18 |
| 3.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한계 | 54 |
| 4. 친환경농산물 과정중심 인증으로의 전환 주장 검토 | 57 |
| 5. 과정/결과 중심 논쟁의 한계점 | 66 |
| 6. 인증방식 관련 개념 검토 | 67 |
| 7. 인증방식 개념 검토의 시사점 | 73 |
| III. 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비교 | 74 |
| 1. 유기농산물 인증 체계 비교 | 74 |
| 2.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 관련 활동 규정 | 88 |
| 3. 생산자의 환경보전 활동 규정 | 112 |
| 4. 생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 114 |
| 5. 인증 부적합 처분 관련 규정 | 122 |
| 6. 심사원의 권한 관련 규정 | 132 |
| 7. 기타 규정 | 142 |
| 8. ISO/EC 1765(ISO 17065) 분석 | 145 |
| IV. 환경가치 중심 인증 심사·관리 체계 도입 방안 제안 | 157 |
| 1. 기본 방향 | 157 |
| 2. 주요 인증 관련 규정 개정 방향 | 158 |
| 1) 인증체계의 관점 개선 | 158 |

| | |
|------------------------------------------|------------|
| 2) 인증 체계의 지향 목적 명시 필요 | 161 |
| 3) 환경 관련 기준 및 잔류 농약 검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162 |
| 4)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를 고려한 인증 승인 기준 개선 | 170 |
| 5) 위험평가 체계 도입 방안 | 174 |
| 6) 영농 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180 |
| 7) 비의도적인 요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183 |
| 8) 인증 부적합 처리 방안 개정 필요 | 185 |
| 9) 심사원의 권한 강화 | 189 |
| 10) 잔류 농약 기준 개정 필요 | 191 |
| | |
| V. 맺음말 | 193 |
| | |
| 참고 문헌 | 195 |

표 차례

| | |
|-----------------------------------------------------|----|
| <표 2-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9 |
| <표 2-2> 인증신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19 |
| <표 2-3> 인증신청 검토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1 |
| <표 2-4> 인증기관 인증심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3 |
| <표 2-5> 인증기관 인증심의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4 |
| <표 2-6> 인증기관 인증결정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6 |
| <표 2-7> 인증기관 인증문서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8 |
| <표 2-8> 인증기관 사후관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29 |
| <표 2-9> 인증 변경사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31 |
| <표 2-10> 인증 종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관련 ISO 17065와 비교 | 33 |
| <표 2-11> 인증기관 법인요건 관련 ISO 17065와 한국 운영규정 비교 | 35 |
| <표 2-12> 인증기관의 배상책임 및 재정 관련 ISO 17065와 비교 | 36 |
| <표 2-13> 인증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약 관련 ISO 17065와 비교 | 38 |
| <표 2-14> 인증 활동의 공정성 관리 관련 ISO 17065와 비교 | 41 |
| <표 2-15> 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운영 관련 ISO 17065와 비교 | 43 |
| <표 2-16> 인증기관 비차별조건 관련 ISO 17065와 비교 | 46 |
| <표 2-17> 인증기관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ISO 17065와 비교 | 47 |
| <표 2-18> 인증조사관 역량관리 요건 및 이력관리(ISO 17065) | 48 |
| <표 2-19> 한국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49 |
| <표 2-20> 인증기관 인적자원 관련 ISO 17065와 비교 | 50 |
| <표 2-21> 인증기관 내부자원 관련 ISO 17065와 비교 | 52 |
| <표 2-22> 인증기관 외부자원 관련 ISO 17065와 비교 | 53 |
| <표 2-23> 과정/결과 기반 방식의 특징 | 67 |
| <표 2-24> 이행과 결과 모니터링 방식의 주요 특성 | 71 |
| <표 3-1> 영국 정부 승인 유기농 인증 기관 | 79 |
| <표 3-2> IBS 및 IAC 세부조항 및 내용 | 86 |
| <표 3-3> 유형별 유기농 전환 기간 | 92 |

| | |
|-------------------------------------------|-----|
| <표 3-4> 투입재별 사용기준 | 94 |
| <표 3-5> 가축분뇨 종류별 질소 함유량 | 95 |
| <표 3-6> 유기농업에 허용된 작물보호제 목록 | 96 |
| <표 3-7> 유기농업에 허용된 미생물, 기타물질 목록 | 96 |
| <표 3-8> 격부 규정의 내용 | 108 |
| <표 3-9> 부적합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 | 127 |
| <표 3-10> IFOAM 인정 기준의 주요 내용 | 138 |
| <표 4-1>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세부사항 중 농약 관련 내용 | 164 |
| <표 4-2>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일반기준 | 170 |
| <표 4-3>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결과 행정처분 기준 | 171 |
| <표 4-4> 인증기준 적합여구 판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175 |
| <표 4-5>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서류의 종류 | 180 |
| <표 4-6> 경영관련 자료 기입 내용 | 181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인증 심사 절차 개요 | 12 |
| <그림 2-2> 인증부적합 행정 처리 절차 개요 | 17 |
| <그림 3-1> EU의 유기농산물 생산 인증체계 | 74 |
| <그림 3-2> 미국 USDA 유기농 생산 관련 법규 및 제도 | 82 |
| <그림 3-3> 미국 USDA 유기농 통합 DB | 84 |
| <그림 3-4> 인증신청에서 인증까지의 흐름도 | 126 |
| <그림 3-5> 영농기록 디지털 솔루션 예시 | 144 |
| <그림 3-6> 영농기록 전산화 | 145 |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서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음.
 - 현재와 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제17조에서 도입되었음.
 - 이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규정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특히,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역할을 강조한 초기의 환경농산물 표시제에서 벗어나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으로 정착하게 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품질인증제도의 특성상 친환경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도 최종 생산물인 농산물의 규정 적합도가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친환경농업의 원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KBS의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에 대한 보도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양과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음.
-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는 다소 제고되었으나, 친환경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친환경농산물 규정 위반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생산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
 - 즉, 공동방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에 유입된 농약성분에 의해 토양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와 이에 대한 인증취소가 내려지면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별도 처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한편, 2019년 8월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중심에서 농업 환경의 건강 중심으로 변경됨(친환경농어업법 시행, 2020.08)에 따라 인증의 방향도 기존 안전성 분석 중심에서 환경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친환경인증은 재배 전 과정을 인증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있으나, 인증취소 건의 대부분이 농약검사 결과로 결정되어 인증기준에 잔류농약검사가 주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증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됨
 - 생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인증의 적합 여부 판단 및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 효율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과정 평가가 소홀히 되어 농업환경의 개선을 막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농업인 단체의 문제 제기.
 - 생산자는 현재 국내 인증기준이 생산물 분석 결과에 의존한다고 느끼게 되어 국제인증에서 적용하는 생산과정의 친환경성 평가와 같은 방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
 - 이와 함께 적합/부적합의 이분법적 평가 규정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평가를 통해서 인증사업자가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그러므로 친환경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업환경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환경가치 중심 인증체계'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친환경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환경보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인증 심사기법 개편, 환경 위험평가 제도 도입, 환경보전 활동 확인,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 제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재배과정에서의 환경보호 활동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구축을 위한 해외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 심사기법, 환경 위험평가 제도, 법령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인증체계 개편 시 인증의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의 기준 충족 필요
 -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2014), 한·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2015) 기준 충족 필요
 - 특히, 선진국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내용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적용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와 국내의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농가의 환경관리 활동과 노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됨.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정착 방안 연구

-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 농업인 및 소비자 의견수렴, 국내외 자료수집을 통한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 진단
 - 외국의 인증제도 검토
 - 인증제도,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비교·분석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제도’ 개념 정립, 도입 필요성 검토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
 - 생산분야
 - 인증기준별 농가활동 제시

- 인증 농가 위험평가 체계 도입 및 관리
- 생물 다양성 확인 방법
- 비산 등 비의도적인 요인 관리 방안

○ 심사과정

- 농가 활동별 심사 절차·방법 연구
- 심사보고서 양식 개선 등

○ 소비분야

-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별 홍보 방안 등

○ 제도적 개선 분야

- 비산 등 비의도적 요인으로 인한 인증기준 위반시 처분 개선
- 위험평가 제도 도입시 인증농가 사후관리 방안
- 단체인증 개선 등 법령 정비 사항 발굴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시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에 따른 적정 인증심사비 분석, 농가 의견 수렴

○ 농가의 의무활동 미이행시 상황별 적절한 행정처분 제시

○ 소비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연구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정착 방안 연구

○ 농가의 '환경가치'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인증심사원 심사역량 강화, 농가 영농 기록 부담완화 방법 등 검토

2)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현장 방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식으로 수행됨.

□ 문헌연구

-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문헌 검토
 - 미국, EU, 일본, CODEX, IFOAM의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문헌 검토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 문헌 검토

□ 현장 방문 조사

- 인증제 관련 기관 방문 조사
 - 인증기관, 농관원, 농진청 등 인증제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 면담
 - 친환경농업 단체 및 농업인 면담

□ 전문가 회의

-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와 세미나 개최
 - 기타 토론회 및 학회 발표

3) 연구진 편성 방안

- 연구책임자 : 김태연 교수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 연구원

- 김상태 박사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 김태영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유도일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이상호 교수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조완형 박사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 연구보조원

- 이해원 조교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 역할분담

| 역할 | 성명 | 담당 분야 | 공동업무 |
|-------|-----|------------------------------------------|-------------------------------------|
| 연구책임자 | 김태연 | - 연구총괄, EU 사례 - 인증 심사 및 관리 방안 제안 총괄 | - 관련문헌 정리 - 정책방안 도출 - 현장조사 참여 |
| 연구원 | 김상태 | - 친환경 인증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 친환경 인증체계 관리 방안 | |

| | | |
|-------|-----|-----------------------------------------------|
| | 김태영 | - CODEX, IFOAM 인증 제도 사례 - 인증 심사 및 관리 방안 제시 |
| | 유도일 | - 미국 사례 - 인증 심사 및 관리 방안 제시 |
| | 이상호 | -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인증 심사 및 관리 방안 제시 |
| | 조완형 | - 일본 사례 - 인증 체계 관리 및 홍보, 교육 방안 제시 |
| 연구보조원 | 이혜원 | - 연구비 관리 - 기타 연구 관련 업무 보조 |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4차 산업혁명 및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관련 기술을 친환경농업에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의 탄소중립 기여 및 생태계 보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 참여 농가와 농지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과 관련된 연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협력적 메카니즘을 확산시켜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
- 농촌지역 소규모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농업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소비자 주도의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체계를 형성하여 국민 식생활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의 환경 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 자원(농지보전, 농업인의 기술 유지 및 발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활용

II.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현황

1) 인증제도 개요

-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 및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은 친환경농업법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종류별 주요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지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업법과 그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보다 세부적인 인증기준 및 인증요령,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은 농관원장이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로 위임되어 있음
 - 위임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하 ‘인증요령’이라 한다.)과 「친환경인증기관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하 ‘인증기관 규정’이라 한다.) 등 2개의 고시를 운영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법과 시행규칙, 농관원장이 운영하는 2개의 고시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을 위한 각 제도별 업무 소관은 표 1-1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으로 구분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음

<표 2-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주요 항목 | 농림축산식품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 친환경농업법 | 시행규칙 | 인증요령, 인증기관 규정 |
| 인증기준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 등) |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53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제5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별표 14]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 인증요령 - 농관원 고시제5조(인증대상) [별표 1 의2] 작물별 생육기간 제6조의2(인증기준)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제19조(교육기관)-의무교육 제20조(교육 방법 등) |
| 인증신청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 제4조(인증신청 안내) /제5 |

| | | | |
|---------------|---------------------------------------------------------------------|--------------------------------------------------------------------------------------------------------------------------------------------------------------------------------------------------------------------------------------------|------------------------------------------------------------------------------------------------------------------------------------------|
| 심사·승인 | 신청 및 심사) | 제41조(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의 신청) 제55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 조의2(인증의 신청)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제7조(인증심사) [별표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
| 인증유효기간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
| 인증자 준수사항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
| 인증표시 |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36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축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등) |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제59조(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등) | 제12조(인증품의 표시)[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 |
| 부정행위 금지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 |
| 인증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 제45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46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별표 9] 인증취소 등 세부기준 및 절차 |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제15조(조사결과 조치) [별표 5의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8조 (인증품 회수 및 폐기) [별표 7] 회수·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 |
| 인증기관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축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10] 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57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58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 업무의 위탁)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인증기관규정 - 농관원고시 제4조(지정 신청) 제5조(지정기준) [별표 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제6조의2(지정심사 평가 업무 위탁) 제6조(지정심사)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별표 2]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 방법 |

| | | | |
|-------------------|---------------------|-------------------------------------------------------------------------------|-----------------------------------------------------------------------------------------------------------------------------------------------------------------------------------|
| | |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
| 인증조사 관 교육 |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 제15조(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별표 4] 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세부사항 |
| 인증기관 등 준수사항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 인증기관 사후관리 |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 49조 (인증 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 제11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1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제17조(인증기관의 평가기준) [별표 5]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세부사항 제18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별표 6]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9조(인증기관의 등급 결정 등) 제20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
| 인증기관 휴업·폐업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제4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별표 13]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2조(인증기관 행정처분) |
| 승계 | 제33조(인증기관 등 승계) | 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 |

2) 인증심사 절차¹⁾

□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생산, 출하과정 조사, 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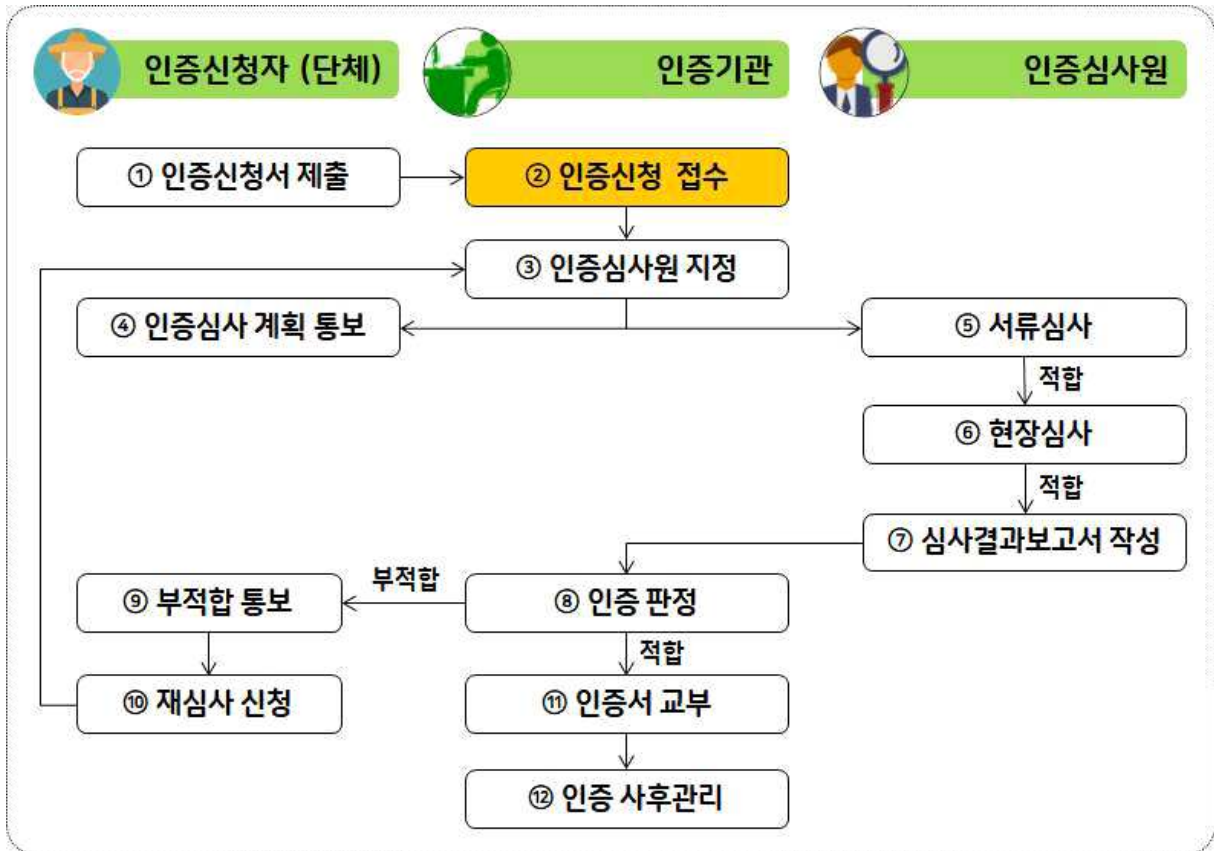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준적합 여부를 심사, 인증 여부를 통보해 주고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
-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그림 2-1 > 인증 심사 절차 개요



□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 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등
-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세부 인증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공시기준(시행규칙 별표17) 참조

□ 인증 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인증기관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2)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3) 인증수수료

- 규칙 제90조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표준 심사 관리비 기준 명시

□ 인증 심사

(1)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2)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시행규칙 제13조 및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에 명시

□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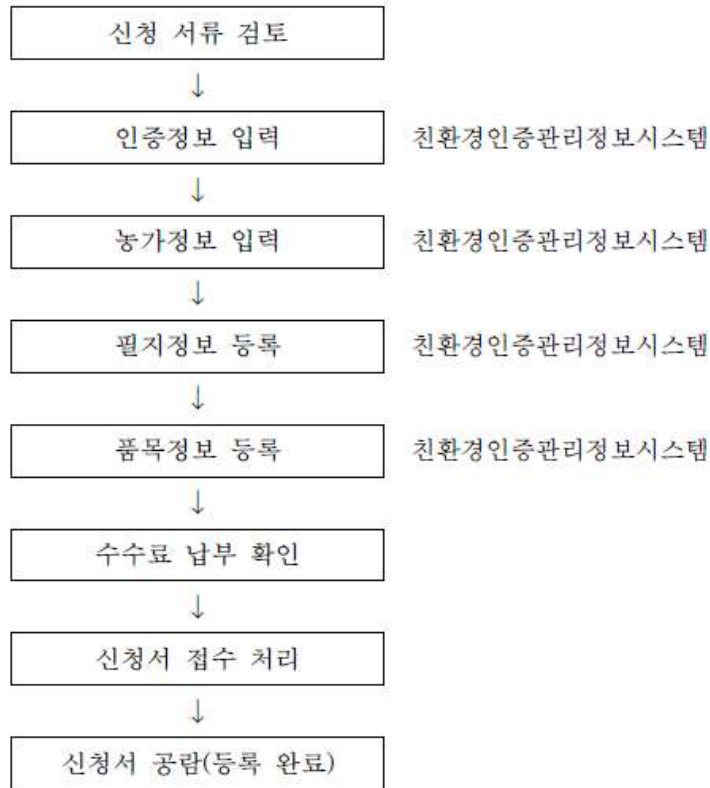
(1)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규칙 제11조의 별표 4)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 인증신청 접수 절차



(3)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1)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
- 해당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 생산, 출하과정 조사

(1)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2) 조사 항목

- ①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 ② 재배관리 상황 조사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
- ③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유입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한다.
 -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④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 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 ⑤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 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 ⑥ 수확후 관리 상황 조사
 -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 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 ⑦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 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 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⑧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 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3)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 시판품 조사

(1)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써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 이해관계자가 조사요청한 인증품

(2)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 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3)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 방법
 - * 포장재 규격 및 표시사항 : 포장재 크기 및 외부표시사항 준수여부 조사
 - * 잔류농약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예규 제127호)에 따름

(4)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시 말소
-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 산지에서는 생산자 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 행정 처분

(1) 행정처분 대상

- ① 생산·출하과정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 ② 시판품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2)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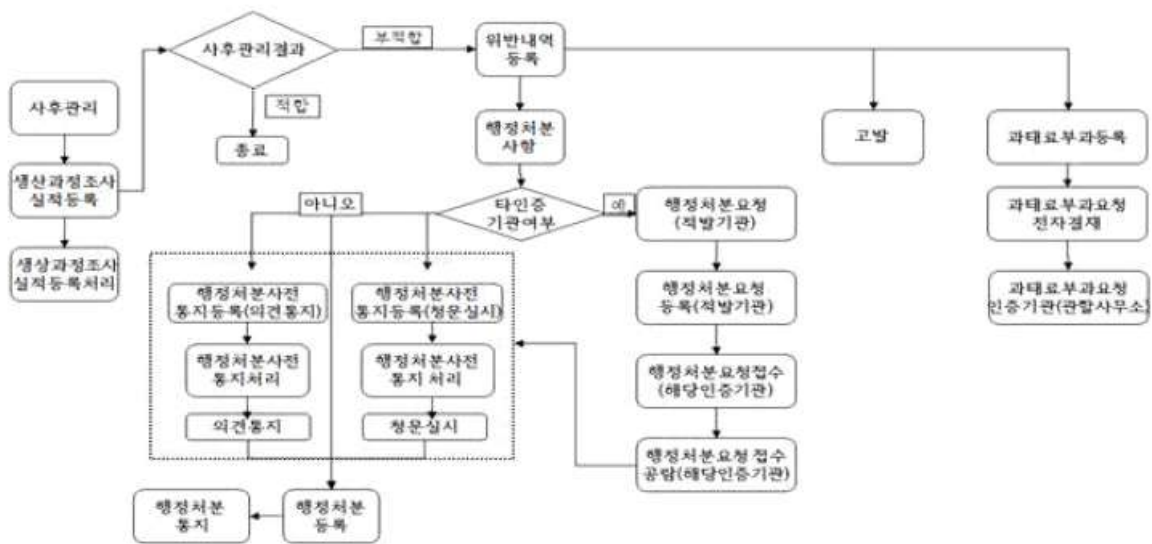
- ① 법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1조 등

②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인증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

- ① 인증취소 및 인증표시 사용정지를 통보
 - 유통 중이거나 사용 중인 포장재의 인증표시 및 "인증" 문자를 말소
- ②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
- ③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 철거

<그림 2-2 > 인증 부적합 행정 처리 절차 개요



□ 고발대상 및 처분기준(법 제60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명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등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사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사업무를 한 자 등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법 제62조)

- (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인증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 (3)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등
- (4)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등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2 참조)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세부 규정 검토

1) 인증 신청

□ ISO 17065(ISO/IEC, 2012)

- ISO 17065는 국제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분야별 국제 표준 중 하나로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국제 표준임.
- ISO 17065 표준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인증 표준 및 기타 규범 문서의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기농 인증분야에서도 인증기관이 유기농 제품을 인증하고자 할 때 그 인증

기관의 인증 활동이 공정한지와 인증 역량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규범으로 ISO17065 국제 표준이 활용되고 있음

-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인증기관이 획득해야 하는 정보는 이후 진행
 되는 인증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함
- 인증 신청인은 인증 신청과 관련되는 규정의 요구사항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인증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생산하는 곳이 신청인의 사업장과 다른 경우에도 그 외부위탁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인증 조사 또는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인증품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실제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는 이러한 외부위탁 공정이 누락되어 인증
 적합성 평가가 미흡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친환경 인증벼로 인증받고 쌀을 인증품으로 판매
 하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인증 신청 시 쌀에 대한 위탁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쌀 도정과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누락되기도 함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인증 평가·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인증기관이 신청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표 2-2> 인증 신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 인증요령(제5조의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위해 인증기관은 관련 인증 규범에 부합하는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 다음은 필요한 정보의 예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표준 또는 기타 규범 문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생산공정 및 운영의 중 요한 사항, 법적 의무를 포함한 신청인의 일 반적인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② 규칙 별표 4에 따른 경영관련자료 ③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④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 단체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활동, 실험실 또는 조사 시설을 포함한 인적·기술적 자원, 모기업에 속한 경우 기능·관계가 인증 신청 분야와 관련된 신청인에 관한 일반 정보 • 요구 사항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청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부위탁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 • 최초 평가 및 감시(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인증된 제품이 생산되는 위치 및 해당 위치의 담당자) | <p>작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신청서는 단체별 생산관리자가 작성 ② 인증품 생산계획서, 제조·가공, 취급계획서, 경영관련 자료는 구성원별로 작성 ③ 버를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에 대한 경영관련 자료는 생산관리자가 주요 재배시기에 연 4회 이상 구성원별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④ 단체 공동 운영 시 관련 자료 통합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재배품목의 특성에 따라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

2) 인증신청 검토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처리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신청 검토 단계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인증기관은;
 - ① 신청인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인증활동 수행에 충분한지,
 - ②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할 인증기준에 대하여 신청인과 인증기관 사이에 이견은 없는지,
 - ③ 신청받은 내용이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범위에 해당하는지,
 - ④ 신청인의 인증조사과정에 대한 준비, 인증기관의 자원 등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있는가를 인증기관은 확인하고 인증 신청인과 확인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인증 조사를 수행하는데 신청받은 품목, 규범문서(인증기준), 인증제도 등이 경험이 없는 분야인지를 파악하여 인증 조사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증 경험이 없는 분야라도 축적된 지식에 의하여 충분히 인증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봄.

- 이러한 인증 활동에 대한 충족 대상은 제품, 인증제도, 인증기준, 관련 지식, 담당 직원의 역량, 시험설비 등으로 인증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야로 판단되거나 인증기관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않아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건이 기존에 부여한 인증과 관련되거나,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과 관련되어 인증조사 단계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ISO 17065의 인증 신청단계에서의 검토절차와 관련되는 국내 인증규정에 따른 인증 신청서 검토 단계는 신청서류의 접수를 위한 첨부 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단순 행정처리 절차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증기관이 신청받은 건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ISO 17065와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간혹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로는 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인증하거나, 인증기준에 미흡한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인증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인증신청 건에 대한 인증 수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문서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표 2-3> 인증 신청 검토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 인증요령(제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획득 한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① 신청인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인증 프로세스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② 표준, 기타 규범 문서에 대한 인증기관과 고객 간의 견해 차이가 해결되었다. ③ 원하는 인증 범위가 지정되었다. ④ 충분한 평가 활동이 가능하다. ⑤ 인증을 위한 충분한 능력·역량이 있다. ■ 인증기관은 인증 요청에 다음 사항을 식별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유형 / 규범 문서 / 인증 제도 ■ 인증기관은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인증 활동에 대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수행 결정에 대한 정당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수행해야 하는 인증 활동에 대한 능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인증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이 기존 인증에 의존하여 활동을 생략하는 경우 기존 인증을 인용해야 한다. 신청인 요청 시 인증기관은 활동 생략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접수한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기관규정(제3호타목)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전까지 인증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별(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로 1건 이상을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인증심사

- 국제 표준에서 ‘평가’라는 용어는 ‘평가(evaluation)’, ‘조사(inspection)’, ‘감사(audit)’ 등의 용어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됨.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제도에는 ‘심사(inspection)’로 사용되고 있음
- 인증기관은 인증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평가(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직원을 배정하되, 외부에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조직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관여하지 않아야 함
- 인증기관은 설계 및 문서 검토, 샘플링, 테스트, 조사 및 감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는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또는 문서가 이용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내부 자원 또는 외부위탁 자원의 각 수행하는 평가 활동 유형에 따라 평가 활동을 관리하고, 제품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요구사항 및 인증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인증 신청 전에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된 결과에 대하여 해당 평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 인증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함

(1) 인증심사 적합성 평가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모든 부적합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부적합을 통보 받고도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합이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추가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모든 평가 활동의 결과는 검토(인증심의) 전에 문서화(평가결과보고서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 할 수 있음
- 문서에는 인증 평가가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지, 인증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지 또는 인증 신청 전에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인증 신청 전에 평가가 완료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인증조사(평가)의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인증조사관을 지정하거나 조사일정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에 필요한 준비와 관련되는 규정은 없음

○ 시험분석 외의 인증조사 업무 외부위탁시 인증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어 외부 위탁업무 범위는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기능만 허용

○ 인증 조사결과에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인증 부적합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이때, 인증기관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증 신청인에게 부적합으로 통보하고 종결함

<표 2-4>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인증심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 인증요령(제7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조치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내부 자원으로 수행하는 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 외부위탁 업무는 위탁 받은 조직에서 지정한 직원이 완료한다. ■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또는 문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한다. ※ 평가에는 설계, 문서검토, 시료채취, 시험분석, 조사·감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내부자원으로 수행하는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외부위탁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 외부위탁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한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 ■ 모든 부적합 사항을 고객에게 알린다. ■ 부적합이 발생한 고객이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면 인증기관은 추가 평가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고객이 추가 평가 작업 완료에 동의하는 경우 평가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추가 평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 모든 평가(조사) 활동의 결과는 검토 전에 문서화 되어야 한다. ※ 이 문서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인증 규범은 평가가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지, 책임 하에 수행되는지 또는 인증 절차에 따라 신청 전에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평가 절차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서, 구술, 전화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성 평가를 위해 서류·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li style="padding-left: 20px;">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3호차목)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 편성 • 서류심사 절차 •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현장심사 절차 •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 <li style="padding-left: 20px;">인증요령(별표 2) ■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심사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 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동일 신청인을 3년 연속 심사한 경우 •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심사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2) 인증심사 적합성 검토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7.5절은 인증조사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인증기준 및 기타 요구사항,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인증 신청 건이 요구사항(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임
- 검토는 조사(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와 인증 결정을 동일한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검토자가 작성한 검토 의견에 따라 인증이 결정되도록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ISO 17065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는 인증조사 → 인증 검토 → 인증 결정 3단계 절차로 각 기능별 담당자의 명칭은 인증조사관 → IR 검토관 → 판정관으로 운영됨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제도에는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심사원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결정은 인증심의관이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즉,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인증심의관이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인증심사원이 자격을 충족한 경우 인증심사관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인증제도 향상을 위해 우선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선하고, 인증심사원의 조사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함

<표 2-5>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인증심의)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 인증요령(별표2 제1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결과를 검토할 사람을 최소한 한 명씩 지정해야 한다. 검토는 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 검토 및 인증 결정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동시에 완료되지 않는 한, 검토에 기반 한 인증 결정에 대한 권장 사항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의관으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

| | |
|--|---------------------------------------------------------------------------------------------------------------------------------------------------------------------------------------------------------------------|
| | <p>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여 추가심 이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p> <p>인증기관 규정[별표 1 제3호사목2)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의관은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인증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인증 결정

□ ISO 17065(ISO/IEC,2012)

- 인증의 결정은 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 인증기관은 인증 결정의 근거가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인증을 결정하여야 함
-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증승인을 결정하고,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함
- 이러한 인증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인증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의사결정 인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이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의한 이해관계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임.
 - 다만, 검토 및 의사결정은 동일한 사람 또는 그룹(심의회)이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 인증 의사결정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조직적 통제(관리)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조직적 통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함
 - ① 인증기관에 의한 다른 기관의 전체 또는 대부분 소유권
 - ② 다른 기관의 이사회에 인증기관의 대다수 참여
 - ③ 소유권 또는 이사회 통제에 의해 연결된 법인의 조직(인증기관이 소속하는)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권한
- 위와 같이 조직적 통제 하에 있는 직원은 인증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 직원으로 간주하여 인증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승인 불가 의사결정을 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신청인이 인증 평가를 지속적으로 희망한다면 인증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서 인증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인증기관이 임명한 인증심의회가 수행함.
 - ISO 17065 7.5~7.6에 해당하는 검토 및 인증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이러한 인증심의회관의 자격 요건은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30건 이상의 인증조사 실적을 갖춘 경우에 임명될 수 있음.
- 인증심의회관은 인증심의회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인증심의회를 할 수 없고,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함.
 -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에서 인증에 대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높은 분야는 인증심의회관 운영분야임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서 인증심의회관의 지위는 상근 심의회관이거나 비상근 심의회관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인증기관의 경영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임
- 따라서,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관은 인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공정성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

<표 2-6>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결정) 관련 ISO 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인증요령(제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평가, 검토 및 기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 결정을 내릴 사람을 최소한 한 명씩 지정해야 한다. 인증 결정은 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 또는 개인 그룹(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검토 및 인증 결정은 동일한 사람 또는 그룹이 동시에 완료 할 수 있다. ■ 인증 결정을 하도록 인증기관에 의해 지정된 사람(위원회 구성원은 제외)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기관 ② 인증기관의 조직 통제 하에 있는 법인 ■ 인증기관의 조직 통제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기관에 의한 다른 기관의 전체 또는 대부분 소유권 ② 다른 기관의 이사회에 인증기관의 대다수 참여 ③ 소유권 또는 이사회 통제에 의해 연결된 법인(인증기관 속하는)의 조직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권한 ※ 정부 인증기관의 경우 동일한 정부의 다른 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3호다목) ■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를 인증심의회관으로 지정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상근 인증심사원 경력이 3년이상이면서 인증심사 경험이 풍부한 자 ■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의 기능 및 역할, 보수, 위촉 및 해촉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p>서가 인증기관과 "소유권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통제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인증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과 동일한 국제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된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p>※ 고객이 인증 프로세스를 계속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면 인증기관은 평가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p> | <p>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
|--------------------------------------------------------------------------------------------------------------------------------------------------------------------------------------------------------------------------------------------------------------------------------------------------------------------|-------------------------------------------------------------------------------------------------------------------------------------------------------------------------------------------------------------------------------------------------------------------------------------------------------------------------------------------------------------------------------------------------------------------|

(4) 인증서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7.7절은 인증서의 발행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서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를 인증기관의 명칭과 주소, 인증승인 일자, 인증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인증범위 및 그와 관련된 근거 규정, 인증 기간 또는 만료일,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 규정에서도 인증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동일한 항목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증사업자를 식별하는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인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은 ISO 17065 7.7절에는 없는 정보임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인증번호 체계는 인증사업자의 인증종류별 고유번호로 8자리의 아라비아숫자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앞에서 첫 번째 두 자리 숫자(00)는 서울, 경기, 강원 등의 광역 시도 내에서 인증기관이 지정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01, 02, 03,... 등의 방식으로 부여
 - 두 번째 한 자리 숫자(0)는 인증의 종류를 유기농은 1, 유기축산물은 2, 무농약은 3등을 의미
 - 마지막 다섯 자리 숫자(00000)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동일한 인증종류별로 인증을 승인한 일련번호가 00001, 00002, 00003 ... 등의 방식으로 부여됨
- 특정 인증사업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는 매년 인증을 갱신하여도 동일한 번호를 유지하여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이력관리 및 인증사업자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와 유통업체에서는 자신이 구입한 인증품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때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인증번호 검색란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

- 인증서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증번호, 인증구분(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자 성명 및 주소, 인증품목, 인증면적, 인증부가조건, 인증기관명 등이 표시되어 인증사업자에게 교부되며, 인증서에 교시되는 인증정보는 친환경농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관련 정보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공개됨.

<표 2-7>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문서)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제1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다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증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이름과 주소 ② 인증이 부여된 날짜 (날짜는 인증 결정이 완료된 날짜보다 이전일 수 없음) ③ 고객의 이름과 주소 ④ 인증범위 ※ 다른 기준이나 규정에 대한 참조는 공식 인증 문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⑤ 인증 기간 또는 만료일 ⑥ 인증 규범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 인증 문서에는 인증 권한이 부여된 인증기관(사람)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식 인증 문서는 다음 사항 이후에 또는 동시에 발행되어야 한다. ① 인증범위를 부여하거나 확장하기로 결정 ② 인증 요건 충족 ③ 인증 계약 완료/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인증 신청: 인증심사 ② 재심사 신청: 재심사 ③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④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인증서 기록 내용(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① 인증번호, 인증구분(종류), 유효기간 ② 생산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주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품목, 인증면적 ④ 인증부가조건, 인증과 관련된 법적근거 ⑤ 발행일자, 인증서 발행 ⑥ 기관장의 명칭 및 직인날인 인증요령(별표 3) ■ 인증번호 부여방법: 인증번호는 시도별 지정번호, 인증종류, 인증서 발급순번 등을 결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5) 인증에 대한 감독(사후관리)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7.9절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인데, 사후관리 활동은 ISO/IEC 17067를 참조하고, 각각의 인증제도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됨
 - 사후관리에 조사, 검토, 인증 결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7.4(조사 또는 평가), 7.5(검토), 7.6(인증 결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제품에 인증마크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한국 제도에서는 인증갱신 심사에 해당함)가 이행되어야 하고,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이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후관리는 인증 승인 후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즉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는 제품과 인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른 정기조사 시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ISO 17065 7.4~7.6(평가, 검토, 인증 결정)의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짐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 따른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승인한 후 해당 인증건에 대하여 1년간의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사후관리와 인증갱신(ISO 17065의 정기조사에 해당)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관리방식도 유효기간 중에 실시하는 사후관리는 약식으로 진행되고, 인증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됨

<표 2-8>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사후관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농업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 규범에 따라 감독(사후관리)이 필요한 경우나 인증표시 제품에 대하여 감독(사후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 ISO/IEC 17067은 인증 규범에서 감독(사후관리) 활동의 예를 제공한다. ※ 감독(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는 각 인증 규범에 규정된다. ■ 감독(사후관리)에 평가, 검토 또는 인증결정을 활용하는 경우 각각 7.4, 7.5 또는 7.6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에 부착하도록 승인된 경우 감독(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제품 요구사항의 준수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표시된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사후관리)을 실시해야 한다. ■ 인증마크의 사용이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해 승인된 경우, 감독(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요구사항의 준수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기적인 감독(사후관리) 활동이 실시되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법(제21조)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후에도 계속하여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법(제31조) 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제36조) ①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

(6)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7.10 항목은 이미 승인된 인증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권한 유지 및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또는 인증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축소 확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임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하여 인증의 권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처리 절차의 운영이 필요한데, 인증기관은 인증 규정에 신규 또는 개정된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인증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인증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인증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ISO 17065 7.4~7.6에 따른 인증 조사, 검토, 인증결정 과정 이행과 인증의 확대 축소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및 사후관리도 포함될 수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인증 변경은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인증 품목을 추가하거나 인증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명칭, 주소, 인증 부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 승인을 위해 인증조사과정을 통해 그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 다만,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개선되면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도록 문서 지침이 인증기관에 전달되어 인증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짐.
 -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인증의 권리가 취소되는 사유로 인증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기관의 운영 규정에도 인증사업자에게 제도 개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표 2-9>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농업법(제20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 할 때 인증기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모든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변경 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과의 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다. ISO/IEC Guide 28:2004, Annex E에는 변경 통지와 관련된 사항과 인증 사용에 대한 계약 모델이 나와 있다. ■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의 변경 요청사항과 기타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는 인증 요구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가 (7.4 참조) ② 검토 (7.5 참조) ③ 결정 (7.6 참조) ④ 인증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식 인증 문서 (7.7 참조) 발행 ⑤ 갱신 감독 활동에 대한 인증 문서 발행(인증 규범에 의한 감독인 경우) ※ 이러한 조치는 7.4, 7.5, 7.6, 7.7 및 7.8의 해당 부분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위의 활동(제품 요구사항이 아닌 평가, 검토, 결정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을 제외하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 품목(생산물의 품목 명칭) ② 인증 사업장 규모 축소 ③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 위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서 원본 ②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요령(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③ 인증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7) 인증의 종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7.11절은 인증 감독(사후관리) 결과, 인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인증사업자에게 인증기관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축소, 정지 등 조치 사항과, 인증 축소,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증을 복권하는 절차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후관리(감독) 등의 조사 결과 인증 요구사항(인증기준 등)에 부적합이 입증되면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① 인증기관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 인증 지속(예: 사후관리 강화)
 - ② 부적합한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인증 범위 축소
 - ③ 의뢰인에 의한 시정 조치가 완료 시까지 인증 중단
 - ④ 인증 취소
- 인증이 종료되거나 정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인증기관은 규정에 따라 인증 문서, 정보 공개, 마크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인증 범위 축소 시에는 사업자에게 축소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검토, 인증 결정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인증이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 정지 사항의 처리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능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공식화 해야 함
 - ① 제품에 대한 인증 정지를 완료하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②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치
 - 정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평가, 검토 또는 결정과정이 다시 이행되어야 함.
- 인증이 정지된 후 복원되는 경우, 제품이 인증된다는 모든 적절한 표시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은 공식 인증 문서, 정보 공개,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복권을 조건으로 인증 범위 축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축소된 인증 범위가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ISO 17065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인증이 일시 정지되고,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다시 복원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친환경인증제도에는 인증 취소, 인증 표시정지, 표시제거 등의 행정처분이 문서 시행과 동시에 모든 것이 확정적임
- 인증취소는 다시는 복권되지 못하고, 인증이 취소된 후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됨
- 정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인증표시를 정지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의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2-10> 인증 종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별표 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사후관리) 또는 기타의 결과로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부적합이 입증되면 인증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 인증지속(예 : 감독(사후관리) 강화) ● 부적합한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인증범위 축소 ● 의뢰인에 의한 시정 조치가 완료 시까지 인증 중단 ● 인증 취소 ■ 적절한 조치에 평가, 검토 또는 인증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 각각 7.4, 7.5 또는 7.6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증이 종료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제품이 계속 인증된다는 표시를 제공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은 인증 제도에 규정된 조치를 하고 공식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사용 승인에 필요한 모든 수정을 해야 한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면, 축소된 인증 범위가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인증 문서 및 공개 정보에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인증기관은 인증 제도에 규정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식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해야 한다. ■ 인증이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을 공식화하고 고객에게 전달할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규범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인증 정지를 완료하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치 ※ 이러한 사람은 정지된 인증 처리의 모든 사항에 지식과 이해가 유능해야 한다. ■ 정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거나 인증 규범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증 평가·검토·결정·발행·사후관리·인증표시 등의 규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 인증이 정지된 후 복원되는 경우, 제품이 계속 인증된다는 모든 적절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식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해야 한다. 복원 조건으로 인증 범위 축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축소된 인증 범위가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인증 문서 및 공개 정보에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식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해야 한다. | <p><인증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유기농림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2차 검출된 경우(1차 위반 시 시정명령) ● 유기농림산물로 출하되는 농림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p><인증표시 제거·정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때 <p><인증표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p><인증품의 회수·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p><인증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p><행정처분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농관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 받은 농관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의 지정 및 활동에 관한 규정

(1) 인증기관의 책임

- 인증기관은 제품의 인증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인증기관이 법률적, 경제적 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법령과 자체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인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인증기관과 사업자(고객) 간에 합의에 의한 안정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가) 법적 책임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은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의 근거를 법률에 따른 법인일 것과 법인으로서의 인증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인증기관의 책임과 능력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법률에서 부여하는 등록된 법인이거나 최소한 법인 소속의 일부 조직이어야 하는 것임.
-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정부의 지위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됨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법인의 개념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되고, 법인은 정관을 갖추어야 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 이사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여야 함
- 국내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규정에서도 인증기관은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규정의 첫 번째 항목에 규정되어 있음(인증기관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 하지만, ISO17065에 따라 인정을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
 - 이유는 국내 친환경인증 규모가 소규모로 농가 영농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영여건이 어렵기 때문임
- 다만,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규정에는 인증기관의 조직 및 인력, 인증업무 규정 및 인증업무 수행 절차 등과 관련하여 ISO17065 요구사항 중 일부 내용을 인증기관 운영제도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친환경인증기관의 법률적, 재정적 책임에 대한 이행성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이행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고,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관 또는 내부 규약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표 2-11> 인증기관 법인요건 관련 ISO 17065와 한국 인증기관 운영규정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 ²⁾ (별표 1 제1호 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법인 또는 법인의 일부로서 모든 인증활동에 법적 책임을 진다. ※ 정부 인증기관은 법인으로 간주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 한다. ■ 인증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행해야 한다. |

(나) 배상책임 및 재정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은 제품 등에 대한 인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책임의 대책을 갖추어야 함.
 - 금전적 책임에 대한 이행 방법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채무를 담보 하는 방안으로 보험 또는 적립금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 ISO 17065 4.3 항에도 채무 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적립금 마련을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정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음.
 - 이는 ISO 17065 표준에 세부적인 실행 규범을 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 국내 친환경인증

2)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에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9호, 2019.07.01. 일부개정 버전 참고(이하 같음)

- 인증조사관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비 등의 금전적 채무 해소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유보금을 상시 유지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인증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인증기관규정 별표1 제1호 가목)
- 우리나라 규정에는 사실상 3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채무실행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인증기관 대표자의 여론은 영세한 국내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규모와 그로 인한 인증기관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인증기관의 재정난과 영세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기관 운영비 3개월 예치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인증기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인증의 품질을 개선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하고, 전체 친환경인증에 대한 안정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표 2-12> 인증기관의 배상책임 및 재정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별표 1 제1호 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예 : 보험 또는 준비금)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 성과 자원을 확보해야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유지 한다. ①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②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③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행한다. |

(다) 인증기관과 사업자(고객)의 협약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그 고객(운영자 또는 사업자) 사이에 문서화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증기관과 사업자 사이의 협약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 양자 간에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문서화하도록

하고, 협약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ISO 17065 4.1.2에는 11가지 세부 항목으로 협약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그 주요 내용은 인증기준의 상시 준수,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용하고 문서 및 기록 등을 유지·관리하고,
 - 인증기관의 비방을 금지하고,
 - 인증품의 적합한 마크 및 광고 활용,
 - 인증기준에 대한 부적합 사항 자체관리,
 - 기존 인증사항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협약 사항으로 규정하여
 - 인증기관의 권위를 보호하고, 인증받은 제품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대외적인 광고, 홍보에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규정에는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ISO 17065와 같이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친환경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증사업자에게 준수사항 및 동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인증기준 상시 준수, 인증 관련 정보 기록·관리 및 제공, 인증의 주요 사항 변경승인 신청 등 인증과 관련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농약사용 금지 및 화학비료 1/3 이하 사용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기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동의서에는 인증기관의 권위를 보장받고, 인증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신속한 조치 이행, 인증제품 등의 광고·홍보에 대한 적합성 관리 요구사항 등의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ISO 17065 4.1.2의 주요 내용을 국내 인증기관규정에 반영하고, 인증기관과 인증 사업자간에 공식 협약이 이행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표 2-13> 인증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약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별표 1 제3호 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과 사업자는 양자의 책임을 고려하고, 사업자에 대한 인증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이행 가능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준수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는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인증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해야 한다. ② 인증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사후관리에 응해야 하고, 문서·기록 제공, 관련 장비·위치·지역·직원·사업자의 하청업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부적합 사항 조사 • 필요한 경우 입회인 참여 ④ 사업자는 인증 범위와 인증 요건에 일치하는 지에 관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⑤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오해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⑥ 인증이 정지, 취소, 종료되면 사업자는 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치(예: 인증서 반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⑦ 인증 문서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전체 또는 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문서, 전단지 또는 광고와 같은 각종 매체에서 인증을 표시 할 때 사업자는 인증기관의 요구사항과 인증규정을 준수한다. ⑨ 사업자는 인증 마크 및 제품 정보에 대하여 모든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⑩ 사업자는 인증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고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및 결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조치한 내용을 문서화 한다. ⑪ 사업자는 인증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알린다. 다음은 변경의 예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조직 및 관리(예: 주요 관리, 의사 결정 또는 담당 직원) • 제품 또는 생산 방법의 수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과 사업자 간의 협약 사항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제도에 없는 사항이다. ※ 다음은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준수사항 및 동의서의 이용 사례이다. <유기농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의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초제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재배포장 주변에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구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과정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농관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시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⑥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 실적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실적 자료 또는 문서 등을 생산한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⑨ 경영관련자료(영농일지)는 지번·면적·품목·파종·수확량 등과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자재의 자재명·사용량·사용목적 등, 출하처별 판매량 등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자료·영수증을 보관한다. ⑩ 사업자는 인증품목 변경,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을 변경 및 인증 부가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증 변경 승인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본인(조직)은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인증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취소, 인증 표시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하고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임을 동의합니다 |

(2) 인증 활동의 공정성

○ 인증 활동의 공정성은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핵심 요소임.

- 따라서 인증기관과 인증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인증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인증활동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가) 공정성 관리

□ ISO 17065(ISO/IEC,2012)

- ISO17065 4.2에 따른 인증 활동 공정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증기관과 직원(내부·외부), 위원회는 인증 활동(인증 조사·검토·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함.
 - 더불어 인증기관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됨.
- 인증기관 및 직원의 인증 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는 소유권, 지배, 관리, 인력, 공유 자원, 재정, 계약, 판촉활동(브랜딩 포함), 판매 수수료 지불, 신규 고객 모집 등이 이에 해당됨.
- 인증기관은 이러한 요소들이 공정성을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야 하고, 확인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기관과 그 소속 법인 및 법인의 일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금지됨
 - ① 인증 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배포 또는 유지
 - ② 인증 프로세스의 설계, 실행, 운영 또는 유지
 - ③ 인증 서비스의 설계, 실행, 제공 또는 유지
 - ④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안하거나 제공
 - ⑤ 고객의 경영 시스템 컨설팅 또는 내부 감사를 제안하거나 제공
 - ⑥ 고객과 인증활동의 결과 또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 ⑦ 인증기관 운영에 고객이 생산한 제품의 사용, 설치 및 유지
- 또한, 인증기관의 활동은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홍보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컨설팅 조직이 사용된 경우 빠르고 쉽게, 또는 저렴하게 인증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도 안 됨.

- 컨설팅을 제공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단축하여 인증을 결정하거나 검토 하여서도 안 됨.

- 한편, 인증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관계가 있는 별도 법인의 활동이 인증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별도 법인이 인증 제품(인증 대상 제품 포함)을 제안 또는 생산하거나, 자문을 제안 또는 제공하는 경우 인증기관과 직원은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법인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 별도 법인과 직원 또한 인증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 인증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인증 규범에 명시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인증 활동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긴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주로 2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인증기관 또는 종사자는 자신이 알게 된 다른 사람, 기관 또는 조직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은 공정하게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 대상과 범위가 인증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이 해당하며, 공정성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의 기간도 상시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인증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공정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규정에도 ISO17065 4.2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기관이 인증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고, 제3자 인증의 원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성 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정성 선언문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이 공정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일부에 불과하고, 운영 방식도 인증기관의 대표가 공정성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외부 위원보다 내부 위원이 다수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등 실제 운영 현실은 공정위원의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 향후 인증기관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해관계 형성 차단 및 이해충돌 확인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4> 인증 활동의 공정성 관리 관련 관련 ISO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별표 1 제3호 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활동은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인증기관은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대위험을 확인해야한다.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직원의 인증활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포함된다. ※ 공정성에 대한 위험 요소는 소유권, 지배, 관리, 인력, 공유 자원, 재정, 계약, 마케팅(브랜딩 포함), 판매 수수료 지불 또는 신규 고객 유치 등이다. ■ 공정성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인증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입증해야한다. 이는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에 이용될 수 있어야한다. ■ 인증기관은 공정성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 인증기관 및 그 소속 법인의 수행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 제품의 설계, 제조업체, 설치, 배포 또는 유지 관리 ② 인증 프로세스의 설계, 실행, 운영, 유지 관리 ③ 인증 서비스의 설계, 실행, 제공, 유지 ④ 고객에게 컨설팅 제안 및 제공 ⑤ 고객의 경영 시스템 평가, 컨설팅, 내부 감사 제안·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공정하여야 한다. ■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의 영향 차단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제3자 인증원칙을 준수 하며, 자기인증(임직원·주주·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증) 방지 체계를 갖추고,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문서화된 조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정성 여부 점검을 위한 절차 ② 공정성 여부 점검을 위해 내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③ 공정성 선언문 ■ 인증기관의 임직원의 수행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 제조·가공·유통·판매 ②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 ③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④ 기타 인증업무 불공정 우려가 있는 업무 ■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주주는 인증심사원과 인증심의관 겸직 금지 ■ 상근직 인증심사원 및 인증심의관은 다른 인증기관에서 중복 근무 금지 |

(나)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진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의 최고 경영진은 법령과 인증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책과 목표가 공정성 기반하에 인증기관의 모든 조직에서 인정되고 실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인증기관 경영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책임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증 활동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위원회 등의 기구 운영)을 갖추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인증기관은 경영진, 소속 직원과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한 조직 구조를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인증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서 및 조직을 포함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경영진(the management)은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는 이사진(board), 위원회 또는 개인을 임명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임무를 부여해야 함.

- 즉, 인증기관은 경영진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증기관 운영이 공정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① 인증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개발
- ② 정책 및 절차 이행 감독
- ③ 인증기관의 재정 감독
- ④ 인증 활동의 개발
- ⑤ 인증 요구 사항 개발
- ⑥ 평가 (ISO17065 7.4 참조)
- ⑦ 검토 (ISO17065 7.5 참조)
- ⑧ 인증 결정 (ISO17065 7.6 참조)
- ⑨ 위원회를 대신하여 정해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직원에게 권한 위임
- ⑩ 계약 합의
- ⑪ 인증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 ⑫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⑬ 인력 역량 요구 사항
- ⑭ 인증기관관리시스템 (ISO17065 8 참조)

○ 이러한 조직 운영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 임명, 권한의 위임 조건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또한,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갖추어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국내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규정에도 공정성위원회 규정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ISO17065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을 갖춘 인증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임

○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공정성 메커니즘이 실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임무가 명확하지 않아 그 필요성과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 그리고 인증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이사회)와 공정성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인증 활동과 인증기관의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구조가 대부분이라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한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에 결함을 보이고 있음.

- 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3자적 인증에서의 공정성 보장 및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영세한 농업규모와 인증기관의 어려운 경영 현실만을 고려한 타협적인 제도운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임.

<표 2-15> 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최고 경영진 운영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별표 1 제3호 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활동은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인증기관은 경영진 및 인증 관련 직원, 위원회의 임무, 책임, 권한을 표시하는 조직체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법인의 일부인 경우 조직은 권한 관계 및 법인 내에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인증기관의 경영진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회, 개인의 그룹, 개인을 구분해야 한다. ■ 기관은 인증 과정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임명, 위임 조건 및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규칙을 가져야 한다(ISO17065 7). 그러한 위원회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기관은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및 철회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제3자 인증원칙을 준수, 자기인증(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주주,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속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는 것)을 방지 체계 요구,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정성 여부 점검을 위한 절차 ② 공정성 여부 점검을 위해 내·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③ 공정성 선언문 ■ 인증업무 수행 상설전담조직으로서 다음 조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방 사무소 포함)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 ■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 구비 ■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 |

(다)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

□ ISO 17065(ISO/IEC,2012)

- ISO 17065 5.2에는 인증기관이 인증 활동을 수행할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들의 인증 활동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하여야 하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그리고 그러한 신뢰와 공정성을 얻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인증기관이 설립한 하나 이상의 위원회이거나 제도 소유자, 정부 기관, 위원회 등의 기구형태도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인식됨.
- 이러한 메커니즘(위원회 등의 기구)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① 인증 활동의 공정성과 관련된 정책 및 원칙
 - ② 인증 활동의 일관되고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상업적 또는 기타 고려 사항을 허용하려는 인증기관의 의도(성향)
 - ③ 개방성을 포함하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공정성 기구를 설립할 때에는 특정분야의 단일 이해관계가 우세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인력을 포함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함
- 해당 기구는 인증기관의 최고 경영진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최고 경영진이 기구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구는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인증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 절차 또는 기타 필수 요구 사항과 충돌하는 조언을 따라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를 유지해야 함.
- 인증기관이 공정성 기구를 설립·운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인증기관의 고객, 고객의 소비자, 제조업체, 공급업체, 이용자, 인증전문가, 산업협회 대표,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정부 서비스 대표, 소비자 조직을 포함하는 비정부기구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인증기관이 스스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으므로, 내외부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 의한 인증기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받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임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 관련 규정은 한국 인증기관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은 개별 인증기관의 경영으로 실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조직과 인증기관 간의 관리, 감독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인증기관의 자체 공정성 메커니즘이 취약한 부분을 농관원에서 인증기관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일정 부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존한 관리감독 체계는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과는 거리가 멀고 한계가 있으므로 ISO 17065의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체계와 인증 활동에 대한 공정성 메커니즘이 확립되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라) 비차별적 조건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의 비차별적 운영은 공정한 인증 활동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임.
 - 따라서, 인증기관의 차별적인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한 인증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운영 방침과 절차는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 이러한 비차별성의 실현은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에 대한 신청서 접수가 선별적이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의 경영 규모나 특정 협회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기존 인증자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재정 상태를 조건으로 인증 활동을 수행해서도 안 됨.
- 다만, 신청인이 인증 절차와 규범을 거부 또는 위반하는 등의 불법 행위 경력이 있는 실증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이 신청인에게 적용하는 범위는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사항들로 조사, 검토, 인증결정 및 사후관리 등의 범위로 한정하여 인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국내 인증기관규정에도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비차별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신청인이 사업 규모나 특정 협회 및 단체의 회원임을 조건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규정에는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을 친환경농업법 제20조 제2항에 인증이 1회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 10년 동안 2회 취소된 경우에는 2년, 3회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ISO17065 4.4항의 예외적 차별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6> 인증기관 인증 활동 비차별 조건 관련 ISO 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 운영규정(별표 1 제3호 가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정책, 절차, 관리는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 표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 인증기관은 활동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증 프로세스 접근은 사업자 규모, 협회, 그룹 회원 자격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며, 기 발급된 인증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재정적, 기타 조건이 없어야 한다. ※ 다만,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인증/제품 요구사항을 상습 위반 전력 등의 입증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 접수나 인증 계약의 유지를 거부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은 요구사항, 평가, 검토, 결정 및 사후관리를 인증 범위와 특별히 관련된 문제로 국한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한 인증업무 수행 금지 ※ 인증신청 금지 대상(법 제20조 제2항) ① 인증취소 일부터 1년 미경과 자. 다만,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는 2년, 3회 이상 취소된 경우는 5년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되어 인증취소 후 5년 미경과 자 ③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친환경농업법 제6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미경과 자 |

(마) 불만 및 이의제기

□ ISO 17065(ISO/IEC,2012)

- ISO17065 A.5에 따르면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증기관, 고객 및 기타 적합성 평가자들의 오류, 누락 또는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ISO 17065 7.13은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과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불만과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인증기관은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소관 사항으로 판단되면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접수된 내용은 내부 관계자에게 공지하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을 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국내 인증기관규정에도 불만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완 필요

- * (참고, ISO 17065) 불만과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불만과 이의제기 사항에 공정성을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규정

<표 2-17>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ISO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인증기관규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불만 및 이의제기를 접수,평가 및 결정하는 문서화 된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불만 및 이의제기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록하고 추적해야 한다. ■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인증기관은 불만 또는 이의제기가 책임 있는 인증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다면 이를 처리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공식적인 불만 또는 이의제기 접수를 공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결정에 대한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해결하는 결정은 불만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인증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 이해 상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했거나 고객이 고용한 직원을 상담 또는 고용종료 후 2 년 이내에 해당 고객에 대한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처리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 인증기관은 불만 제기 자에게 결과 및 불만 처리종료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이의 제기자에게 결과와 이의제기 절차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3호자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례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 ■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 성명 •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 조치결과 • 기타 <p>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4호다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사항에 대한 처리담당자, 처리기한 등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인증기관 운영 자원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는 인적자원과 규범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인적자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능력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규범적 자원은 인증업무를 위한 내부규정과 인증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되는 외부자원 운영에 대한 규정임

(가) 평가(조사 또는 심사)를 위한 인적자원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이 인증제도, 인증기준, 기타 규범 문서와 관련하여 담당(인증조사, 검토, 결정 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무 부여와 관련됨
-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방침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인증기관의 인적자원의 범위에는 위원회 구성원, 외부 기관의 직원, 인증기관의 직원이 포함됨.
 - 이러한 인적자원에 포함되는 직원은 인증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법률이나 인증체계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관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표 2-18> 인증조사관 역량관리 요건 및 이력관리(ISO 17065 6.1.2)

-
-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① 제도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업무 과정에서 각 기능에 대한 직원의 능력 기준을 결정한다.
 - ② 교육 요구 사항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규정, 인증기준,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인증체계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③ 직원이 수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 ④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 ⑤ 직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이름과 주소
 - ② 고용주 및 직위
 - ③ 교육 자격 및 직업적 지위
 - ④ 경험과 훈련
 - ⑤ 능력 평가
 - ⑥ 성과 모니터링
 - ⑦ 인증기관 내에 보유된 권한
 - ⑧ 각 기록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날짜
-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계약서 등의 문서 협약을 통하여 인증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전·현직 직무와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내 친환경인증

-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조사관(심사원) 자격은 친환경농업법 제26조의2(인증 심사원)에 근거하고 있음.
 - 인증조사, 재조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의 조사업무(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인증 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인증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정 자격 취득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이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19> 한국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조문 |
|--------------|------------------------------------------------------------------------------------------------------------------------------------------------------------------------------------------------------------------------------|----------------------|
| 자격취득 요건 | 1. 선행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 요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보유하고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 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 자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
| | 2. 추가요건: 30시간의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수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자격유지 요건 | 인증조사관자격을 취득한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수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 자격취득 결격사유 |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조사관 자격 취득, 부정하게 인증심사 업무수행, 기준에 맞지 않은 인증 수행, 법정 준수사항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인증업무와 관련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같은 법 제26조의2 |

- 한편, 현행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는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부문이 제외되어 있고, 인증심사원 양성과 교육 훈련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증심사원이 실무에 참여되도록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과 인증 판정관에 대한 경력, 징계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인증심사원과 판정관의 이직 시 해당 인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표 2-20>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친환경 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1호 가목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 규범과 관련 표준 및 기타 규범의 운영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을 고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인증기관의 정직원 또는 계약직원, 인증기관의 관리 통제 내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직원은 필요한 기술적 판단, 정책 정의 및 실현을 수행하는 데에 유능해야 한다. ■ 인증기관을 대리하는 위원회 구성원, 외부 기관의 직원은 법과 인증 규범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과정에 관련된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을 요구한다. ① 제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인증과정의 각 기능에 대한 능력 기준을 결정한다. ② 교육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 과정,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인증 규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직원이 수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④ 인증 프로세스의 기능에 대해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⑤ 직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과정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한다. ① 이름과 주소 ② 고용주 및 직위 ③ 교육 자격 및 직업적 지위 ④ 경험과 훈련 ⑤ 능력 평가 ⑥ 성과 모니터링 ⑦ 인증기관 내에 보유된 권한 ⑧ 각 기록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날짜 ■ 직원과의 계약 : 인증기관은 인증과정에 관여하는 직원이 다음 사항을 반영한 계약서 등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을 포함한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서는 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자격기준 중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심사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유기양봉제품: 축산분야 자격 또는 수의사 면허 ② 유기가공식품: 식품분야 자격 ③ 비식용유기가공품: 식품분야 자격, 축산분야 자격 ■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 심사·관리 사업자수는 다음과 같다. ①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300사업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350사업자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증가된 사업자 수만큼 다른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 사업자수를 줄여서 총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1인당 150사업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사업자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사업자수를 합하여 150사업자 이내 이어야 한다. ■ 인증기관은 상근 인증심사원이 이직·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원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농관원장 제외)에게 제공 금지 ■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성명 및 주소 |

| | |
|--------------------------------------------------------------------------------------------------------------------------------------------------------------------------------------------------------------------------------------------------------------------------------------------------------------------------------------------------------------------------------------------------------------------------------|-------------------------------------------------------------------------------------------------------------|
| <p>① 기밀성 및 상업적, 기타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되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p> <p>② 자신 또는 고용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전·현재의 연관성을 밝혀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공급 업체 또는 설계자 •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발자 • 배정될 평가 또는 인증 프로세스 운영자 또는 개발자 <p>③ 자신 또는 인증기관에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려진 상황을 공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위의 정보를 직원의 활동이나 이를 고용한 조직에 제기된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 <p>②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p> <p>③ 입사 및 퇴사일자</p> <p>④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p> <p>⑤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p> |
|--------------------------------------------------------------------------------------------------------------------------------------------------------------------------------------------------------------------------------------------------------------------------------------------------------------------------------------------------------------------------------------------------------------------------------|-------------------------------------------------------------------------------------------------------------|

(나) 평가를 위한 내부자원 평가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이 인증제도, 인증기준, 기타 규범 문서와 관련하여 담당(인증조사, 인증기관이 평가활동(인증활동 - 인증조사, 검토,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자원으로 충분한 평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범을 갖추어야 함
- 평가활동에 관련되는 인증 규범은 원칙적으로 국제 규범에 동등한 수준의 내부 규범을 갖추어야 함.
 - 대표적으로 시험분야는 ISO/IEC 17025, 검사분야는 ISO/IEC 17020, 경영시스템은 ISO/IEC 17021을 적용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다만, 평가 대상 분야가 인증기관 내부 역량으로 자체 전문지식 등을 이용 가능한 경우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른 평가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 요구사항으로 간주하여 국제 표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평가를 위한 내부자원은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이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규범이어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제도에서는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

- 그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제도 자체가 국가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관련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증기관의 경영여건이 영세하여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기도 함

<표 2-21>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내부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친환경 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1호 나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내부 자원 또는 직접 통제하에 있는 다른 자원을 사용하여 평가 활동을 수행 할 때 관련 국제 표준 및 인증 규범, 기타 문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테스트는 ISO/IEC 17025, 검사는 ISO/IEC 17020, 경영 시스템 감사는ISO/IEC 17021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 수행자의 공정성 요구사항은 항상 적용 가능해야 한다. ※ 일부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인증기관 내의 전문 지식을 평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시험 입회 포함), 조사(조사 방법 또는 파라미터 검사), 경영 시스템 평가(경영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기관의 관리 범위 • 특정 요구 사항이 이 국제 표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공인시험 연구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인시험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지원·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른다.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또는 제 9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사료·축산물·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함) 검사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 이하 9종의 검사기관 관련 규정 생략 |

(다) 평가를 위한 외부자원 평가

□ ISO 17065(ISO/IEC,2012)

- 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평가(조사, 심사, 감사 등) 활동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평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범을 갖추고 관리되어야 함.
- 인증기관이 인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중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은 내부자원에 적용되는 표준과 동일하게 시험 분야는 ISO/IEC 17025, 검사분야는 ISO/IEC 17020, 경영시스템은 ISO/IEC

17021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함

- 또한, 외부 자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은 위탁 업무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외부 위탁기관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내 친환경인증

- 국내 인증기관규정에도 외부자원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도입되어 있음.
 - 외부위탁 분야는 시험분석 분야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증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는 준수 의무 사항은 체계적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시험분석 외의 분야에 대한 외부위탁의 허용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행 체계의 유지가 타당함

<표 2-22>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외부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 ISO 17065 4.1.1 | 친환경 인증기관규정(별표 1 제1호 나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국제 표준의 적용이 가능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관과 기타 인증 규범에 따른 평가 활동을 아웃소싱 해야 한다. 테스트 ISO/IEC 17025, 검사는 ISO/IEC 17020, 경영 시스템 감사는 ISO/IEC 17021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 수행자의 공정성 요구사항은 항상 적용 가능해야 한다. ※ 일부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인증기관 내의 전문 지식을 평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시험 입회 포함), 조사(조사 방법 또는 파라미터 검사), 경영 시스템 평가(경영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기관의 관리 범위 ● 특정 요구 사항이 이 국제 표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 여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대한 아웃소싱이 포함될 수 있다. 계약에 따른 외부 인력 사용은 아웃소싱이 아니다. ※ 이 국제 표준 목적상 "아웃소싱" 및 "하도급"이라는 용어는 동의어로 간주된다. ■ 평가 활동이 비 독립 기관(고객 실험실)에 아웃소싱 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평가활동이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신뢰를 정당화하는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기밀성 보장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아웃소싱 기관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 인증기관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 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농관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농관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위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⑦ 위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산물: 토양(중금속, 잔류농약), 용수(농업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생산물(잔류농약, GMO), 퇴비(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② 축산물: 토양(중금속, 잔류농약), 용수(생활용수기준), 사료(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GMO), 축산물·혈청·가축분뇨(잔류농약, 동 |

| | |
|-------------------------------------------------------------------------------------------------------------------------------------------------------------------------------------------------------------------------------------------------------------------------------------------------------------------------------------------------------------------------------------------------------------------------------------------------------------------------------------------------------------------------------------------------------------------------------------------------------------------------------------|--------------------------------------------------------------------------------------------------------------------------------------------------------------------------------------------------------------------------------------------------------------------------------------------------------------------------------------------------------------------------------------------------------------------------------------------------------------------------------------------------------------------------------------------------------------|
| <p>① 다른 기관에 아웃소싱 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p> <p>② 아웃소싱 결과의 신뢰성이 손상 되는 관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p> <p>③ 인증 활동에 사용되는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자격,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 절차 및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p> <p>④ 승인 된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유지한다.</p> <p>⑤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알게 된 시정 조치를 이행한다.</p> <p>⑥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웃소싱 활동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다.</p> <p>※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자격부여, 평가 및 모니터링이 다른 조직(인증기관, 동등성 평가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자격부여 및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요구 사항 내에서 제공된다. ● 범위는 수행 중인 임무에 적용된다. ● 자격, 평가 및 모니터링 조치의 유효성은 인증기관이 결정한 주기로 확인된다. | <p>물용 의약품)</p> <p>③ 가공식품: 용수(먹는물 수질기준), 생산물(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GMO, 첨가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는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위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 분석업무를 위탁계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검정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은 계측 및 분석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관의 신용도, 분석의 정도관리, 위탁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한계

□ 인증 목적

○ 현재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인증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에서 법의 목적 명시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

-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 동어반복 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각각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함.

-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 -> 즉, 친환경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 인증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제시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인증신청 과정

-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인증품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실제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는 이러한 외부위탁 공정이 누락되어 인증 적합성 평가가 미흡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도 함
- 이는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인증 평가·검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인증기관이 신청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증신청 검토과정

- ISO 17065의 인증 신청단계에서의 검토절차와 관련되는 국내 인증규정에 따른 인증 신청서 검토 단계는 신청서류의 접수를 위한 첨부 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증기관이 신청받은 건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ISO 17065와는 차이가 있음
- 향후에는 인증신청 건에 대한 인증 수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문서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인증심사과정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인증조사(평가)의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일정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에 필요한 준비와 관련되는 규정을 자세히 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시험분석 외의 인증조사 업무를 외부위탁하는 것은 인증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어 외부 위탁업무의 범위는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기능만 허용하고 있음.

○ 인증 조사결과에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인증 부적합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이때, 인증기관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증 신청인에게 부적합으로 통보하고 종결함

○ 인증심사원은 인증 적합성 검토 및 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토와 인증 결정은 인증심의관이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향후에는 인증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 적합성을 결정하는 심의관의 지위를 인증기관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임.

□ 인증결정 과정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서 인증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인증기관이 임명한 인증 심의관이 수행함.

- ISO 17065 7.5~7.6에 해당하는 검토 및 인증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인증심의관은 인증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인증심을 할 수 없고,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함.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서 인증심의관의 지위는 상근 심의관이거나 비상근 심의관이거나 관계없이 공정성이 완전하게 투명하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구조임.

- 그렇기 때문에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관과 인증기관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인증기관의 공정성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

□ 인증에 대한 사후 감독

○ 우리나라 인증제도에 따른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승인한 후 해당 인증 건에 대하여 1년간의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사후관리와 인증갱신(ISO 17065의 정기조사에 해당)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관리방식도 유효기간 중에 실시하는 사후관리는 약식으로 진행되고,

인증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됨

-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인증 변경은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인증 품목을 추가하거나 인증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명칭, 주소, 인증 부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 승인을 위해 인증조사과정을 통해 그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다만,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인증에 대한 종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 ISO 17065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인증이 일시 정지되고,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다시 복원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친환경 인증제도에는 인증 취소, 인증 표시정지, 표시제거 등의 행정처분이 문서시행과 동시에 모든 것이 확정적임

- 인증취소는 다시는 복원되지 못하고, 인증이 취소된 후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인증을 다시 신청 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됨

□ 인증결과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 국내 인증기관규정도 불만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ISO 17065를 참고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 사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되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4. 친환경농산물 과정중심 인증으로의 전환 주장 검토 3)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현재의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심 검사에서 생산 과정의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규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유병덕 외, 2018)
 - 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과정중심 인증제도로의 전환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음.

1) 배경

- 친환경농산물인증 심사방법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됨

3) 유병덕 외, 2018년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 국회의원 박완주, 경실련. 2017.11.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국회의원 윤소하. 2017.11.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상기 두 토론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이 제시됨
 - ① “유기농”의 정의와 목적을 재설정
 - ② 인증방법론을 과정 중심으로 전환
 - ③ 인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 이유

- 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한계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
 - 2017년 8월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 생산자가 스스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일이 발생 →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두 곳의 계란에서 DDT 검출: 각각 0.028ppm, 0.047ppm으로 계란의 잔류농약허용한계 0.1ppm보다 낮게 검출
 - 당시 무항생제 계란의 기준에서 잔류농약의 검출한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아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치였음
 - DDT는 더이상 생산·유통·사용이 단절된 성분으로, 검출 원인은 생산자의 사육과정과 무관
- 생산자가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분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친환경적인 생산과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과정중심 인증제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과정중심의 인증심사방법의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
 -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의제 등에 대한 각 분야별(인증, 제도, 정책 등 5개 분야) 실무협의회 위원들 간 검토 및 논의
 - 의제 13호: ‘친환경인증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의제 14호: ‘결과중심 인증에서 과정중심 인증으로 전환’
-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인증관리 강화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인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호 신뢰 등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과정 중심의 인증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 친환경농업의 목적이 식품안전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하고,
- 인증 농업인들의 인증부적합률과 인증취소가 높으므로 심사방법으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

□ 과정중심 인증제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응

- 이해관계자 중에는 과정중심의 심사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사중심 방법을 폐지하는 일에 신중히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음
 - 소비자측 일부 단체에서는 인증심사를 과정중심으로 개선하는 일을 잔류 농약 검사를 폐지하는 일로 보는 시각이 있어 과정중심 심사방법이 기존의 방법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이해
 - 잔류농약검사 기술의 발전과 정부기관(농관원)이 구축한 효율적 검사 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검사기술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과정중심의 심사방법이 도입되더라도 잔류농약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술의 검사 의존성을 조정하고 생산과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심사방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 주장

2) 현 인증제도의 결과중심 인증 문제점 검토

(1) 인증제도의 종류와 특성 관련 문헌 검토

- 유병덕 외(2018)의 연구는 ISO의 인증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체계에 적용하여 분석함.

□ 제품류 인증과 시스템 인증

- 제품류 인증
 - 인증기관들의 운영원칙은 국제기준이 ISO/IEC 17065,
 - ISO/IEC 17065 자체가 일종의 시스템 인증에 해당됨
- 제품류 인증의 특징
 - 인증 대상은 제품 (그러나, 서비스와 프로세스(생산, 제조, 취급과정)도 인증 대상에 포함됨).

- 품질, 서비스,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한 인증표시에 사용
- 소비자의 구매 정보로 활용
-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인증표시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동시에 병행 생산 가능

○ 시스템 인증

- 구체적인 제품이 아니라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운영 수준이 충분히 달성 되었음을 인증하는 것
- 예를 들면, ISO 22000 인증은 식품 제조업자 및 취급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있음을 인증하는 것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구체적인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친환경적으로 생산·제조 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인증이 아니라 제품류인증에 해당”

○ 시스템 인증의 특징

- 인증 대상은 운영체계 (조직구성, 대표자, 경영원칙, 생산 및 관리원칙 등)
- 상대기업의 운영체계 수준을 파악하고 신뢰확보를 위한 목적에 이용됨.
- 따라서 소비자 대상 인증표시는 아님.
- 시스템 인증의 예 : ISO9001, ISO17065, ISO14000, 식품안전 관련 인증 (HACCP*, GAP*, BRC, FSSC22000, ISO22000 등)
- 시스템 인증은 전체 회사에 적용되는 운영체계를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인증 상품과 동시에 병행 생산이 불가함.

| | 제품류 인증 | | | 시스템 인증 |
|------|----------------------------------------|---------------|--------------------|---------------------------------------------------------|
| | 제품인증 | 프로세스 인증 | 서비스 인증 | |
| 사례 | KS, Q마크, 전통식품 등 |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등 | 시설관리 인증, 휴양콘도마니엄 등 | ISO9001, ISO14000, ISO22000, 해외 HACCP, 해외 GAP 등 |
| 인증표시 |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표시 | | | 제품에 인증표시 하지 않음. 회상의 홍보에만 이용 |
| 기준 | 최종 제품의 기준 설정, 또는 제조과정 및 관리과정에 대한 기준 설정 | | |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적 적용,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 |
| 목적 | 제품표시(라벨링)를 규제 | | | 회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또는 안정을 보장 |
| 이용자 | 소비자, B to C | | | 사업자, B to B |
| 병행생산 | 가능 | | | 불가 |

자료: 이시도르연구소(2016)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판단

- 유병덕 외(2018)은 제품류 인증에 해당하다고 판단함.
 -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인증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질을 심사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운영체계 전부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음 (병행생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소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인증표시를 인식하도록 함

- 과정에 관한 기준: 생산주체의 의지로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 건강한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 선택
 - 식품 또는 동물이 성장하기 위한 온실, 축사 등 환경을 조성
 - 병해충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
 - 생물다양성을 위한 천적 서식처 보존
 - 농약의 비산, 유입 등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지 설정
 - 식물 또는 동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종자, 퇴비, 사료, 약품 등의 투입
 - 성장한 식물과 동물로부터 생산물을 수확하여 관리

- 결과에 관한 기준: 생산주체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
 - 예컨대: 생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 항생제 성분 등
 -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
 -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용수의 수질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분석 결과 판단

- 유병덕 외(2018)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유기농 인증기준을 분석하였음
 -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중복 기재된 기준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 경영관리 등 생산·관리 과정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제외
 -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특수 작물의 기준은 제외
 - 26개의 기준으로 분석 대상 조항을 재구성

- 과정과 결과를 분류하는 기준은 생산자가 자기 의지로 조정이 가능한 기준인지 (이 경우 과정에 관한 기준으로 분류)에 대한 여부임
 - 하나의 기준이 생산과정과 생산결과를 동시에 의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분류된 두 종류의 기준 수의 합은 30개

- 심사방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IOIA 심사방법론에서 분류한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
 - 물리적 관찰, 관계자 인터뷰, 추적심사, 시험분석
 - IOIA 심사방법론에서 시험분석은 사실 생산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지, 시험분석 결과로 나온 단일한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님
 - 한국의 시험분석 관련 기준은 결과적으로 도출된 단일한 수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IOIA 심사방법론과 분석결과의 활용방법과 다르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분류 방법만을 차용

- 분석 결과
 - 생산과정 지향의 기준이 24개, 생산결과 지향의 기준이 6개로 대부분 생산과정 지향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생산결과 지향의 기준 6개는 생산과정 지향의 기준보다 적은 수이지만, 인증 여부에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
 - 예컨대, 생산과정 지향의 기준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배한 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가 검출되는 경우 인증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인증심사에서 시험분석의 비중
 -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2호의 별표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 사항>에서 규정된 심사방법론의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시험 분석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과정중심 심사방법(관찰, 인터뷰, 추적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과정중심의 심사방법이 언급된 부분은 1.다.3) 현장확인 사항으로 기술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2호의 별표 2. 심사방법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 (3) 인증 신청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 (4) 인증 신청 시 제출한 경영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던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심사방법 분석(농관원 고시 제2017-32호, 유병덕 등 2018)

| 기준조항 | 키워드 | 과정/ 결과 | 관찰 | 인터뷰 | 추적 심사 | 시험 분석 |
|----------------------------------|---------------------------|------------------------|-----------|-----------|-----------|----------|
| 별표3.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 토양오염우려기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 | 과정, 결과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 토양오염 우려 기준, 유기합성농약 | 결과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2)~3) | 토양 검정, 토양 비옥도 | 과정, 결과 |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4) | 완충지대 | 과정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5) | 인증취소 재배지 | 과정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6) | 전환기간 | 과정 |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7)~6) | 전환기간 시작 시점 | 과정 |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나)~다) | 전환기간의 단축 및 연장 | 과정 | ○ | ○ | ○ | |
| 별표3.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3) | 수질기준 | 과정, 결과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2) | 종자·묘 | 과정 | ○ | ○ | ○ | |
| 별표1. 2.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 | 과정 | ○ | ○ | ○ | |
| 별표3. 2. 다. 재배 방법 1)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 과정 | ○ | ○ | | |
| 별표1. 2. 다. 재배 방법 2) | 윤작 | 과정 | ○ | ○ | ○ | |
| 별표1. 2. 다. 재배 방법 3)~4)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 | 과정 | ○ | ○ | ○ | |
| 별표1. 2. 다. 재배 방법 5) | 가축분뇨, 완전 부숙, 항생물질 | 과정, 결과 | ○ | ○ | ○ | ○ |
| 별표1. 2. 다. 재배방법 6) | 병해충 및 잡초 | 과정 | ○ | ○ | ○ | |
| 별표1. 2. 다. 재배방법 7) | 공시제품 | 과정 | ○ | ○ | ○ | |
| 별표3.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 수확·저장·포장·수송 | 과정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 혼합, 칸막이 | 과정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2) | 시설 내 병해충 관리 | 과정 |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3) | 수송 컨테이너, 병해충 관리방법 | 과정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4) | 저장장소, 잠재적인 오염 | 과정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5) | 유기농산물 세척 소독 | 과정 |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6) | 방사선 | 과정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7) | 포장재 | 과정 | ○ | | ○ | |
| 별표1. 2.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8) | 농약잔류 허용기준 | 결과 | | | | ○ |
| 합계: 26개 기준 | | 과정 24, 결과 6 | 23 | 17 | 15 | 6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이 세부사항 콘텐츠 분석(유병덕 등 2018)

| 대분류 | 주제 | 세부 콘텐츠 | 비고 |
|---------------|-------------------|---------------------------------------------------------------------------------------------------------------------------------------------------------------------------------------------------------------------------------------------------------------------------|---------------------------------------------------------------------------------------------------------------------------------------------------------------|
| 1. 인증심사 일반 |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 심사원 지정 방법과 원칙에 대한 사항 | |
| | 나. 서류심사 |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누락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음 | 서류심사의 정의를 추적심사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 | 다. 현장심사 | 1)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적인 기술 2) 심사의 시기 3) 현장 확인 사항 가) 신청내역과 생산내역 비교 나) 생산계획서 실천 여부 다) 금지물질 사용 여부 라) 인증기준 적합 여부 마) 단체의 경우 예비심사내역 4) 필요하면 시험분석 실시 5)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6) 시험분석의 검사 항목 7) 검사기관 8) 검사방법 9) 시료수거 방법 10) 심사보고서 교부 방법 |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작회의, 종료회의, 부적합사항 조치, 보고서 작성법 등 심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없음. 관찰, 인터뷰, 추적심사의 방법론에 대해 언급되지 않고 대부분 시험분석에 관한 내용 |
| | 라. 추가심사 | 불충분한 심사에 대한 추가심사 | |
| | 마. 심사결과보고 | 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장에 제출 | |
| | 바. 심사결과에의 판정 | 인증심의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
| |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 단체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으로 주로 표본농가의 수에 관하여 언급 | |

3)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주장

- 유병덕 외(2018)은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방법은 시험분석에 의존하여 결과 중심의 인증심사를 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IFOAM/IOIA 국제유기심사 매뉴얼 등 국제적 규범과 대조된다고 주장함

- 인증기준의 구성을 보면 과정지향의 기준이 결과지향의 기준보다 더 많은 수를 이루고 있지만, 인증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등의 기준이 과정지향의 인증기준을 압도함.

- 친환경농산물 심사방법을 과정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증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등 시험분석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과정중심의 심사방법(인터뷰, 관찰, 추적심사)이 자세히 기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험분석 방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안 제시

- 유병덕 외(2018)은 인증심사원들에게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이론과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함.
 - 위험평가는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심사)를 실시하는 인증심사원의 고유권한이자 중요한 책임
 - 인증심사원이 사진, 녹취, 문서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도 현장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불완전하게 나타내므로 인증심사원이 현장에서 위험평가를 완수하여야 함
 - 인증심사원이 자신의 재량으로 위험평가를 하지 않고 상급 기능(인증심의관 등)이나 감독기관(농관원 등)에 평가를 전가하거나 그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 잔류농약검사에 위험 기반 접근은 어려워 짐
 -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생산자에게 잔류농약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판품 조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의도적 위반과 비의도적 오염을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
 - 시판품 조사에서는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검출농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Protocol)의 수립이 필요
 - 특정 성분의 특정 작물에 대한 MRL 대비 (또는 관행 농산물의 평균검출 농도 대비) 잔류농약 검출농도의 비율에 따라 대응 절차를 마련
 - 잔류농약 검출농도에 따른 대응 프로토콜을 제안함. 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합치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잔류농약검출의 원인 규명 및 생산자의 시정 조치는 별도의 규정 마련
- 잔류농약검출 여부 및 농도와 리스크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유용한 데이터셋(Data Set)의 설계 필요
 -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요소는 생산자유형(단체/개인/법인), 인증경력, 잔류농약검출 경력, 포장(圃場)유형, 품목, 전작(前作) 등

- 잔류농약검사 시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입력하도록 프로그래밍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과 연계 방안 마련

5. 과정/결과 중심 논쟁의 한계점

- 유병덕 외(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정/결과 중심 인증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과정/결과 중심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 인증기준에 생산과정과 최종 농산물의 상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현재는 최종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시험검사가 너무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기준을 결과 중심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 왜냐하면, 과정/결과 중심 인증(정책)이 내포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벗어나 있기 때문임.
 - 둘째, 인증제도 시행의 목적이 불명확함.
 - 인증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인증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과정/결과 중심 인증 중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셋째, 과정/결과 중심 인증에서의 주요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현재 과정 중심 인증으로의 전환 주장에서는 현재 인증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결과에 대한 시험검사만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과정중심 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과정중심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추가되어야 함은 당연한 상황임.
 - 그러므로 과정 중심 인증에서 보완해야 할 과정 인증 활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임.
 - 넷째, 현행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의 제품생산 규격처럼 과도하게 친환경농산물 생산방법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특히, 농민들이 현장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 과학적 검증을 거친 농법과 기술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
- 따라서 생산과정에 대한 과도한 인증보다는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결과물 인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즉, 친환경농업의 주요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자체의 품질을 규격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이러한 논점을 기반으로 관련된 외국의 문헌을 검토하여 참고하고자 함.

6. 인증방식 관련 개념 검토

○ 과정/결과 중심의 인증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외국 문헌에서의 개념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음.

1) 과정(Process-based)과 결과기반(Result-based approach) 개념 비교

○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 과정기반 방식의 특징

- 특정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사용됨.
 - 생산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여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됨
 - 행위자가 과정에서 초점을 둘 경우 이들의 행위나 인식은 성장하지 않음.
 - 따라서 이것은 특정한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자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음.

□ 결과기반 방식의 특징

- 생산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사용함.
 -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 가능함.

<표 2-23> 과정/결과 기반 방식의 특징

| 과정기반 방식 | 결과기반 방식 |
|----------------------------------------------------------------------------------------------------------------------------|--------------------------------------------------------------------------------|
| 공식적, 자기 통제적, 임무기반적, 기계적, 확정적 시스템의 설정 (sets in formal, self-disciplined, task-based, mechanical, and established system) | 형태보다는 목표 달성에 집중 (focus on meeting objectives other than following patterns) |

| | |
|----------------------------------------------------------------------------------------|-----------------------------------------------------------------------------------|
| 표준작업지침과 규칙 준수에 중점 (focus on complying rules and following SOPs) | 신축적인 작업방식 적용 (gives you a flexible work approach) |
| 과정과 목표 강조 (emphasizes on the route map equally as the destination) | 장애를 극복하는 발전과 위험 감수 (needs progress irrespective of constraints and take risks) |
| 원활한 운영의 유지 (likes to keep things smooth and running) | 유형 인식과 직감 포함 (involves pattern recognition and instincts) |
| 현상 유지 및 보고체계 중요 (doesn't challenge result status quo, needs complete documentation) | 모호하고 불안정한 정보 취급 (can work with incomplete information with ambiguity.) |

2) EU의 결과기반(Result-based)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논의

- EU는 2014년부터 결과기반 농업환경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주로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임.

□ 결과기반 지불금정책(Results-Based Payment Schemes: RBPS)

- 결과기반 지불금정책(Results-Based Payment Schemes: RBPS)은 “명확하게 선정된 환경적 성과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서 농민이나 토지경영자들은 그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Keenleyside et al: 2014)
 - 이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으로는 ‘에코시스템 서비스 지불금(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성과중심 정책(Outcome focused schemes)’, ‘결과 지불금(Payment by results)’ 등이 사용되고 있음.
- 결과기반 농업환경정책은 주로 새의 수, 식물 종의 수 등의 환경적 성과에 대해서 농민과 토지 관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사용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민과 토지 관리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관리방법에 대해 농민과 토지 관리자에게 일임함으로써 농업생산 시스템의 일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자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 (Keenleyside et al: 2014)
- EU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기반 농업환경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순수한(pure) 결과기반 농업환경정책은 지불금이 오직 환경적 성과에만 연계되어

지불금과 생물다양성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음.

- 이와 함께 자격기준, 지불금액, 시설지원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와 전체적인 농업환경정책에 포함되어서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행위관리기반 지불금(Management-Based Payment Schemes: MBPS)’

- 상대적인 개념으로 현재 농업환경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행위관리기반 지불금(Management-Based Payment Schemes: MBPS)’으로 구분함.

- 이것은 “농민이나 토지경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영농 행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Keenleyside et al: 2014)

□ ‘융합적 지불금(Hybrid payment schemes)’

- 결과기반 방식과 행위관리기반 방식이 서로 혼합된 ‘절충형(Hybrid)’ 정책도 있음.
 - 지불금은 달성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관리행위도 준수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관리행위의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결과기반 보상이 추가 지불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Keenleyside et al: 2014)

-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활동과 함께 생물다양성과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토지관리 방식에 대해 농민과 토지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결과기반 농업환경정책의 필요성

- RBPS 정책에서 농민은 특정한 생물다양성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협약하는 것임.
 - 이와 달리 MBPS 정책에서는 농민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협약하는 것임.
- RBPS 정책은 MBPS 정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농민과 운영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음.(Keenleyside et al: 2014)
 - 지불금과 생물다양성 성과 간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연계
 - 간단히 필요한 성과만을 협약에 기술하는 것(이에 비해 MBPS에서는 농민의 세부적인 영농행위를 기술해야 함)
 -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관리 기술, 지식, 판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업가적인 노력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음. (이에 비해 MBPS에서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지침만을 따라야 함)

- 농민들은 생물다양성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짐. 따라서 이것은 생물다양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EU의 농업환경기후 시책에서 강화된 필수사항에 대한 증명 부분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음.
- RBPS 정책은 생물다양성 결과를 달성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이와 달리, MBPS정책이 좀 더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Keenleyside et al: 2014)

- 생물다양성의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농장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경우
- 운영기관이 RBPS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민단체들이 결과기반 접근법을 거부하는 경우.

3)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에서의 이행중심(Implementation focused)과 결과기반(Results-based) 방식에 대한 개념적 비교⁴⁾

□ 이행중심 방식의 특징

○ 전통적인 이행중심 방식 M&E는 “해야 하는 것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준수 의무(Compliance)’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됨.

- 필요한 투입재(inputs)를 사용했는지?
- 규정된 행위(activities)를 수행하고 완료했는지?
- 의도했던 산출물(outputs, products or services)을 생산했는지?

○ 이행중심 방식은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얼마나 잘 수행(executed)되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이행에 대한 책임을 특정 단위에 연계시킴.

○ 그러나 이러한 이행중심 방식은 정책형성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에게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은 아님.

4) Kusek, J.Z. & R.C. Rist, 2004, *Ten Steps to a Results-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A Handbook for Development Practitioners. World Bank, Washington, D.C.

□ 결과기반 방식의 특징

- 결과기반 방식 M&E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so what)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임.
 - 생산된 산출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 발생된 행위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연계된 행위들을 통해서 도출된 산출물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이를 통해서 결과기반 방식은 정부가 시행한 행위의 목적(goals)과 실제 성과(outcomes)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줌.
 - 조직(organization)의 목적은 무엇인가?
 - 목적이 성취되었나?
 - 그 성과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나?

□ 이행과 결과 모니터링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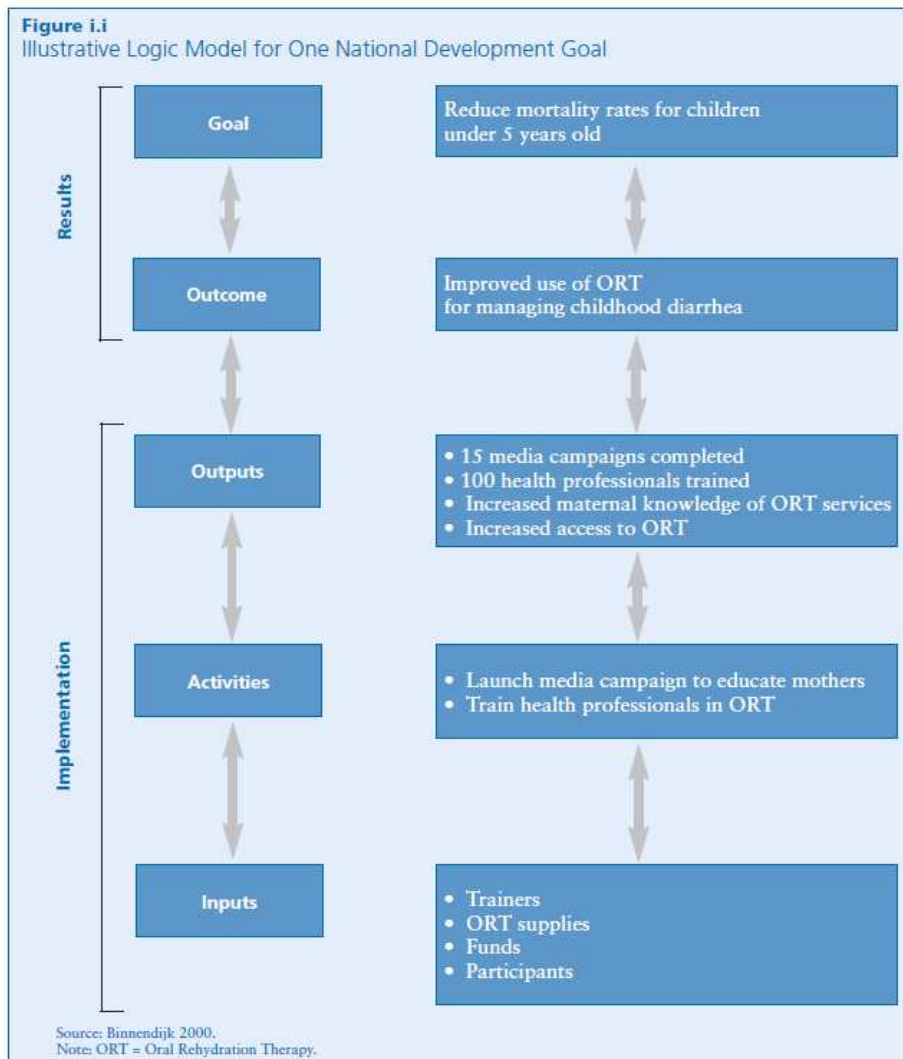
<표 2-24> 이행과 결과 모니터링 방식의 주요 특성

| 이행 모니터링 요소 | 결과 모니터링 요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 전에 문제와 상황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problem or situation before the intervention) • 행위와 직접 산출물의 수준 제시 (Benchmarks for activities and immediate outputs) • 투입재, 행위, 직접 산출물에 관한 자료 (Data collection on inputs, activities, and immediate outputs) • 투입재 제공에 관한 내용 보고 (Systematic reporting on provision of inputs) • 산출물 생산에 관한 내용 보고 (Systematic reporting on production of outputs) •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 (Directly linked to a discrete intervention(or series of interventions)) • 행정, 이행, 관리에 관한 정보 체계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 전 문제와 상황 설명 기본 자료 (Baseline data to describe the problem or situation before the intervention) • 성과 지표 (Indicators for outcomes) • 산출물 및 성과달성 기여 여부와 방법에 관한 자료 수집 (Data collection on outputs and how and whether they contribute toward achievement of outcomes) •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More focus on perceptions of change among stakeholders) • 성과의 진전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보고 (Systemic reporting with mo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toward outcomes) • 전략적 파트너의 활동 (Done in conjunction with strategic partners) |

| | |
|----------------------------------------------------------------------------|---------------------------------------------------------------------------------------------------------------------------------------------------------------------------------------------------|
| management issues as opposed to broa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issu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성과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전략의 실패/성공에 관한 정보 수집 (Captures information on success or failure of partnership strategy in achieving desired outcomes.) |
|----------------------------------------------------------------------------|---------------------------------------------------------------------------------------------------------------------------------------------------------------------------------------------------|

자료 : Fukuda-Parr, Lopes, and Malik 2002, p. 11.

- 결과기반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임.
 -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이 당초 기대한 결과에 비해서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임.
- 다음 그림은 결과기반 모니터링이 이행중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7. 인증방식 개념 검토의 시사점

- 첫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지향과 목표가 다양하게 구성됨
 - 농업 및 농촌환경의 보전, 농가소득 증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농산물 품질 향상, 소비자 안심 보증 등 다양한 목적 중에 어느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애매함.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달성 불가이거나 효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음.

- 둘째, 과정/결과 중심 방식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의 개념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과정 중심이나 결과 중심 방식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절차와 요소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기술적인 요소만을 중심으로 과정/결과 중심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
 - 각 개념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 셋째, 이행/결과 중심 방식을 혼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임
 - 과정/결과 중심의 이분법적인 구분 이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 따라서 과정/결과를 모두 혼용할 경우 현재 제도의 어떤 점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증 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록의 작성 및 유지”임.
 - 이러한 영농기록의 작성, 유지, 제출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장 농업인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일적으로 간략한 영농기록 작성 양식을 배포하거나 ICT를 활용한 간편한 입력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Ⅲ. 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비교

1. 유기농산물 인증 체계 비교

1)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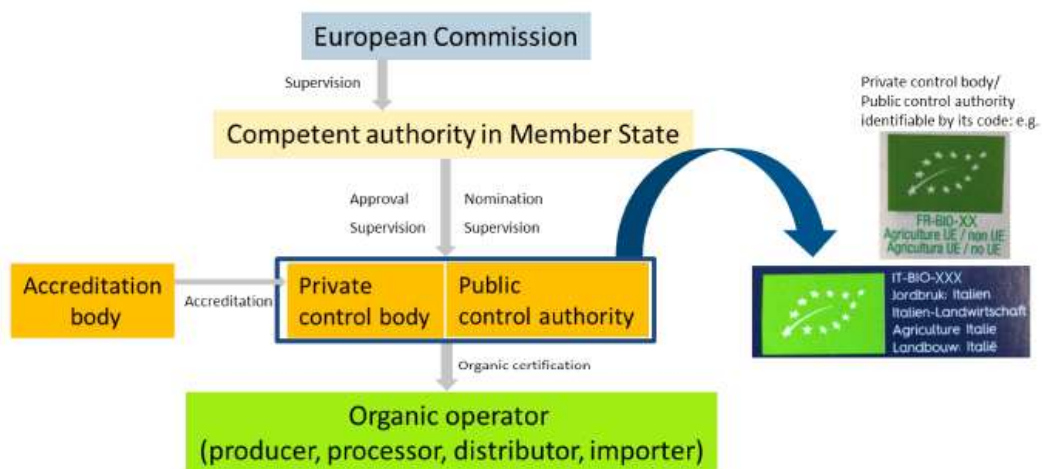
(1) 개요

- EU 회원국은 민간(private), 공공(public) 또는 이 둘을 혼합한 통제(control) 및 인증(certification)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은 승인된 민간 관리기관(control body)을 보유하고 있음.
 - 5개 회원국은 관리당국(control authority)이라고 하는 법제화된 공공 관리기관을 지명했으며, 2개 회원국은 혼합 시스템을 채택.
 - EU 전역에서 약 250개의 관리기관 및 공공 관리당국이 승인됨.

- 회원국은 관리기관을 승인·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집행 조치(제재 포함)를 적용할 책임이 있는 하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해야 함.
 - 민간 관리기관은 ISO 표준 IEC 17065:2012의 최신 버전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관리기관의 기술적 능력, 독립성, 공정성 및 전문적 무결성에 관한 것을 점검함.
 - 공공 관리청은 별도의 인정을 요하지 않음.

- EU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대략적인 인증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3-1> Control system for products produced in the EU



(2) 인증 심사 대상

- EU 규정 2018/848호 제5장(인증) 제34조(인증제도) 1항 규정
 -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 중인'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전 또는 전환기간 이전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 제품을 생산, 준비, 유통 또는 저장하는 제36조에 언급된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

- 제36조에서 운영자 그룹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조류 또는 양식 동물을 생산하고 식품 또는 사료의 가공, 준비 또는 시장 출시에 종사하는 농민 또는 운영자인 회원으로만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원의 자격은 “(i) 그 중 개별 인증 비용이 각 회원의 매출 또는 유기농 생산 표준 생산량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유기농 생산 매출이 EUR 25,000 이하 이거나 유기농 생산의 표준 생산량이 연간 EUR 15,000 이하인 경우” 이거나 “(ii) 각각의 최대 보유량: 5헥타르, 온실의 경우 0.5헥타르, 또는 영구적인 초원의 경우에만 15헥타르”임.

- 이러한 운영자 그룹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이 가능함.
 -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산 활동이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는 구성원 으로서만 구성됨.
 - 또한 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시스템을 설정해야 함 .
 -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그룹의 각 구성원에 대한 유기농산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서화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함.

- 결국, EU의 유기농산물 인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주도의 인증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음.

(3) 인증 심사 규정 개요

- EU 규정 2018/848호 제38조(인증심사 추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인 인증심사는 농산물 생산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EU 규정 2017/625⁵⁾에 따라서 수행됨
 - 즉,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반 농림축수산물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방법을

5) REGULATION (EU) 2017/625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적용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한 검증 절차는 일반 농산물과 동일함.

○ EU 규정 2017/6251의 제9조와 제28조에서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농림축수산물의 위험에 대해서 예방 및 예방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을 운영자가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유기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생산 규정의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EU 규정 2018/848의 38조에서는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전 과정에 걸쳐 규정(EU) 2017/625의 9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모든 대상은 1년에 1회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합성 검증은 현장검사를 포함함

- 현장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샘플 수를 선정하여 시행함

- 이와 함께 대상자의 의무(39조 1항)로 “모든 기록 유지(최소 5년 보관)”와 “필요한 사항 보고 및 조치 시행”이 규정되어 있음.

- 검증에 대한 사항은 관련 담당 기관이 결정함.

- 기타 미준수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 있음.

(4) 인증심사 기준 (EU 규정 2018/848)

□ 목표 (제4조)

○ 유기농업 생산은 다음의 목표를 추구함.

a) 환경 및 기후 보호에 기여합니다.

b) 토양의 장기적인 비옥도 유지

c)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

d) 독성없는 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여

e) 높은 동물복지 기준에 기여하고 특히 동물의 종별 행동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

f) EU의 다양한 지역에서 근거리 유통 채널과 지역생산 장려.

g)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및 토착 품종의 보존 장려

h) 유기농업의 특정한 요구와 목적에 적합한 식물 유전 물질의 공급 개발에 기여.

i) 특히 유기생산에 적합한 유기 이종 물질 및 유기 품종과 같은 다양한 식물 유전 물질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에 기여

j) 유기농 부문의 유리한 경제적 관점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농 식물 육종 활동의 개발을 촉진함.

□ 인증심사 기준

- EU 규정 2018/848호 제3장(생산규칙) 제9~29조까지 제시하고 있음.
 - 각 부문별 세부규정은 부록 3에서 제시하고 있음.
 - 제9조 일반 생산 규칙
 - 제10조 전환
 - 제11조 GMO 사용 금지
 - 제12조 식물 생산 규칙
 - 제13조 유기 이종 물질의 식물 생식 물질의 마케팅에 대한 특정 조항
 - 제14조 가축 생산 규칙
 - 제15조 조류 및 양식 동물에 대한 생산 규칙
 - 제16조 가공 식품의 생산 규칙
 - 제17조 가공사료 생산규칙
 - 제18조 와인 생산 규칙
 - 제19조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의 생산 규칙
 - 제20조 특정 가축 종 및 양식 동물 종에 대한 특정 생산 규칙의 부재
 - 제21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에 언급된 제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생산 규칙
 - 제22조 예외적인 생산 규칙의 채택
 - 제23조 수집, 포장, 운송 및 보관
 - 제24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 및 물질의 승인
 - 제25조 회원국의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한 비유기농 농산물 승인
 - 제26조 유기 및 전환 중 식물 생식 물질, 유기 동물 및 유기 양식 새끼의 시장 가용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
 - 제27조 불이행이 의심되는 경우의 의무 및 조치
 - 제28조 승인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
 - 제29조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5) 이행점검에 관한 규정 (EU 규정 2017/625)

- 제34조 샘플링, 분석, 테스트 진단 규정
 - EU의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수락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만 사용
 - 점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함.
- 제35조 두 번째 전문가 의견 반영 규정
 - 샘플 테스트 결과에 대해 운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2차 전문가에 의뢰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음.

○ 위반 사항 조사에 관한 규정 (29조)

- 규정(EU) 2017/625에 따라 즉시 공식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조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어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케이스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함.
- 관련 운영자는 1항의 (a)항에 언급된 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기회가 주어짐
- 제35조의 규정으로 2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추가 조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2) 영국

○ 영국도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인증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기농 인증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private), 공공(public) 또는 이 둘을 혼합한 통제(control) 및 인증(certification)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 유기농 인증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하는 인정청(United Kindom Accreditation Service, 이하 UKAS)에서 유기농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 영국의 유기농산물 인증 목적⁶⁾

- 농업인의 유기농 생산 체계가 아래의 유기농 생산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organic production)에서 언급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환경, 보건, 동식물 건강, 복지 등에 위해를 주지 않는 생산과정을 사용하여 충분한 양과 고품질의 식품 생산⁷⁾.
 - 생물다양성 활성화와 경관 및 환경에 민감한 서식지 보호⁸⁾.
 - 토양 다짐과 토양 침식 방지 및 토양 생태계를 활용한 식물 양분 공급을 위하여 토양 건강과 토양 비옥도, 토양 안정성과 토양 생물다양성 유지·강화⁹⁾.
 - 지역, 환경, 기후와 지정학적인 차이 존중 및 이러한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 마련¹⁰⁾.

6)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7~8p

7) To produce food of high quality and in sufficient quantity by the use of processes that do not harm the environment, human health, plant health or animal health and welfare.

8) To foster biodiversity and protect sensitive habitats and landscape features

9)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soil life and natural soil fertility, soil stability and soil biodiversity preventing and combating soil compaction and soil erosion, and the nourishing of plants primarily through the soil ecosystem

10) To respect regional, environmental, climatic and geographic differences and the appropriate practices that have evolved in response to them

(2) 인증 심사 대상

- 영국에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유기농 사료 등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 가공기업, 농식품 수입기업은 영국 정부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¹¹⁾.
 - 영국 유기농 인증은 농가부터 유기농 제품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공급 사슬에 연계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들이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려면 유기농 인증기관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¹²⁾.
 - 유기농 인증 품목은 식품 및 음료(Food & Drink), 임산물(Forestry), 영농활동(Farming), 미용 및 웰빙(Beauty & Wellbeing), 의류 및 직물(Fashion & textiles)임¹³⁾.
 - 단체인증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음¹⁴⁾.
 - 영국 정부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은 유기농 제품에 인증 기관 식별코드인 GB-ORG 코드를 갖고 있어야 함.

<표 3-1> 영국 정부 승인 유기농 인증 기관

| 분류 | 기관명 |
|------------------------|-----------------------------------------------------------------------------------------------------------------------------------------------------------------------------------------------------------------------------------------------------------------------------------------------------------------------------------------------------------------------------------------------------------------------------------------------------------------------------|
| 영국 정부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Farmers & Growers CIC (GB-ORG-02) - Organic Food Federation (GB-ORG-04)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GB-ORG-05) - Biodynamic Association Certification (GB-ORG-06) - Irish Organic Association (GB-ORG-07) - Organic Trust CLG (GB-ORG-09) - Quality Welsh Food Certification Ltd (GB-ORG-13) - OF&G (Scotland) Ltd (GB-ORG-17) |

자료 :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 영국 정부에서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중 인증 대상에 단체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곳은 아래와 같음.
 - 영국 유기농 농업인 및 재배자 협회(Organic Farmers & Growers CIC)는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¹⁵⁾

11) <https://www.gov.uk/guidance/organic-food-uk-approved-control-bodies>

12) <https://www.soilassociation.org/our-standards/what-are-organic-standards/>

13) <https://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

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rganic-certification-list-of-uk-approved-organic-control-bodies/approved-uk-organic-control-bodies>

15) Any person or organisation intending to produce or process organic products must be subject to an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procedure by an approved Control Body.

- 영국 유기농 식품 연맹(Organic Food Federation)의 경우 대상을 크게 생산자(농업인, 어업인), 가공업자(식음료, 제조업, 제빵, 포장업, 도축업, 저장업, 수입업, 운송업 등 포함) 2가지로 분류하고 있음¹⁶⁾¹⁷⁾
 -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는 소, 양, 낙농, 대규모 경종, 원예, 화훼 등 모든 종류의 농장 및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과 포장 등에 대한 인증도 실시하고 있음¹⁸⁾¹⁹⁾.
 - 아일랜드 유기농 협회(Irish Organic Association)는 유기농 인증 대상을 ‘농업인과 재배업자(Farmers and Growers)’로 분류할 뿐 별도의 단체인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²⁰⁾
- 유기농 농가와 유기농 식품기업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유기농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기농 인증을 위한 충분한 체계와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함.
- 유기농가와 식품기업이 유기농 인증을 받게되면, 인증서와 거래 기간을 부여 받으며, 모든 작물, 가축 또는 제품은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래됨. 유기농 인증서는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로, 유기농 제품을 판매 시 유기농 인증 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함.
- EU 외부 국가로부터 유기농 상품 수입 시, 유기농 인증서와 수입 인증서가 모두 필요한데, 이는 EU 내에서 적용하는 유기농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이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임.
- 유기농 인증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입증하려면, 유기농 인증 기관이 매년 스스로 인증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유기농 인증기관 자격 여부 검증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 매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 검증 여부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 영국 인정청(UKAS)이 실시함.

(3) 인증 심사 신청 절차

16) Processor - (Food and Beverage, Manufacturers, Bakeries, Packers, Butchers, Grain Storage, Box Scheme, Importers, Storage, Warehouse and Transport)
 Producer - (Farmers, Aquaculture)

17) <http://www.orgfoodfed.com/our-standards/>

18) 영국 토양 협회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농장과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We certify all farm sizes and enterprises, from beef, sheep and dairy and large-scale arable holdings to field-scale horticulture and market gardens. We also provide organic certification for on-farm processing and packing, supporting you to add value to your products and grow your business by selling direct)

19) <https://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farming/>

20) <https://www.irishorganicassociation.ie/certification/farmers-and-growers/>

- 심사 신청서 접수 기관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영국 인정청(UKAS)에서 승인한 8개 기관이며²¹⁾, 이들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심사 신청 절차(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GB-ORG-05) 사례 예시)
 - 신청전 문의(Pre-application) : 전문 생산자 인증팀에 문의하여 인증 비용, 유기농 기준, 전환 절차, 인증 관련 사항 문의
 - 신청서 제출(submit your application) : 신청전 문의를 통하여 신청준비가 완료됨을 인증기관에 알릴 경우,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류들을 발송해줄 것이며, 서류를 작성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유기농 전환 기간이 시작됨
 - 인증 심사원과의 연락(Meet your certification officer) : 인증 심사원이 인증 심사건에 대하여 연락을 주면 인증심사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음.
 - 인증 심사원 방문(Your first visit from us) : 인증 심사원이 인증 신청 농가를 방문하면, 유기농 인증에 필요한 정보, 농장내 중요사항 변동을 기록할 보고 양식을 받게 될 것임.
 - 인증서 발급(Your first certificate) : 농가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검토에 착수하여 첫 인증서를 발급함.
 - 전환 기간 도래(Complete your conversion period) : 유기농을 위한 농경지 전환은 일반적으로 2년이 소요됨. 유기농 전환 2년차에 방문하여 인증 적합성 검사 일정을 조정할 것임.
 - 공식적인 유기농 인증 획득(You're officially certified organic) : 유기농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유기농 인증 농가로 지정될 것임. 최종 유기농 인증서를 발급하여 수여하면, 유기농 인증 기관의 인증 라벨을 부착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3) 미국

(1) 인증제도 개요

- 미국의 유기농 관련 국가 기준은 1990년 농업법 21편(Farm Bill Title 21) 내에 제정된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에 명시되어 있음.
 - 유기식품생산법(OFPA)은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과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됨.

21) Organic Farmers & Growers CIC (GB-ORG-02), Organic Food Federation (GB-ORG-04),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GB-ORG-05), Biodynamic Association Certification (GB-ORG-06), Irish Organic Association (GB-ORG-07), Organic Trust CLG (GB-ORG-09), Quality Welsh Food Certification Ltd (GB-ORG-13), OF&G (Scotland) Ltd (GB-ORG-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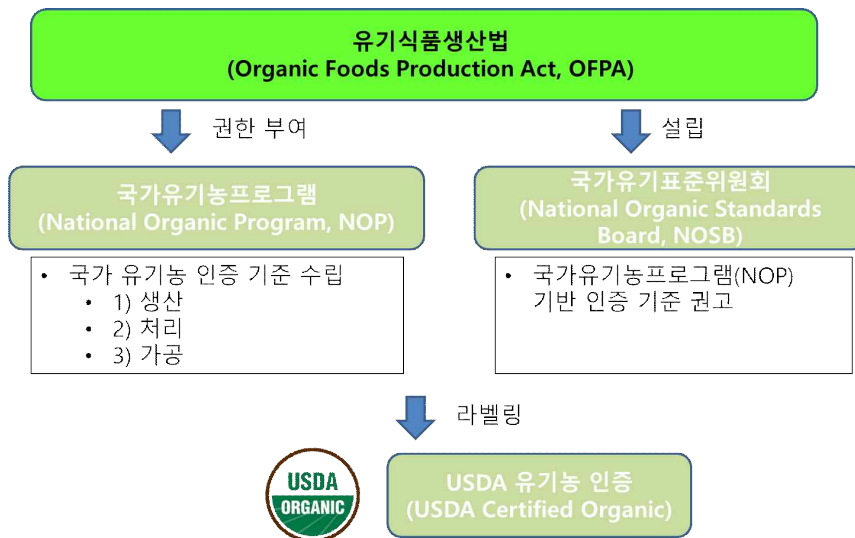
- 유기식품생산법(OFPA) 제정 이전에는 민간 인증기관이나 주 정부별로 인증이 상이했으나 제정 이후 국가 단위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은 농무성(USDA) 주관하에 유기농산물 재배, 관리, 가공 등의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유기농 생산 인증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는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의 유기농 기준 수립 시 정책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함.

- 농가는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면 자신들의 유기농산품에 ‘USDA Certified Organic(USDA 유기농 인증)’ 라벨을 부여받음.

<그림 3-2> 미국 USDA 유기농생산 관련 법규 및 제도



자료: Alternative Farming Systems Information Center, USDA의 내용을 재구성

<https://www.nal.usda.gov/afsic/organic-productionorganic-food-information-access-tools>

○ 이상의 유기식품생산법(OFPA),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 관련 법 체계는 ‘미국 연방법 7편 농업(U.S. Code Title 7 - Agriculture)’의 94장 ‘유기인증법(Organic Certification)’에 망라되어 있음.²²⁾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미연방정부의 행정 명령이 집대성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²³⁾ 7편 농업(Agriculture)²⁴⁾ 내 I장²⁵⁾26) Part 205²⁷⁾에 제시되어 있음.

22)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7/chapter94&edition=prelim>

23) 전체 50편(Title)으로 구성됨.

24) Subtitle B -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25) Chapter I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Standards, Inspections, Marketing Practic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6) Subchapter M -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Provisions

- CFR Part 205의 하부 구조는 Subpart A부터 Subpart G까지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A. 정의(Definitions), B. 적용 대상(Applicability), C. 유기 생산 및 취급 요구사항(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D. 라벨, 라벨링, 시장 정보(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E. 인증(Certification), F. 인증기관의 인정(Accreditation of Certifying Agents), G. 집행(Administrative)으로 구성됨.

(2) 인증기구와 인증기관의 구성과 역할

- 인증기관(certifying agent)의 인정(accreditation)과 관련된 사항은 유기인증법 Sec. 6514 'Accreditation program(인정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음.
 - 주정부 관리 책임자(governing State official) 및 민간 업자들이 유기농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 인증기관이 되고자 할 경우 장관은 이와 관련한 인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만 함.
 - 요구 사항으로는 1) 인정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장관이 정한 대로 유기농 생산 및 취급기술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앞 두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 Sec. 6515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따를 것으로 이루어짐.
 - 인증기관 인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장관 요구 사항을 따라 갱신되어야 함.
- 인증기관(certifying agent) 요구사항은 유기인증법 Sec. 6515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80여 개 기관²⁸⁾이 USDA 유기농 규정에 따라 유기농 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음.
 - USDA 인정(accredited) 인증기관의 대부분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의 농가 및 경영체의 유기농 인증도 담당할 수 있음.
 - 농가, 목장주, 가공업자 등 유기농 생산 관련 종사자들은 인정된 USDA 인증 기관 중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인증을 추진할 수 있음.
- Sec. 6515에서 명시한 인증기관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위 Sec. 6514의 요구사항 충족
 - 2) 충분한 수의 조사원 수 채용
 - 3) 기록 관리: 10년 이상 기록 유지, 장관 및 대리인의 기록 접근 허용, 인정 취소 시 장관에게 기록 이관
 - 그 외에 협약, 프로그램 준수, 기밀 엄수, 이해상충 회피 등이 포함됨.
 - Sec. 6515에 명시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장관 또는 주정부 기관은 해당 인증 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27)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s://www.ecfr.gov/current/title-7/subtitle-B/chapter-I/subchapter-M/>

28) 2022년 11월 1일 기준 74개.

- 한편 Sec. 6516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명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 Sec. 651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인정할 경우, 장관은 동료평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동료평가 패널은 유기농 생산 및 취급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중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 혹은 주정부(State government) 소속 관료가 아닌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함.

- USDA는 유기농 생산자들이 인증기관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유기농 통합 DB(Organic INTEGRITY Database, INTEGRITY)’ 내에 ‘Organic Certifier Locator’를 구축하여 운용 중임.
 - 인증기관 정보들은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과 인정된 인증기관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됨.

<그림 3-3> Organic Certifier Locator

The screenshot displays the USDA Organic Integrity Database's Certifier Locator search results.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HQ, Offices, and Clients' for Country, 'ALL' for State, and an empty field for Province. The results table lists the following certifiers and their locations:

| Certifier | Info | Headquarters Location | |
|------------------------------------------------|------|-----------------------|--------------------------|
| | | State/Province | Country |
| [ACO] ACO Certification Ltd. | | Queensland | Australia |
| [ASCO] Agricultural Services Certified Organic | | California | United States of America |
| [AI] Americert International | | Florida | United States of America |
| [AUS-QUAL] Aus-Qual Pty. Ltd. | | Queensland | Australia |
| [BOC] Baystate Organic Certifiers | | Massachusetts | United States of America |
| [BIOL] Bio Latina S.A.C. | | | Peru |
| [BIOI] Bio.Inspecta | | | Switzerland |
| [BAC] BioAgriCert | | Bologna (BO) | Italy |
| [BIOH] Bio-Hellas S.A. | | | Greece |
| [CAAE] CAAE Certification Service | | Andalucia | Spain |

The page footer includes navigation links: AMS | USDA | FOIA | Accessibility | Plain Language | Quality of Information | Privacy | Nondiscrimination | USA.gov | Whitehouse.gov. The current page shows 74 records in 8 pages, with page size set to 10.

자료: ORGACIC INTEGRITY DATABASE,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4) 일본

(1) 인증제도 개요

(가) 유기농산물 규격 제정 및 표시 적정화

- 1999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이 개정되어 유기농산물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이 제정되고 표시 적정화가 이루어졌다.²⁹⁾
 - 즉 1999년 유기농산물 검사인증제도가 JAS법 안에 마련되게 되었다.
 - 유기농산물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은 1999년 채택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나) 유기표시 규제 시행

- 2000년 6월부터 유기농산물의 유기표시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유기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표시나 유기 JAS마크를 사용하면 벌칙³⁰⁾이 적용되게 되었다.

(다) 유기농산물 생산방법과 인증의 기술적 기준

- 유기농산물 검사인증제도는 생산조직에 요구하는 기준으로 '인증의 기술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생산방법으로서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JAS)'이 정해져 있다.

(2)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의 구성과 역할

(가) 등록인증기관의 등록

- 농림수산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JAS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다.
- 농림수산성은 JAS법에 근거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에 근거한 인증업무를 등록인증기관에 맡기고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157개의 등록인증기관이 있다(국내 인증기관 119개, 외국인인증기관 38개).

(나) 등록인증기관의 역할

29) 일본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표시와 유기농업 추진·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JAS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유기농업 추진은 유기농업추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30)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 벌금

- 등록인증기관은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인정한다. 이는 서류심사와 실지검사(현장검사)를 통해 재배포장의 유기생산기준(유기 JAS규격) 충족 여부, 해당 규격에 따른 생산관리 이행과 생산관리기록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생산농가가 인증을 받은 후에 유기 JAS규격에 따라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저 1년에 1회 조사를 실시한다.

5) IFOAM

□ 인증제도 개요

- IFOAM은 1972년 유기농업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80년 IFOAM 기본규정(IFS, IFOAM Basic Standards)를 제정하였음.
 - 1992년 인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IFOAM 인정기준(IAC, IFOAM Accreditation Criteria)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인정기관인 IOAS를 설립하였음.
- IFOAM의 유기보증시스템(OGS, Organic Guarantee System)은 유기 생산, 가공 및 제품에 대한 국제 민간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1) IFOAM 기본규정(IFS)과 인정기준(IAC)의 두 표준 규범,
 - 2) 인정기관인 IOAS에 의한 인정,
 - 3) 인정된 인증기관(ACBs, Accreditation Certification Bodies)에 의한 인증,
 - 4) 품질 보증 표시,
 - 5) 다자간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IFOAM 기본 규격(IFS)은 스스로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나 인증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전 세계 인증기관과 규격 제정 조직들에게 체계를 제시함.
 - 인증 규격은 IFOAM 기본 규격보다 특정 지역 조건의 설명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함.

<표 3-2> IBS 및 IAC 세부 조항 및 내용

| 항목 | 조항 및 내용 |
|-------------------------------------------------|----------------------------------------------------|
| 그룹인증 (Group certification) | IAC 8 |
| 인증기관 성격 거래 인증 (Transaction certification) | 3자인증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부 또는 민간인증 모두 가능 IAC 7.4.2-7.4.5 |
| 컨설팅, 마케팅 행위 금지 등 | IAC 1.3.4(인증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 또는 업무는 인 |

| | |
|----------------------|-----------------------------------------------------------------------------------------------|
| | 증프로그램과 분리되어야 함) IAC 1.3.12(컨설팅 금지) IAC 1.3.14(기준 및 인증조건에 대한 설명은 비용부과 없이 이루어져야 함) |
| 인정조건 | IAC 1.4.1 (재정적 안정) IAC 1장(structure), 2장(Accessibility and scope), 3장(quality system) |
| 인증 및 심사원의 자세 (역할) | IAC 1.3(공정성) IAC 4(기밀유지) |
| 심사원 자격(전문인력조달) | IAC 1.4 |
| 심사원 배정 거부 | IAC 6.2.6(인증 신청자는 직접적으로 심사원 배정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검사자의 이해상반에 기초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음.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인증기관이 함) |
| 타인증기관 농산물 및 인증자의 용인 | 9장(Acceptance of prior certification) |
| 인증업무 및 인증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 7.8(인증기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갖추고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IOAS에 제기할 수 있음) |
| 농자재 사용허용 및 인증 | IBS 부록 |

6) CODEX

(1) 인증제도 개요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FAO)가 1961년 처음 설립한 후 1962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합류하여 형성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DEX)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 채택, 식품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국제간 식품 교역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의 구성과 역할

- CODEX는 자체적으로 인정 또는 인증을 하지 않으며, 식품,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성 관련 기준, 실행코드, 가이드라인과 기타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여 개발 국가 규정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가) 인정기구

- 인증기관의 지정
 -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인증권자에 의해 운영되는 검사 제도의 적용을 위하여, 각 국가는 그러한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의 책임을 맡은 관할당국을 확정해야 함.
 - 사설 검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독은 사설 혹은 공공의 제3기관 (이하, “지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인증권자를 승인하기 위하여,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의

지정기관은 평가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검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될 검사 방법과 예방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기준 검사 및 인증 절차
- 부정행위 그리고/또는 법규 위반 시 인증기관이 적용하는 벌칙
- 자격있는 직원, 행정적 및 기술적 설비, 검사 경험 및 신뢰성 등 적절한 자원의 유용성
- 검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대한 인증기관의 객관성
- 공인 검사 그리고/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권자는 관할당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감사 (audit) 목적을 위하여, 사무소 및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위하여 사업자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
-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전년도 목록을 관할당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매년 송부하여야 하고, 간결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 현장 심사

- 검사 또는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수행된 검사가 객관적임을 보증하여야 함.
- 검사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함.
- 발견된 부정행위 그리고/또는 법규위반 그리고 적용된 벌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권자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여야 함

2.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 관련 활동 규정

1) EU

□ 농민의 활동 기준(일반 생산 규정(General Production Rules)(제9조))

○ 유기농 생산에 적용되는 규정

○ 제24조, 제25조 및 부속서 II에 언급된 목적 및 용도를 위해, 해당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품 및 물질만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음.

- EU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EU법에 근거한 국내 규정에 따라 승인됨.

- 규정(EC) No 1107/2009의 2(3)조에 언급된 다음 제품 및 물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음.

a) 식물 보호 제품의 성분으로서의 약해 완화제, 상승제 및 복합제;

b) 식물 보호 제품과 혼합되는 보조제.

- 이 규정에서 다루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 및 물질의 유기농 생산에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 이온방사선은 유기농 식품 또는 사료의 처리 및 유기농 식품 또는 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처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동물 복제의 사용 및 인공적으로 유도된 배수체 동물의 사육은 금지.
- 적절한 경우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예방 및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함.
- 2항에도 불구하고, 비유기농 생산단위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는 유기농, 전환 중 및 비유기적 생산을 위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분리된 생산 단위로 분할될 수 있음.
 - a) 가축과 관련하여, 다른 종들이 포함됨.
 - b) 식물과 관련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이 관련됨.
- 조류 및 양식 동물과 관련하여 생산 장소 또는 단위 간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분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종이 포함될 수 있음.
- 7항의 (b)항을 제외하고, 최소 3년의 재배기간이 필요한 다년생 작물의 경우,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품종 또는 동일한 품종이 포함될 수 있음.
 - 문제의 생산이 전환 계획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문제의 생산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의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고 최대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이런 경우는:
 - a) 농민은 최소 48시간 전에 관련 각 제품의 수확 시작을 관할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통지해야 함.
 - b) 수확이 완료되면 농민은 관련 단위에서 수확한 정확한 수량과 제품을 분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관계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리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알려야 함.
 - c) 전환 계획 및 효과적이고 명확한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매년 전환 계획이 시작된 후 관할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함.
- 제7항의 (a) 및 (b)에 명시된 다른 종 및 품종에 관한 요건은 연구 및 교육 센터, 식물 묘목장, 종자 증식기 및 육종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7항, 8항 및 9항에 언급된 경우에, 소유주의 모든 생산단위가 유기농 생산 규칙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a) 유기농 및 전환 중 생산 단위에 사용되는 제품을 비유기농 생산 단위에 사용되는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함.
 - b)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서로 분리하여 유지함.
 - c) 생산 단위와 제품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여주기 위해 적절한 기록을 유지함.
- 집행위원회는 특히 제품과 관련하여 농가를 유기농, 전환 중 및 비유기농 생산 단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추가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이 조의 7항을 수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록 I에 나열되거나 추가된 규칙을 수정함.

○ 기타 특이 규정

- 9조 : 규정(EC) No 1107/2009의 2(3)조에 언급된 다음 제품 및 물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식물 보호 제품의 성분으로서의 완화제, 상승제 및 복합제;
- (b) 식물 보호 제품과 혼합되는 보조제.

| |
|------------------------------------------------------------------------------------------------------------------------------------------------------------------------------------------------------------------------------------------------------------------------------------------------------------------------------------------------------------------------------------------------------------------------------------------------------------------------------------------------------------------------------------------------------------|
| <p>3. 이 규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특정 식물에 대한 식물 보호 제품의 식물 독성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식물 보호 제품에 첨가되는 물질 또는 조제품('완화제')(b)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활성이 전혀 없거나 약할 뿐이지만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물질(들)에 향상된 활성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조제품('상승제')(c) 식물 보호 제품 또는 보조제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지만 활성 물질도 아니고 완화제 또는 상승제가 아닌 물질 또는 조제품, '공동 조제물'(d) 사용자에게 공급되고 사용자가 식물 보호 제품과 혼합할 수 있도록 시장에 출시되는 형태의 복합제 또는 하나 이상의 복합제를 함유하는 조제품으로 구성된 물질 또는 조제품 '보조제'라고 하는 효과 또는 기타 살충 특성. <p style="text-align: right;">- 규정(EC) No 1107/2009의 2(3)조</p> |
|------------------------------------------------------------------------------------------------------------------------------------------------------------------------------------------------------------------------------------------------------------------------------------------------------------------------------------------------------------------------------------------------------------------------------------------------------------------------------------------------------------------------------------------------------------|

○ 유기농 자재 생산 규정 (24조)

-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자재로 상황에 따라 총 투입 물질(사료량)의 1% 이내로 사용 가능함.
- 불가피할 경우 사용 가능함.

2) 영국

□ 농민의 활동기준

- 영국 유기농 인증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EU Regulations 834/2007, 889/2008, 1235/2008에 근거하였으며, 브렉시트(BREXIT) 체결 후 법령을 개정

하여 영국 ‘유기농 생산 및 관리법(2020년 개정판)(The Organic Production and Control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에서 해당 EU 규정을 반영하여 영국 국내 유기농 관련 사안을 규제하고 있음.

- 영국이 2020년 1월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으나, 유기농과 관련된 EU 규정은 유기농 생산 및 관리법에 반영되어 유기농 생산 및 관리 사항을 규제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생산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은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됨.

- 적용범위는 작물재배, 축산업, 육묘 및 종자, 사료에 첨가되는 효모 배양 등이 포함되며, 유기농산물 일반적용원칙(General principle)은 아래와 같음.

*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일반적 적용 원칙(General Principles of organic production)³¹⁾은 아래와 같으며, 농업인이 유기농산물 생산 시 아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함((EU) 834/2007 3조, 4조 근거).

- 환경, 보건, 동식물 건강, 복지 등에 위해를 주지 않는 절차를 사용하여 충분한 양과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여야 함.
- 친환경적인 체계와 순환 주기 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위는 토양에서 동식물까지 모두 포함.
-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및 비옥도가 장기간 유지 가능하여야 하고, 생명윤리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품종에 특화된 생체학적이고 행동학적인 부분을 충족하여야 함.
- 지역, 환경, 기후와 지정학적인 차이 및 이러한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들을 존중하여야 함.
-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함.
- 외부 자원 투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 체계를 관리하고 설계하여야 함. 만일 이를 실패하거나 외부 자원을 투입할 경우, 외부 자원의 사용은 유기농 또는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되었거나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적절한 관리 방안 부재, 친환경 또는 유기농 자재가 없거나, 대체 농자재들이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인 경우 농화학적 자재 투입을 제한하여야 함.
- 수용성 광물 비료 사용 금지, 생물다양성 활성화, 경관 및 환경에 민감한 서식지를 보호하여야 함.
- 오염과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환경위험도 평가와 오염에 대한 예방 및 사전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 수의학적 용도외 목적으로 GMO 품종 사용 또는 GMO를 활용한 제품 사용 금지
- 수산업에서 비롯된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 재배 농지 관련 기준³²⁾

○ EU규정 834/2007 17조 1항 (a)호, (b)호, (c)호에 따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데

31)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7p

32)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46~47p

소요되는 시간은 토지별로 아래와 같으며, 유기농 농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자재를 사용하여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유기농으로의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³³⁾.

<표 3-3> 유형별 유기농 전환 기간

| 유형 | | 기간 |
|----------------|-----------|------------------------------|
| 모든 농경지 | | 24개월 |
| 작물이 자라고 있는 농경지 | 노지 및 원예작물 | 파종 및 유기농 작물 심기 전 24개월 |
| | 초지 | 목축 또는 유기농 목초나 사일리지 생산 전 24개월 |
| | 연작 작물 | 유기농 작물 수확전 36개월 |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 EU규정 889/2008 36조 4항에 따라 병충해 관리 제도나 인증기관 심사원이 승인한 과학적 실험결과의 일부를 활용한 유기농 인증 기준을 사용하여 유기농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나 유기농 농업 지역을 관리할 경우, 인증기관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이는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위한 별도의 기간을 적용하게 될 것임.

○ EU규정 834/2007 17조 (e)호, (EC) 889/2008 36조 2항에 따라 유기농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료·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농업환경 지원제도 하에서 관리중인 토지, 3년 동안 유기농 인증 기준이 금지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유기농으로의 전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³⁴⁾.

- (EC) 889/2008 36조 4항에 따라 유기농으로의 전환 기간은 a) 농자재 투입 종류, 농자재의 분해속도(토양 및 식물) b) 유기농산물로 판매될 수 없는 작물의 수확 기간, c)인증 심사원의 승인에 따라 달라짐³⁵⁾.

□ 종자 관련 기준³⁶⁾

○ EU 규정 889/2008 50조, 51조에 따라 유기농 종자 또는 종서를 판매할 경우 해당 품종을 유기농 품종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함.

33) 유기농으로의 전환 시, 환경오염 또는 일반적인 유기농 전환 기간을 경과하여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함.

34) 유기농으로의 전환 기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양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35) 법적으로 강제하는 유기농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농경지에 투입된 농자재 및 다음 수확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과학실험결과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 인증 심사원에게 세부사항을 전달하여 유기농으로의 재전환 기간 연장 또는 축소를 결정할 것임.

36)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66~69p

○ 등록 시 공급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a) 공급자 또는 최종 사용자(공급자의 경우 오로지 포장된 종자 또는 종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가 유기농 종자 또는 종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기농 인증서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 b) 종자나 종서 관리에 대한 일반요건에 따라 종자 가게에 종자와 종서를 진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 c)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³⁷⁾,
- d) 해당 등록된 품종이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종자 공급자는 품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자에게 즉시 관련사실을 알려야 하고, 관련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EU 규정 834/2007 22조 2항 (b)호에 근거하여 유기농 품종이나 육묘가 없을 경우, 일반 품종이나 육묘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유기농 인증 기관에서 해당 품종과 육묘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함³⁸⁾.
- 관리 감독 기관에서 동식물 위생과 검역의 이유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종자 및 종서는 작물 보호제를 활용하여 보존·처리할 수 없음.

○ 투입재(원료, 자재) 사용 기준(허용 및 금지 물질과 기준 포함)³⁹⁾

- EU규정 834/2007 12조 (d)호와 (e)호 16조 1항 (b)호, (EC) 889/2008 3조 1항에 근거하여 토양 관리를 위한 특정 활동·조치⁴⁰⁾가 식물이 요구하는 양분 수준을

37) 품종의 학명과 품종 분류, 공급자 또는 기업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관련 세부사항, 종자 또는 종서 사용자에게 배달할 지역과 배송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 농작물 품종 일반 카탈로그, 농작물 품종 일반 카탈로그에 있는 관련 지침(2002/53/EC)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소 품종, 채소 종자 마케팅과 관련된 EU 종자 지침(2002/55/EC)에서 언급하고 있는 채소 종자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품종 시험 및 사용 승인이 실시된 지역 또는 국가 관련 정보, 종자나 종서가 사용가능한 시점, 유기농 영농활동을 인증하는 관리기관 또는 유기농 인증 관리 심사원 이름이나 사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8) 승인조건은 아래와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영국 유기농 종자 데이터베이스(www.organicxseeds.co.uk)에 사용자가 원하는 품종이 없을 경우b) 농가가 종자 공급자에게 적시에 종자나 종서를 주문하였지만, 파종 또는 식재전에 종자나 종서를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c) 사용 희망 품종이 영국 유기농 종자 데이터베이스(www.organicxseeds.co.uk)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품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과 유기농 인증이 생산에 중요한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d) 연구 목적, 소규모 농가의 시범 재배용, 유관기관에서 품종 보존 목적으로 승인한 경우 사용가능. 또한 파종전에 승인이 있어야 하고, a)와 c)를 충족한 생산자에게는 사용 승인을 제공할 수 있음. |
|----------------------------------------------------------------------------------------------------------------------------------------------------------------------------------------------------------------------------------------------------------------------------------------------------------------------------------------------------------------------------------------------------------------------------------------------------------------------------------------------------------------------------------------------------------|

39)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55~61p

40) 유기농업 시, 식물은 토양 생태계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아야 함. 토양 내 유기물, 비옥도, 생물학적 활동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활동을 통하여 증진되어야 함.

- a) 윤작체계 활용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료나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을 사용할 수 있음⁴¹⁾.

- EU규정 834/2007 16조 1항에 근거하여 비료나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정 요건 충족 및 해당 국가에서 사용 용도를 승인한 경우에만 이러한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음.

<표 3-4> 투입재별 사용기준

| 종류 | 내용 |
|------------------------------------------------------------------|-----------------------------------------------------------------------------------------------------------------------------------------------------------------------------------------------------------------------------------------------------------|
| 농장 가축분뇨(FYM) ⁴²⁾ | - 비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가축분뇨 사용 시 대규모 축사에서 생산된 것 또는 GMO 원료가 포함된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사용전에 반드시 적절하게 희석하거나 부숙도를 조절하여야 함. |
| 부숙또는 발효된 가정쓰레기 | - 가정쓰레기에서 분리한 폐기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발효 또는 부숙에 사용됨. - 야채, 동물성 자원 등에서 비롯된 쓰레기만 사용 가능 - 중금속은 아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됨(단위 : mg/kg) (카드뮴 0.7, 구리 70, 니켈 25, 납 45, 아연 200, 수은 0.4, 크로(전체) 70, 크로뮴(VI)은 검출 불가) |
| 이탄(peat) | - 원예농업에 한정되어 사용됨(화훼, 임업, 육묘, 조경) |
| 부숙 또는 발효된 채소 | - 채소 혼합물로부터 발생한 부숙물질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발효 또는 부숙에 사용됨. |
| 동물 부산물 (동식물로부터 생성된 물질과 함께 소화)을 포함하는 바이오가스 생성물질 ⁴³⁾ | - EU 의회·위원회 지침인 Regulation (EC) NO 1069/2009에서 정의하고 있는 카테고리 2와 3중, 카테고리 2의 소화 지원 장기와 카테고리 3의 동물 기반 부산물(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의미함. 동물 부산물은 반드시 대규모 축사에서 생산된 것을 제외하여야 함. 이러한 부산물 처리 공정은 반드시 EU 위원회 Regulation(EC) No 142/2011에 근거하여야 함. - 작물의 식용부분은 적용 제외 |
| 바이오차 | - 다양한 종류의 식물 기반 유기물질로부터 생산된 열변형 제품으로 토양 개량제로 사용됨. |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 b) 두류재배
- c) 녹비작물 재배
- d) 가축분뇨 또는 유기물질 투입

* 토양은 반드시 안정성, 토양내 유기물 수준 유지, 토양 구조 강화 및 밀도증가·침식·유실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광물 질소 비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경재배는 금지됨.

- 41) 외부 양분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농자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함(토양 검정 또는 식물 조직 분석 결과 등).
- 42) 비유기농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축분뇨 살포 시 질소기준으로 1년에 ha당 170kg을 초과하여 살포할 수 없고, 질산염 취약 구역의 경우 1년에 ha당 250kg까지 살포할 수 있으며, 분뇨 종류별 질소 함유량을 확인하고 살포하여야 함.

<표 3-5> 가축분뇨 종류별 질소 함유량

| 가축분뇨(고체, 톤당 또는 m³) | 질소(N, kg) |
|-----------------------------------|-----------|
| 소 | 6 |
| 양 | 7 |
| 돼지 | 7 |
| 가금류 두엄 | 19 |
| 브로일러 품종 가금류/칠면조 | 30 |
| 오리 | 6.5 |
| 말 | 7 |
| 염소 | 6 |
| 가축분뇨(슬러리, 1,000L당) | 질소(N, kg) |
| 소 | 2.6 |
| 돼지 | 3.6 |
| 분리된 가축분뇨(1,000L당) | 질소(N, kg) |
| 소 가축분뇨 슬러리(액체분리, 필터 체 활용) | 1.5 |
| 소 가축분뇨 슬러리(액체분리, weeping wall 방식) | 2 |
| 소 가축분뇨 슬러리(액체분리, 기계적으로 분리) | 3 |
| 소 가축분뇨 슬러리(고체분리) | 4 |
| 돼지 가축분뇨 슬러리(액비) | 3.6 |
| 돼지 가축분뇨 슬러리(고체분리) | 5 |

* 가축분뇨를 포함한 부숙물질의 경우 질소량을 반드시 계산하여야 함. 단, 녹비작물을 포함한 부숙물질의 경우 질소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부숙이 끝났을 때, 가용할 수 있는유의 미한 질소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1. 아래 계란 생산체계로부터 발생한 가금류 분뇨 및 두엄
 - 자유 범위(free range) : 전통적인 자유 범위와 닭장 내부
 - 최대 축적 밀도(m²당 7마리)를 가진 두엄 생산 체계
 - 최대 축적 밀도(m²당 20kg)를 가진 두엄 축적 체계
2. 짚을 기반으로 한 돼지 사육 체계에서 생산된 가축분뇨의 경우, 축사 내부에 사육되는 번식돈의 분뇨를 포함하지 않음.
3. 육우에서 생산된 가축분뇨의 경우 소가 적어도 1년중 일정 기간을 초지에서 보낼 것.

43) 바이오가스에는 고농도의 질소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소 누출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 가능함. 봄에 작물이 한창 성장할 때 투입하는 경향이 있음.

- 토양 환경 개선과 양분 가용도 향상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고, 부속 활동 시 미생물 또는 식물 추출물을 사용한 부속 활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
- (EC) 834/2007 16조 1항 (a)호, (EC) 889/2008 부속서 2장에 근거하여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작물에 위협이 될 병충해가 존재할 경우 아래 표에 있는 기준에 맞는 살충제와 제초제, 살균제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이들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정부 당국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⁴⁴⁾.

<표 3-6> 유기농업에 허용된 작물 보호제 목록

| 구분(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 내용 |
|-----------------------------------------------------------|----------------------------------------------------|
| Allium sativum(Garlic extract) | - |
| Azadirachtin extracted from Azadirachta indica(Neem tree) | - |
| Beeswax | 잔가지 제거, 식물 상처 보호용 |
| COS-OGA | - |
| Hydrolysed proteins excluding gelatine | - |
| Laminarin | - |
| Maltodextrin | - |
| Pheromones | 해충 트랩 또는 자동분무기용 |
| Plant oils |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 Pyrethrins | 식물 유래 물질만 사용할 것 |
| Quassia extracted from Quassia amara | 살충제, 퇴치제 등으로만 사용 가능 |
| Repellents by smell of animal or plant origin/sheep fat | 작물에서 식용 불가능한 부분 또는 양이나 염소가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잔여물등만 사용 가능 |
| Salix spp. Cortex(aka willow bark extract) | - |
| terpenes(eugenol, geraniol and thymol) | - |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 유기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미생물로부터 추출·생산한 물질, 기타 물질의 경우 아래와 같음.

<표 3-7> 유기농업에 허용된 미생물, 기타물질 목록

| 구분 | 내용 |
|-----------------|--------------------------|
| Micro-organisms | GMO 물질에서 발생한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 Spinosad | - |
| Cerevisane | - |

44)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63~65p

| | |
|-----------------------------------------------------------------------------------------------------------------------------------------------------|-------------------------------------------------------------------------------------|
| Aluminium silicate (Kaolin) | - |
| Calcium hydroxide | 과수나 옥묘 등에 발생하는 곰팡이 퇴치제용으로 사용 가능 ex) Nectria galligena (사과나무 암종병 유발 곰팡이)에 사용가능 |
| Carbon dioxide | - |
| Copper compounds in the form of - copper hydroxide - copper oxychloride - copper oxide - Bordeaux mixture - tribasic copper sulphate | 1년에 ha당 4kg씩 사용할 수 있으며, 7년간 28kg/ha를 초과할 수 없음. |
| Diammonium phosphate | 해충유인제로만 사용할 수 있음 |
| Ethylene | - |
| Fatty acids |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 Ferric phosphate (iron (III) orthophosphate) | 재배하고 있는 작물간에 잎이 말린 경우, 말린 잎을 퍼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 Hydrogen peroxide | - Solanaceae 계열 작물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농기구 로부터의 식물병 감염예방 - 상추종자 소독용 |
| Kieselgur(diatomaceous earth) | - |
| Lime sulphur(calcium polysulphide) | - |
| Paraffin oil | - |
| Potassium and sodium hydrogen carbonate | - |
| Pyrethroids (only deltamethrin or lambdacyhalothrin) | 특정 해충 트랩 유인용 (일반초파리, 지중해초파리 등에만 사용 가능) |
| Quartz sand | - |
| Sodium chloride |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 Sulphur | - |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 농장 및 경영에 관한 기준⁴⁵⁾

○ EU규정 834/2007 11조 및 17조 1항 (d)호, EU규정 889/2008 35조 1항과 40조 1항에 근거하여 같은 농경지에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같이 생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a) 각각의 농경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 b)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두 농산물의 보관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 c) 유기농 토지위에 유기농 인증 기준이 허용하지 않는 자재 등 상품들을 저장하지

45)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48~53p

않아야 함. 또한

- d) 유기농지와 일반농지를 구분하고 있음을 입증할 기록들이 있어야 하고,
- e) 가축도 같은 품종 간에 유기농 방식과 일반 방식으로 나누어 사육하면 안되며⁴⁶⁾,
- f) 식물 품종도 같은 품종간에 유기농 방식과 일반 방식으로 나누어 재배해서는 안 됨.

○ 동일한 작물을 유기농지와 일반농지에 각각 나란히 병행 생산(Parallel production)⁴⁷⁾할 경우, 인증 심사원이 해당 지역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재배 방법에 관한 기준(영농활동 기록 방식 등 포함⁴⁸⁾)

46)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생산할 때 같은 농기구를 사용하려면 오염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세척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심사원이 유기농지와 비유기농지를 모두 검사하여, 이들 모두 영농활동적으로,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구분 | 내용 |
|----------------------------------------|--------------------------------------------------------------------------------------------------------------------------------------------------------------------------------------------------------------------------------------------------------------------------------------------------------------------------------------|
| 물리적 분리 (Physically separ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기농지는 반드시 유기농지와와의 분리를 위한 토지구역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유기농 및 비유기농지는 서로 인접할 수 있지만, 울타리나 넝쿨 등을 사용하여 두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함. |
| 재정적으로 분리 (Financially separ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지와 비유기농지에 대한 금융 및 재정 관련 사항도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여야 함. - 유기농지와 비유기농지 각각에 대한 등기사항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 영농활동적으로 분리 (Operationally separ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은 유기농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일반 농지에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였던 농기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철저한 세척 필요). - 유기농지와 일반농지의 저장시설, 기계, 사료 급양 시설, 도정과 혼합 및 휴게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함. - 비유기농지의 경우 동일한 토지 지번을 가질 수 있으나, 가축에 있어서는 유기농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과 동일한 번호들을 가질 수 없음. |

47) (EC) 834/2007 11조와 22조 2항 (a)호, (EC) 889/2008 40조 1항에 따라 병행 생산(Parallel production)은 오로지 a) 연작 작물(적어도 3년 동안 재배), b) 종자나 육묘(접붙이거나 이식), c) 목축을 위한 초지, d) 농업연구를 위한 시범포 재배 작물, 또는 교육용도의 가축 및 작물 (인증 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만 해당됨.

추가적으로(이하의 경우 위 c) 목축을 위한 초지는 제외), a) 각 농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영원히 분리하여야 하고, b) 각 농지로부터 작물을 수확하기 전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c) 인증기관에게 정확한 수확량을 통보하고 각 농지별로 생산한 농산물들을 분리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d) 매년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e) 인증기관이 동의한 연작작물은 5년내에 해당 지역을 유기농 지역으로 바꿀 경우 병행 생산이 가능함. 단, 유기농 영농활동과 일반 영농활동을 각각 다른 법인에서 실시할 경우 위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음.

48)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18~20p & 33~34p

- 생산물에 대한 유기농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영농활동 기록 유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모든 생산 단계에 대한 기록⁴⁹⁾을 담고 있어야 하고, 투입재와 산출물에 대한 균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단계에 대한 역추적(retrospective traceability)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EU규정 889/2008 72조에 따라 작물 생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비료 및 토양개량제 투입일자, 종류, 투입량, 투입대상필지
 - 작물보호제 및 살충제 투입 사유, 투입일, 제품종류, 사용방법
 - 기타 농자재 구매일자, 종류, 구매량
 - 유기농 인증 받은 농지 또는 유기농으로 전환중인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수확량, 종류, 수확일자

- EU규정 889/2008 71조에 따라 매년마다 작물 재배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지단위로 작성하여야 함.
 - 농업인은 자체 작물 생산 계획 양식(your own crop production plan) 또는 작물 관리 계획 양식(Crop management plan template)(붙임 2)'을 활용하여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 이러한 계획이 앞에서 언급한 유기농 기준들⁵⁰⁾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또는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유기농 인증 심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기농 인증 심사원들은 작물 생산 계획이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⁵¹⁾.

- EU규정 889/2008 26조 1항과 2항 및 63조 1항 (c)호에 따라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된 물질로 인하여 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오염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밝히고, 그러한 위험요소⁵²⁾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모든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49) 유기농 생산물 생산과정 및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 등을 구매한 기록, 유기농 제품 판매 또는 배송 기록

50) 재배농지에 관한 기준, 종자에 관한 기준, 투입재 사용 기준, 농장 및 경영에 관한 기준 등

51) 인증기관 심사원 등이 유기농 인증 검사를 실시할 때, 작물재배과정 모니터링 기록, 병충해 발생여부에 대한 기록, 병충해 예방활동현황, 사용한 농자재에 대한 기록, 유기농 검증 대상이 아닌 다른 재배작물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 기록이 필요함.

52) 위험요인 예시는 아래와 같음.

3) 미국

(1) 인증 기준

- 미국 유기 인증제도의 경우 특별히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유기식품생산법(OFPA)과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규정집(CFR) Part 205에 망라된 인증 기준들의 경우 생산 및 취급을 담당하는 사업장(operation), 생산 과정에서 금지/허용 물질 등 자재, 환경에 대한 영향, 최종 결과물인 유기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에 대한 라벨링(labeling), 잔류농약 검사 등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각 주체가 유기 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룸.
- 이러한 과정하의 유기 인증은 단순히 과정 대비 결과 중심 인증이라는 양분화된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있어 소비에 이르는 최종 단계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기농이 관행농에 비해 환경 영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유기 인증제 역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다룸.
 - 단, 생산 및 취급 과정과 농산물 및 가공품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것에 비해 환경적 측면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일례로 토양(soil) 및 물(water)의 품질(quality) 등의 이슈를 다룰 때 유기농업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사항에 명시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염 시키기 말아야 하는지, 실제 기준이 되는 지표와 그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정량적인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요컨대 미국 유기 인증은 생산 및 취급 과정,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환경

1. 환경적인 요인들

- 비유기농 농산물 재배 지역에서 발생한 농약 비산 또는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 비유기농 농산물 가공 또는 저장시설에 의한 오염
- 현 유기농지에서 자라고 있는, 현 유기농지 근처에서 재배중인, 과거에 현 유기농지 근처에서 재배되었던 GM 작물·종자로 인한 물리적 오염 또는 교차 수정(Cross pollination)

2. 경영상의 요인들

- 불완전한 유기농-비유기농 분리(저장, 포장, 이송, 가공, 농장비 사용 등)
- 병충해 관리 부족, 유기농-비유기농에 대한 농장 근로자 교육 부족

3. 위험한 제품 사용

- 비유기농 농자재(가축분뇨, 사료, 광물질, 작물 보호제, 비료 등)로부터 발생하는 화학적 오염 또는 유전자 변형(GM) 오염

영향 등의 요소가 명확한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기준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음.
- 일례로 유기식품생산법(OFPA)의 Section 6518 국립 유기 규격원(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이나 연방규정집(CFR) Part 205의 §205.203 토양 비옥화 및 작물 영양관리기준 규격(Soil fertility and crop nutrient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등은 유기농 과정, 결과, 환경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기식품생산법(OFPA)과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규정집(CFR) Part 205에 명시된 기준을 1) 농업 생산 및 취급 과정 관련 기준, 2)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관련 기준, 3) 환경 영향 관련 기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함.

(2) 농업 생산 및 취급 과정 관련 기준

- 농업 생산 및 취급 과정 관련 기준은 유기농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금지/허용 물질 등 농자재, 농업인이 작성하는 유기 생산 또는 취급 계획서 및 관련 정보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유기식품생산법(OFPA)에서 농업 생산 및 취급 과정 관련 기준은 다음 Section 들이 주로 다루고 있음.
- Section 6504 국가 유기 생산 규격(National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ion):
 -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합성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3년 동안 합성 화학제를 포함한 일체의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되어야 함.
- Section 6505 적법성 요구사항(Compliance requirements):
 - 요구사항을 따라 생산 및 취급되는 제품인 경우에만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 받고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음.
- Section 6506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1) 인증된 유기 농장에서만 생산되고, 인증된 유기 취급 사업장을 통해서만 취급되어야 함,
 - 2) 생산자 및 취급자는 유기 계획서를 수립해야 함,
 - 3) 각 사업장은 매년 단위로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 Section 6507 주별 유기 인증 프로그램(State organic certification program):
 - 주의 유기 인증 프로그램은 장관이 정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사항보다도 요구 사항이 더 엄격하게 들어갈 수 있음.

- Section 6508 금지된 작물 생산기준과 물질(Prohibited crop production practices and materials):
 - 1) 종자, 묘목 및 식재 기준을 따라야 함,
 - 2) 토양 개선제의 경우 합성 성분재료를 함유하는 일체의 비료 및 금지 물질을 함유하는 일체의 상업적으로 혼합된 비료의 사용도 금해야 함,
 - 3) 환경에 지속성을 가지며 장기적 효과를 가지는 비소 또는 납의 염류와 같은 천연 독극물의 사용을 금해야 함,
 - 4) 덮개가 재배 또는 수확기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플라스틱 덮개의 사용을 금해야 함,
 - 5) 일체의 합성품이나 금지된 자재로 처리한 이식의 사용을 금해야 함.**

- Section 6509 동물 생산용 기준 및 자재(Animal production practices and materials):
 - 1) 조사료용 플라스틱 펠릿, 분뇨 재 급이, 요소를 함유하는 배합사료, 성장 생산 촉진 항생제, 합성 미량원소 포함 성장 촉진제 및 호르몬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2) 필요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항생제, 합성 내복용 구충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 이외의 약물 투약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Section 6510 취급(Handling): 취급업자는:
 - 1) 국가목록(National List)에 나타나지 않는 일체의 합성 원재료,
 - 2) 유기 인증 프로그램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질산염, 중금속 또는 독성 잔류물질 성분재료,
 - 3) 포도주 생산을 제외한 황산염,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
 - 4) 전체 최종제품의 총 중량(물과 소금을 제외함)의 5%를 넘지 않으면서 국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유기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일체의 성분재료,
 - 5) 합성 곰팡이제거제, 합성 보존료 또는 훈증제를 함유하는 일체의 포장재, 보관 용기 및 보관 통 등의 행위를 금해야 함.

- Section 6511 추가적인 지침(Additional guidelines):
 - 생산자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한 농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함.

- Section 6512 기타 생산 및 취급 기준(Other production and handling practices)
- Section 6513 유기 계획서(Organic plan):
 - 1) 생산자 또는 취급자는 인증기관에 유기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함,
 - 2) 작물 생산용 농장 계획서에 토양 비옥도, 거름주기 등의 관리 규정을 포함해야 함.
- Section 6517 국가 목록(National List):
 - 1)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표시되거나 판매되어야 하는 제품용으로 수립된 유기 생산 및 취급에 관한 규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승인물질 및 금지물질의 국가 목록을 정해야 함,
 - 2) 국가목록에 들어있는 어떠한 예외사항이나 금지사항도 국립 유기 규격원이 이 항에서 정한 대로 5년 이내에 해당 예외사항이나 금지사항을 검토하여 장관이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유지하지 못함.
- Section 6518 국립 유기 규격원(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 위원회는 장관에게 국가목록, 기술자문 패널, 식물성 농약의 특별 검토 등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규정집(CFR) Part 205에서 농업 생산 및 취급 과정 관련 기준은 각 subpart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Subpart B - 적용대상(Applicability) |
|----------------------------------------------------------------------------------------------------------------------------------------------|
| §205.103 인증사업자의 기록관리(Recordkeeping by certified operations.) |
| §205.105 유기 생산 및 취급에서 허용과 금지된 물질, 방법 및 성분재료(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methods, and ingredients in 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
| Subpart C - 유기 생산 및 취급 요구사항(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
| §205.200 일반사항(General.) |
| §205.201 유기 생산 및 취급 시스템 기획(Plan)(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system plan.) |
| §205.202 경작지 요구사항(Land requirements.) |
| §205.203 토양 비옥화 및 작물 영양관리기준 규격(Soil fertility and crop nutrient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
| §205.204 종자 및 파종 비축기준 규격(Seeds and planting stock practice standard.) |
| §205.205 윤작기준 규격(Crop rotation practice standard.) |
| §205.206 작물 해충, 잡초 및 질병 관리기준 규격(Crop pest, weed, and disease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
| §205.207 수확 기준 규격(Wild-crop harvesting practice standard.) |
| §205.236 가축의 원산지-Origin of livestock.) |

| |
|-----------------------------------------------------------------------------------------------------------------------------|
| §205.237 가축용 사료(Livestock feed.) |
| §205.238 가축의 보건관리기준 규격(Livestock health care practice standard.) |
| §205.239 가축 사육환경(living conditions)(Livestock living conditions.) |
| §205.240 목초지 관리 기준(Pasture practice standard.) |
| §205.270 유기적 취급 요구사항(Organic handling requirements.) |
| §205.271 시설의 해충관리기준(Facility pest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
| §205.272 금지된 물질의 혼입 및 접촉 예방기준(Commingling and contact with prohibited substance prevention practice standard.) |
| §205.290 임시 유예조치 (temporary variances)(Temporary variances.) |
| Subpart D – 포장지, 표시사항, 판매 정보 라벨, 라벨링, 시장정보(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205.301 제품 성분.(Product composition.) |
| Subpart E – 인증(Certification) |
| §205.400 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
| §205.401 인증 신청(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
| §205.402 신청서 검토(Review of application.) |
| §205.403 현장 심사(On-site inspections.) |
| §205.404 인증 교부(Granting certification.) |
| §205.405 인증 거부(Denial of certification.) |
| §205.406 인증 효력 유지(Continuation of certification.) |
| Subpart G – 집행(Administrative) |
|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의 국가목록(The National List of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
| §205.600 허용 및 금지 물질, 방법, 원료에 관한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for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methods, and ingredients.) |
| §205.601 유기작물 생산에 사용이 허용된 합성물질(Synthetic substances allowed for use in organic crop production.) |
| §205.602 유기작물 생산에 사용이 허용된 비합성물질(Nonsynthetic substances prohibited for use in organic crop production.) |
| §205.603 유기축산에 사용이 허용된 합성물질(Synthetic substances allowed for use in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
| §205.604 유기축산에 사용이 허용된 비합성물질(Nonsynthetic substances prohibited for use in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
| 심사 및 검사, 보고 및 판매 금지(Inspection and Testing, Reporting, and Exclusion from Sale) |
| §205.672 병해충 또는 질병의 응급 처치(Emergency pest or disease treatment.) |

4) 일본

-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생산자 및 생산조직에 요구하는 유기농산물 생산방법 기준으로서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유기 JAS)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자 및 생산조직은 유기 JAS가 정하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해서 출하해야 함
- 생산행정관리활동의 준거가 되는 '인증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생산방법 -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유기 JAS)

- 유기농산물의 생산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은 작물의 재배방법뿐 아니라 포장 기준, 파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단계에 대한 기준이 있음.

□ 포장(圃場) 조건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기준.
 - 사용하는 포장의 과거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그리고 주위에서 농약 등의 비산·혼입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유기농산물로 인정되지 않음.

○ 인접지로부터의 비산 등의 방지

- 일반적인 대책
 - 포장의 '물리적 조건'으로 인접지로부터의 비산 등이 없어야 함.
 - '주변으로부터 사용금지자재(규격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료, 토양 개량 자재, 농약 등)가 비래(飛來)·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구체적인 방지 대책으로서는 인접 포장과의 충분한 넓이의 길 만들기,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 완충지대에 다른 작물 재배(유기로 판매하지 않음), 방풍네트와 울타리를 만드는 등의 식재 설치, 경계부의 독과 두렁 관리 청부(직접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 이외에 항공방제 대상 지역, 포장에서 사용하는 용수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종자와 모종

○ 포장에 식부하는 종묘의 기준 :

- 종자와 모종에 대해서는 유기 JAS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정해져 있음.
- 원칙적으로 유기재배 유래 종묘의 사용이 필요함.
 - 그러나 양도 및 교환과 구입에 의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경우나 구입할 수 있어도 현저히 고가인 경우, 그리고 자가 채취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행재배 유래 종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품종 유지·갱신에 필요한 경우도 유기가 아닌 종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현지점에서 종묘회사에서 유기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가 채취하거나 유기재배 그룹끼리 협력하여 유기종자를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임.

□ 비배관리

○ 유기 JAS에는 포장의 비배관리에 대해;

- ① 해당 포장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물에서 유래하는 퇴비 사용,
- ② 해당 포장 혹은 그 주변에 서식 혹은 생육하는 생물(지렁이, 곤충, 미생물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나 생물 물질순환에 의한 토양의 질적 개선,
- ③ 작물의 영양성분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재(비료와 토양개량 자재) 사용 가능,
- ④ 해당 포장 혹은 그 주변 이외로부터 생물 도입 가능 등의 방법으로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농지 생산력 유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유기 JAS의 사용 가능 비료 및 토양개량자재 :

- ①과 ②의 방법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유기 JAS가 정하는 비료와 토양개량 자재를 사용할 수 있음.
- 개별 자재를 판단할 때에는 「유기농산물 JAS 자재의 적합성 판단서 및 절차서」를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병충해관리

○ 포장에서 유해 동식물 방제 기준, 흡가꾸기와 병충해 방제, 멀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음.

○ 긴급 시의 농약 사용 조건 제시함.

-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방제 방법 또는 이들 조합에 의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병충해 대책을 실시해야 함.
- 그러나 농산물에 급박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런 방제방법만으로는 대책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 JAS가 정하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음.

□ 수확후 관리

○ 수확에서 출하까지의 기준 :

- 유기 JAS에는 운송, 선별, 조제, 세정, 저장, 포장 등의 공정에 관한 관리로서 농산물 수확에서 출하할 때까지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 ① 유기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 ② 유해동식물 방제 또는 품질 유지·개선은 물리적 또는 생물적 기능을 이용한 방법에 따르는 것,
- ③ ②로는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유해동식물 방제의 목적으로는 유기 JAS가 정하는 농약이나 약제만 사용 가능하고, 신선도 유지의 목적으로는 유기 JAS가 정하는 조제용 등 자재(유전자변형 DNA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 제외)만 사용 가능,
- ④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⑤ 농약, 세정제, 소독제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임.

- 수확 후 관리의 포인트는 ‘비유기농산물의 혼합 방지’와 ‘사용금지 자재에 의한 오염 방지’임.
 - 비유기농산물의 착오 방지
 - 비유기농산물의 혼합 방지
 - 약물 오염 방지
 - 기타 수확에서 출하까지의 관리 기준 제시

(2) 생산행정관리방법 - 인증의 기술적 기준

- 유기농산물에 있어서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의 생산방법(유기재배기술)을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유기재배가 확실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정비해야 함.

□ 생산행정관리자

- 생산자의 재배방법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포함한 사업자.
- 생산행정관리자의 조직 방법 :
 - 우선 생산행정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생산관리조직을 정함.
 - 관리는 생산자 단독 또는 그룹 등 어떤 단위로 관리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 단위를 ‘생산행정관리자’로서 조직화함.

□ 생산에 필요한 시설 관리

- 포장목록 작성
 -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포장에서 유기재배를 할 것인지, 포장목록을 작성.
- 생산 관련 각종 도면 작성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포장은 관리를 위해 지도나 도면(포장주변도, 인증신청 대상 포장지도, 수계도 혹은 용배수도, 항공 방제용 작업지도, 생산관리 및 격부의 조직·기구도,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 도면 등)을 작성하여 인증 신청 시 제출.

□ 내부규정 작성

- 인증의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규정의 형태로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함.
- 내부규정(관리기준) 작성
 - 내부규정은 유기농산물의 JAS에 준거한 생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재배방법과 기계·기구 취급, 수확 후 취급, 출하방법 등에 대해 JAS에 맞는 관리를 하기 위해 직접 구체적으로 정한 관리기준(내부운영을 위한 규칙)임.
 - 명칭은 ‘내부규정’이 아니라 ‘관리기준’, ‘관리방침’, ‘재배 매뉴얼’이어도 됨.

○ 내부규정의 내용

- ① 종자 또는 모종의 입수,
- ② 비배관리, 병해충·잡초방제, 일반관리, 육묘관리
- ③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 ④ 수확·수송·선별·조제·세정·저장·포장 등 수확 후 작업
- ⑤ 생산행정관리기록 및 그 근거서류의 보존 기간
- ⑥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⑦ 연간계획 작성 및 인증기관에 통지
- ⑧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 등 업무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함.

□ 격부 방법과 격부규정 작성

○ 격부는 JAS 제도에서 정한 품질보증 절차임.

- 일반 JAS는 ‘품질규격’이며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정해져 있음.
- 제품의 생산 후 이 규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실 등에서 검사함(이를 격부검사라고 함).

○ 격부의 내용

- 격부 담당자(책임자)가 격부를 위한 검사, 유기 JAS마크 취급, 명칭 표시(유기 표시) 등에 대해서 JAS에 따른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스스로 격부규정을 서면으로 작성함.
- ① 격부업무를 실시하는 순서와 시기(언제, 어디서, 누가),
- ② JAS에 따른 재배기준과 생산행정관리기록의 대조 절차(생산행정검사)(어떻게),
- ③ 표시의 확인 순서,
- ④ 적합품에 대한 격부 순서,
- ⑤ 부적합품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⑥ 격부표시를 한 후의 관리와 격부 후에 부적합이 된 경우의 처분의 순서,
- ⑦ 출하 후에 JAS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진 로트에 대한 대응,
- ⑧ 로트별 격부 실시 기록의 작성 순서와 기록의 보존관리 방법,
- ⑨ 인증기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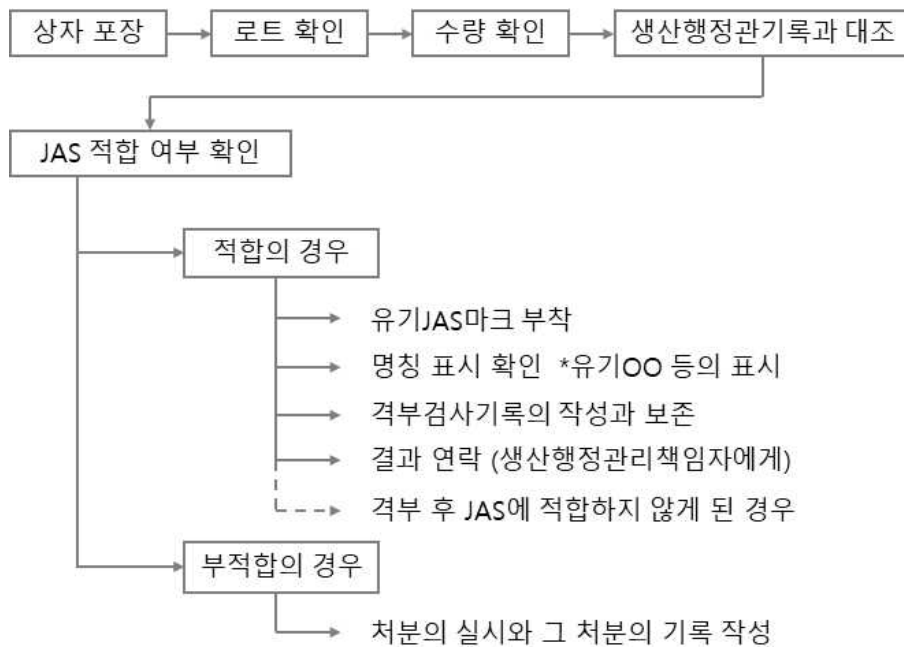
<표 3-8> 격부 규정의 내용

| 항목 | 내용 |
|----------|-------------------------------------------------------------------------------------------------|
| 격부검사의 순서 | 격부검사의 실시 순서에 대해 기재한다.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보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확인하면 어디에 그 실시기록(사인이나 표시 등)을 붙일지 등 |
| 표시 확인 | 표시방법이나 로트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기록한다. |

| | |
|--------------------------------|---------------------------------------------------------------------------------------------------------------------------------------------------------------------------|
| 적합품 취급 | 검사 종료 후의 적합품에 대한 격부와 기록방법에 대해 기재한다. |
| 부적합의 확인과 대처 | 부적합품이 있는 경우의 처치를 기재한다. |
| 격부 후 출하까지의 확인 | 격부검사가 끝나고 유기 JAS마크를 붙이고나서 시간을 두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격부 후 출하까지의 저장·보관 중에 유기성을 손상시키는 사례(예를 들면 약품에 의한 오염 등)가 일어나는지 다시 확인한 후 발송한다. 그 결과, 유기성을 손상시키는 JAS 부적합의 판단이 내려지면, 부적합품의 처분을 실시한다. |
| 출하 후에 밝혀진 부적합 로트에 대한 대응 | 출하 후 부적합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로트의 출하처에 연락 등 필요한 처치에 대해 기재한다. |
| 유기 JAS마크 관리 | 인쇄된 자재나 짚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담당자와 재고 파악 방법을 결정한다. |
| 격부기록 보관 | 이상의 격부와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
| 격부의 실시 상황에 대한 등록 인증기관 조사 대응 | 전년 4월~당년 3월의 연도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한다. 그 밖에 격부 실시 상황에 대해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확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한다. |

○ 격부 실시와 격부기록 보관

- 격부 검사의 흐름 : 격부검사 전후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 격부기록 작성 : 격부검사기록에는 언제(연월일, 요일), 어디서(하치장, 보관장소, 수확장소), 누가(격부담당자, 격부책임자), 무엇을(로트 확인, 생산행정관리기록 조사, JAS와의 대조, 유기 JAS마크 관리, 유기표시 확인, 검사 결과의 연락보고), 어떻게(기록과의 대조, 생산행정관리 담당자의 입회, 생산 행정의 실시 확인), 얼마나(○시간, ○○아르, ○○kg, ○○상자) 격부를 실시했는지를 기재함.

5) IFOAM

□ 농민활동 기준

○ 토양 및 수질 보존

- 사업자는 최소화한 경작, 등고선식 경작, 토양 식물 피복 유지 등 기타 토양 보존을 위한 관리법을 통하여 표토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
- 사업자는 침식, 다짐, 염류집적 등 기타 토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자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공익을 따라야 함.

○ 토양 비옥도 및 비옥화

- 유기농업은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동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양에 미생물, 동식물 원료를 투입함.

○ 야생 수확 제품 및 일반/공공 토지 관리

- 제품을 수확 및 채집할 때, 사업자는 생태계의 유지와 지속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의 유지에 힘써야 함

○ 해충, 질병, 잡초 및 성장관리

- 적절한 종과 품종의 선택
- 적절한 순환 프로그램
- 기계적 경작
- 천적들이 사는 본 식물이 있는 울타리, 보금자리, 생태학적 완충지대 등의 양호한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충 천적으로부터 보호
- 다양한 생태계. 이는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침식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혼농임업, 작물 순환재배, 사이짓기 등
- 가열 제초
- 못자리 준비
- 포식자와 기생자를 포함한 천적
- 돌가루, 농장 퇴비 또는 농작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생물역학적 물질
- 멀칭 및 풀베기
- 가축의 방목
- 덩, 장벽, 빛과 소음 등의 기계적 통제

○ 가축 관리

- 유기적으로 자란 충분히 좋은 품질의 사료 지급

- 자연적인 행동 방식을 따르고, 천연 자원과 환경적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고율, 가축 무리의 규모, 회전율 등 유지.
- 스트레스 감소, 동물 건강과 복지를 증진, 질병 및 기생충 감염을 방지, 화학적 이종 수의학 약품의 사용을 피하는 등의 가축 관리 방법 시행.
- 지속가능한 토지 및 용수사용 관리법 적용.

6) CODEX

□ 농민 활동 기준

-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성도의 유지 및 증가
 - 적절한 다년-윤작 프로그램에 따라 콩, 녹비(綠肥) 또는 심근류 식물을 경작함
 - 본 지침에 따라 생산하는 경작지로부터 나온 퇴비화 되거나 퇴비화 되지 않은 유기물질을 토양에 혼입함.
 - 구비(厩肥) (farmyard manure) 같은 축산농장의 부산물은 본 지침에 따라서 생산하는 축산 토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음.

- 해충, 질병, 잡초의 관리방식
 - 적절한 종 (species)과 품종 (varieties)의 선택
 - 적당한 윤작 프로그램
 - 기계를 사용하는 경작
 - 본래의 식물군을 유지시켜주는 울타리, 둥지, 생태학적 완충지대 등 해충의 포식자가 선호하는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해충의 천적을 보호
 - 다양한 생태계. 생태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 침식, 농림업, 윤작 농작물 등을 중화시키기 위한 완충지대
 - 화염 제초
 - 포식자 및 기생충 등 천적의 방출
 - 석분, 구비(厩肥), 또는 식물로부터 나오는 생체역학적 조제품
 - 뿌리 덮기(멀칭)와 풀베기
 - 동물 방목
 - 덮, 장벽, 빛, 소리 같은 기계적 관리
 - 토양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윤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증기 살균

- 가축은 유기농장시스템에 대한 기여
 - 토양 비옥도의 증진 및 유지
 - 방목을 통한 식물군 조절
 -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농장에서의 상호 보완 작용 촉진
 - 농장시스템의 다양성 증대

3. 생산자의 환경보전 활동 규정

1) 영국

- 유기농 방식을 이용한 영농활동 시, 생물다양성 수준 유지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지 보호에 기여하여야 함.
 - 영농지역을 표기한 지도상에 보호지역을 표시할 것(수로, 습지, 샘, 임야, 삼림, 저지대 초지, 울타리, 지방조례 등으로 지정한 희귀동식물 서식지 등)
 - 법령으로 지정한 야생동식물 서식지⁵³⁾ 및 기타 야생동식물 서식지⁵⁴⁾, 생물다양성 활동 우선 적용 지역(BAP)을 포함하여 표기할 것⁵⁵⁾.
 - 보호 대상 지역을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치, 수단을 기록할 것.

- 유기농 방식으로 농산물 생산 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유발하지 않아야 함. 유기농 방식으로 영농활동 시 토양, 가축분뇨, 우유, 슬러리, 사일리지, 플라스틱, 양분투입, 농약, 연료, 폐기물, 오폐수, 축사폐수, 기계 및 배터리 수명 감소 등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고려하여야 함.

-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 위험을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함.
 - 지하수 유출 또는 오염 가능성
 - 양분이 대기나 수질로 유출되어 손실되는 것
 - 가축분뇨 및 슬러리 저장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 수질오염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 환경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우수영농활동 관련 규정, 질산염 취약구역 관리규정(NVZ rules), 사일리지·슬러리·농업분야 연료 사용 규정(SSAFO) 등)
 - 가축에게 발생하는 해충 살충제 등은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및 농자재(비료, 살충제, 연료, 농기계 등) 사용 감축 또는 최소화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53) 국제적으로 중요한 야생동식물 서식지, 특별보호지역(EU 조류 보호 지침=EU birds directive), 특별보존지역(EU 서식지 보호 지침=EU habitats directive), 랍사르 협약 대상지역

54) 야생동식물 서식지, 자연보호중요지역(Site of Nature Conservation Importance, SNCI),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지역(Regionally Important Geological Site, RIGS)

55) 미개간 초지 등을 개간하지 않을 것.

2) 미국

- 환경 영향 관련 기준은 유기농 생산 과정에서 토양 및 물 품질에 오염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춤.
- 유기식품생산법(OFPA)에서 환경 영향 관련 기준은 다음 Section들이 주로 다루고 있음.
 - Section 6513 유기 계획서(Organic plan):
 - 질산염이나 세균에 의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거름을 일체의 작물에 시비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 Section 6518 국립 유기 규격원(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 위원회는 환경 오염원이 될 가능성, 환경계 내에서의 지속성과 집결되는 분야, 해당 물질의 사람의 보건에 미치는 효과, 토양 생물체(토양의 용해성 및 염류 지수를 포함), 작물 및 가축에 대한 해당 물질의 생리적 효과를 포함한 농업 생태계 내에서 해당 물질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따른 그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함.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규정집(CFR) Part 205에서 환경 영향 관련 기준은 각 subpart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
|--------------------------------------------------------------------------------------------------|
| Subpart B - 적용대상(Applicability) |
| . |
| Subpart C - 유기 생산 및 취급 요구사항(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
| §205.200 일반사항(General.) |
| §205.203 토양 비옥화 및 작물 영양관리기준 규격(Soil fertility and crop nutrient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
| Subpart D - 포장지, 표시사항, 판매 정보 라벨, 라벨링, 시장정보(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 |
| Subpart E - 인증(Certification) |
| §205.403 현장 심사(On-site inspections.) |
| Subpart G - 집행(Administrative) |
|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의 국가목록(The National List of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
| §205.601 유기작물 생산에 사용이 허용된 합성물질(Synthetic substances allowed for use in organic crop production.) |
| 심사 및 검사, 보고 및 판매 금지(Inspection and Testing, Reporting, and Exclusion from Sale) |
| . |

3) IFOAM

- 토양 및 수질 보존
 - 유기농법은 토양을 보존 및 증대시키고, 수질을 유지하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용수 사용.
- 토양 비옥도 및 비옥화
 - 유기농업은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동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양에 미생물, 동식물 원료 투입.
- 야생 수확 제품 및 일반/공공 토지 관리
 - 유기 경영은 방목지, 양식장, 산림, 양봉 사료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공기, 물 등을 포함하여 일반 생명체 및 비 생명체적 자원들을 유지하고, 질적 저하 방지.
- 가축 관리
 - 유기 축산은 토지, 작물, 가축, 가축의 생리학적 및 역학적 요구 고려, 유기적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사료 등의 조화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함.

4) CODEX

- 용수 기준
 - 농업 활동으로 수자원의 보호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용수의 수질 검사 없이 인증 가능

4. 생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1) EU의 농산물 관리 규정

□ 1991년 초기 유기농산물 규정 (규정 2092/91, OJ No L198, 22. 7. 1991.)

○ 제5조 labelling

- 3항 : 1조 1항(b) 생산물의 labelling과 광고는 생산물의 판매묘사(sales description)에서, 유기생산방법을 다음에 적용할 수 있다.
 - (a) 생산물 원산지(agricultural origin)의 모든 성분들은 6·7조의 조항 또는 11조에 따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생산물 또는 여기서 파생된 생산물이다.

- (b) 생산물은 비농업적 근원의 성분으로써 부속서VI,A에 기록된 것만을 포함한다.
- (c) 생산물과 그 성분은 제조기간동안, 부속서VI,B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물 또는 이온 방출물(ionizing radiation)의 사용을 포함하는 취급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 (d) 생산물은 8·9조의 검열조치에 의거 operator가 제조한다.

- 4 항 : 3항(a)에서 훼손(derogation)으로써 그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농업근원의 어떤 성분이 1조 1항(b)에 따른 생산물의 제조에서 그리고 최종생산물에서 농업근원 성분의 최고 5%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그런 성분이 농업근원이고, 6·7조에 일치하여 EU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닐 것 또는;
- 그런 성분이 농업근원이고, 6·7조에 일치하여 EU 내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는 것이 아닐 것

□ 2018년 유기농산물 규정 (규정 2018/848)⁵⁶⁾

○ 제24조 유기생산에서 사용된 물질에 대한 승인 규정이 있음.

- 제1항 : 승인된 제품 및 목록 제시
- 제2항 : 승인 제품의 종류 제시
- 제3항 : 유기농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의 승인 원칙과 기준
- 제4항 : 가공 유기농 식품 및 사료에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의 평가 원칙

○ 제25조 회원국에서 가공된 유기식품의 비유기 농산물 원료에 대한 승인 규정

1. 특정 농업 재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해당 재료가 충분한 양의 유기농 형태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비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자국 영토에서 가공 유기농 식품 생산을 위한 농업 재료. 해당 권한은 해당 회원국의 모든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원국은 위원회가 제공한 문서 및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라 자국 영역에 부여된 승인을 즉시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회원국은 2항에 언급된 시스템을 통해 그러한 성분이 충분한 양의 유기적 형태.
4. 제46조(1)에 따라 승인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러한 승인을 요청하는 제3국의 운영자에게 이 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임시 승인을 최대 6개월 동안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3국에서 해당 단락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 승인은 각각 최대 2회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임시 승인이 두 번 연장된 후, 회원국이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여 유기 형태의 이러한 성분의 가용성이 운영자의 질적 및 양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7)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6)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2) 영국의 생산물 품질 관리 관련 기준⁵⁷⁾

- 유기농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 식품기업, 유기농 제품 수입 및 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언제든지 유기농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 유기농업법내 EU법(889/2008) 65조와 친환경농산물법(The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14조 3항(fees relating to the control system)에 1년에 1회 유기농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inspection)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기관이 유기농 기준 충족 여부 검사 및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농약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⁵⁸⁾을 초과하면 라벨링 제외와 제품 격리, 벌금(fine)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MRL 관련 규정은 EC No. 396/2005⁵⁹⁾를 준용함.

-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유기농 기준 충족 여부 검사 과정은 아래와 같음.
 - 검사에 필요한 샘플제공(Provide samples for testing) :
 -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 등으로부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연구기관⁶⁰⁾으로 보낸 뒤, 유기농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함.
 - 가축의 경우 정밀검사 필요(Get a detailed inspection if you have livestock) :
 - 유기농 축산물 또는 낙농제품을 생산할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함.
 - 성장호르몬과 같은 EU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사용 여부, 항생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포함됨.

- 검사 결과,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조사에 착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 단, 조사는 검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살펴보아야 함.
 - 인증 농가 또는 기업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 인증 농가 또는 기업 등에게 자재,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의 문제인지 여부

57) <https://www.gov.uk/guidance/organic-produce-tests-and-inspections>

58) 소비자를 위한 잔류 농약 안전 수치를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이라고 하며, 농약별로 각기 다른 MRL을 갖고 있음

(<https://www.hse.gov.uk/pesticides/mrls/index.htm>, <https://secure.pesticides.gov.uk/MRLs/search>)

59)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05/396/contents>

60) 대표적으로 인정청(UKAS)를 의미함. 잔류농약검사는 ISO 17025 인증기준(시험/교정 실험실에 적용되는 ISO의 국제기준으로 시험, 교정 및 샘플링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조건들을 명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방법과 연구기관 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함 (<https://www.ukas.com/accreditation/standards/laboratory-accreditation/>)

○ 인증 농가 또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음⁶¹⁾.

-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아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용금지 물질을 고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사용 금지된 농약(살충제 등) 사용)
- 다른 농가가 농약을 살포한 것이 비산하여 유기농 인증 농가의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을 재료로 구입한 경우
- 유기농 기준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정확한 유기농 기준 준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기준에 따라 유기농 농산물 재배 시 불필요한 요소 제거 등)

○ 위험성⁶²⁾ 평가(risk assessment)는 사업장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사전 조치를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음⁶³⁾.

1. 위험성 평가 단계 1 : 위해요인이란 무엇인가?(What are the hazards?)

- 도보로 농장을 돌아보거나 근로현장을 관찰하면서 위해요인이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
-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less obvious) 위해요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과거 사건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해볼 것.
- 근로자들에게 위해요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위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것.
- 위해요인 점검 시 장비에 대한 사용지침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기록들을 활용할 것.
- 장기적인 위해요인과 명확하게 드러나는 안전 위해요인도 같이 고민할 것.

2. 위험성 평가 단계 2 : 위해를 받을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받고 있는가?(Who might be harmed and how?)

- 위해요인을 탐지하는데 있어서 위해를 받게될 대상(ex-근로자, 일반시민, 미숙련 근로자, 신규채용된 근로자, 방문객, 유지보수 관리자 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위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함. 예를 들어, 곡물 수확 시 발생하는 먼지를 흡입하거나 농장비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있을 수 있음.

3. 위험성 평가 단계 3 :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사전예방조치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Weigh up the risks and decide on precautions).

- 위해요인에 대하여 현재 근로자가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what you are already doing), 작업장내 위해요인 통제방법(the controls you have in place)은 무엇인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the way the work is organized)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
- 위 3가지를 관련 법령과 비교분석하여 미준수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하지만, 제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여야 함.

61) <https://www.hse.gov.uk/agriculture/topics/risk-assessment.htm>

62) 위험(risk)은 위해요인(hazards)을 통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chance)을 의미함.

63) <https://www.hse.gov.uk/agriculture/topics/risk-assessment.htm>

- 덜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ex-화학물질 사용 시, 독성이 적은 물질로 교체)
- 위해요인 접근 제한(ex-슬러리 저장공간 출입 통제 등(securing a slurry pit))
- 위해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방식 도입(ex-근로자와 위해요인(기계, 화학물질 등) 간에 장벽 등을 도입하여 공간을 분리할 것)
-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할 것(ex-보호복, 보호신발 등)
- 복지시설 제공(ex-응급조치장비,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한 샤워시설 등)

4. 위험성 평가 단계 4 :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것(Put the results into practice)

- 위험성 평가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농장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하고, 농장주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또는 관리통제수단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인지·이해하고 있어야 함.
 -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 시, 농장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5. 위험성 평가 단계 5 : 농장내 관리통제수단 이행여부 확인 및 위험성 평가 결과 재검토 (Check controls stay in place and review the assessment)

- 농장내 관리통제수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위험성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일로부터 1년간 중대한 변화가 없었지만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거나 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여야 함.
 - 농장 등에 근로자가 5명이상 근무할 경우, 위험성 평가를 받은 농장주는 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기농 인증 농가·기업의 유기농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증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영국 화학물질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인증 농가·기업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거래기준 관리부서 또는 보건 위생 부서에 반드시 연락하여야 함.

· 소비자를 위한 잔류 농약 안전 수치를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⁶⁴⁾’이라고 하며, 농약별로 각기 다른 MRL을 갖고 있음⁶⁵⁾.

· **농약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⁶⁶⁾을 초과하면 유기**

64) <https://www.hse.gov.uk/pesticides/mrls/index.htm>

65) 농식품내 잔류농약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농식품 잔류농약 전문가 협의회(The Expert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in Food, PRiF)가 있으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expert-committee-on-pesticide-residues-in-food-prif>)

-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 화학물질관리국과 식품안전기준청(the Food Standards Agency)간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에 농식품 잔류농약 관리감독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농식품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 관리감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잔류농약검사결과 평가
- 샘플 채취 절차, 샘플 실험 과정,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기법에 대한 자문

- 위원회의 업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음.

66) 소비자를 위한 잔류 농약 안전 수치를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이라고 하며, 농약별로 각기 다른 MRL을 갖고 있음

농업법내 EU규정 834/2007 30조에 따라 유기농 인증 농가 등은 라벨링을 중단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법(The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16조(notification requirement) 및 19조(penalties)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규제기관은 인증기관의 보고에 따라 인증 농가·기업을 조사하고 인증 농가·기업이 위치한 지역 행정기관의 거래기준 관리부서 또는 보건위생 부서에 반드시 연락하여야 함.
- 또한,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사안 해결에 집중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검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사결과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인증기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EU 위원회 규정 2017/625⁶⁷⁾에 부합하는 검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 만일 재검사 결과가 첫 번째 검사결과와 차이가 없을 경우, 재검사에 대한 수수료 별도로 지불하여야 함.

○ 검사 결과, 유기농 기준에 부적합시;

- 창고에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유통되어 소매점 등에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여야 함.
- 아래 사유로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생산물과 제품에 유기농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 고의로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경우
 - 유기농 기준 위반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기농 생산을 위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관이 서면으로 라벨 부착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한 상품에 유기농 마크를 부착할 수 없으며,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임.

○ 환경식품농촌부(DEFRA) 허가 없이 거래 기준에 의하여 유기농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유기농 법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기소당할 수 있음.

- 유기농 인증 농가·기업이 통제하지 못한 오염 등의 사안으로 인하여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기관은 사안을 조사 및 확인하여 라벨 부착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인증 농가 또는 기업에서 다루는 제품에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었거나, 내부 직원 등이 올바른 유기농 생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https://www.hse.gov.uk/pesticides/mrls/index.htm>, <https://secure.pesticides.gov.uk/MRLs/search>)

67) EU 의회 및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으로, 공무원 관리 및 활동에 관한 규정임.

3) 미국의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관련 기준

-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관련 기준은 주로 제품(product) 관련 기준이며,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의 라벨링(labeling) 이슈 역시 결과물 관련 기준에 포함됨.
- 유기식품생산법(OFPA)에서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관련 기준은 다음 Section들이 주로 다루고 있음.
 - Section 6506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인증받은 유기농장에서 생산되고 인증받은 유기 사업장을 통해 취급되는 농산물의 인증기관에 의해서 그러한 제품이 일체의 농약이나 기타 비유기 잔류물질 또는 천연 독성물질을 함유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잔류물질 시험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 그러한 인증기관이 식품안전에 관련된 해당 법률 위반사항을 인지하는 한도까지 적합한 보건당국에게 그러한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인증기관에게 요구해야 함.
 - Section 6511 추가적인 지침(Additional guidelines):
 - 1)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매되거나 표시되는 제품을 시험하기 위하여 잔류물질 시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2) 인증기관은 오염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에서 재배된 모든 작물의 수확전 조직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Section 6518 국립 유기 규격원(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 위원회는 장관에게 불가피한 잔류성 환경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시험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을 하여야 함.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규정집(CFR) Part 205에서 농산물 및 가공품 등 결과물 관련 기준은 각 sub-part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
|---------------------------------------------------------------------------------------------|
| Subpart B - 적용대상(Applicability) |
| §205.100 인증대상(What has to be certified.) |
| §205.101 인증의 예외 및 면제(Exemptions and exclusions from certification.) |
| §205.102 “유기”라는 용어의 사용(Use of the term, “organic.”) |
| Subpart C - 유기 생산 및 취급 요구사항(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
| . |
| Subpart D - 포장지, 표시사항, 판매 정보 라벨, 라벨링, 시장정보(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
|---------------------------------------------------------------------------------------------------------------------------------------------------------------------------------------------------------------------------------------------------------------------------------------------------------------------------------------------|
| §205.301 제품 성분.(Product composition.) |
| §205.300 “유기”라는 용어의 사용(Use of the term, “organic.”) |
| §205.301 제품 성분.(Product composition.) |
| §205.302 유기적으로 생산된 성분재료의 백분율 계산.(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organically produced ingredients.) |
| §205.303 “100% 유기” 또는 “유기”로 표시된 포장제품.(Packaged products labeled “100 percent organic” or “organic.”) |
| §205.304 “유기 (특정 원재료 또는 식품(군))으로 만든”으로 표시된 제품(Packaged products labeled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
| §205.305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가 70% 미만인 복합원료를 함유하는 포장된 제품.(Multi-ingredient packaged products with less than 70 percent organically produced ingredients.) |
| §205.306 축산용 사료의 표시.(Labeling of livestock feed.) |
| §205.307 “100% 유기”, “유기” 또는 “유기 (특정 원재료 또는 식품(군))으로 만든”으로 표시되는 원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선적 또는 보관용으로만 이용되는 비 소매용 용기의 표시.(Labeling of nonretail containers used for only shipping or storage of raw 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as “100 percent organic,” “organic,” or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
| §205.308 “100% 유기” 또는 “유기”로 표현되거나 표시 또는 판매되는 소매시점에서 포장되지 않은 형태의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 in other than packaged form at the point of retail sale that are sold, labeled, or represented as “100 percent organic” or “organic.”) |
| §205.309 “유기 (특정 원재료 또는 식품(군))으로 만든”으로 표현되거나 표시 또는 판매되는 소매시점에서 포장되지 않은 형태의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 in other than packaged form at the point of retail sale that are sold, labeled, or represented as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
| §205.310 표시 면제 또는 제외된 사업장에서 생산된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on an exempt or excluded operation.) |
| §205.311 USDA 로고(Seal)(USDA Seal.) |
| Subpart E – 인증(Certification) |
| . |
| Subpart G – 집행(Administrative) |
|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의 국가목록(The National List of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
| §205.605 “유기” 또는 “유기 (특정 원재료 또는 식품(군))으로 만든”으로 표시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허용되는 할 수 있는 비농산물(비유기) 물질(Nonagricultural (nonorganic) substances allowed as ingredients in or on processed products labeled as “organic” or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
| §205.606 “유기” 로 표시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유기적으로 생산된 농산물(Nonorganical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allowed as ingredients in or on processed products labeled as “organic.”) |
| 심사 및 검사, 보고 및 판매 금지(Inspection and Testing, Reporting, and Exclusion from Sale) |
| §205.670 “유기”로 표시 또는 판매되는 농산물의 검사 및 심사(Inspection and tes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to be sold or labeled as “100 percent organic,” “organic,” or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

§205.671 “유기”로 판매 금지(Exclusion from organic sale.)

잔류검사에서 검출된 잔류물에 대한 EPA의 허용치 또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잔류오염 (UREC)허용치를 5 퍼센트를 초과하여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은 유기로 판매, 표시 또는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 해당 주정부 유기 프로그램의 주정부 관리 책임자 또는 인증기관은 금지물질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인증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7/subtitle-B/chapter-I/subchapter-M/part-205/subpart-G/subject-group-ECFR91a50748a9959c1/section-205.671>

4) CODEX의 결과물에 관한 기준

- 토양내 잔류농약
 - 토양의 유해성분 검사 없이 인증가능
- 버섯 배지
 - 배지의 유해성분 검사 없이 인증 가능
- 시비처방서
 - 토양 검정 없이 인증 가능
- 축분 사용
 - 공장형 축분 사용 금지,
 - 비공장형 축분을 사용하는 경우 축분사용 필요성을 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 퇴비화 축진을 위해 미생물 또는 식물유래 제품 사용 가능. 예외적으로 공장형 축분 사용 시에도 잔류항생제 검사 없이 인증 가능
- 생산물의 잔류농약
 - 농약 및 작물별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사후관리
 - 인증 건 일부(5~10%) 사후관리 실시

5. 인증 부적합 처분 관련 규정

1) 영국의 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 벌칙에 관한 기준⁶⁸⁾
 - 유기농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미준수(non-compliance)’를

부여하게 됨.

- 미준수에 대한 처벌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정도, 유기농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례함.
- 토양협회인증의 경우 유기농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주의 (precautionary)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유기농 기준 미준수의 심각성에 따라 토양협회는 유기농 인증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임⁶⁹⁾.

○ 비산 등 비의도적인 요인 관리 방안⁷⁰⁾

- 검사 결과, 유기농 기준에 부적합시;
 - 창고에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유통되어 소매점 등에 진열된 제품을 수거 하여야 하며,
- 아래 사유로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생산물과 제품에 유기농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 고의로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경우
 - 유기농 기준 위반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기농 생산을 위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단, 유기농 인증 농가·기업이 통제하지 못한 오염 등의 사안으로 인하여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기관은 사안을 조사 및 확인하여 라벨 부착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2) 미국의 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 인증서 발급절차

- 유기 인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연방규정집(CFR) Part 205의 Subpart E. 인증 (certification)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유기농 생산(production) 및 취급(handling) 사업장(operation)이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application)를 제출함.
 - 신청서에는 1) 유기 생산 또는 취급 계획서(organic production and han-

68) 사안의 정도는 사소한 미준수(minor non-compliance), 주요사항 미준수 발생(major non-compliance), 심각한 미준수 발생(critical non-compliance), 명백한 유기농 기준 위반(manifest infringement)로 구분됨(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16~18p).

69) 토양협회와의 유기농인증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breach of your contract with us),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안에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do not pay your fee within the deadlines), 유기농 인증 현장점검 일정을 조정할 수 없을 경우(unable to arrange an inspection), 심사원이 유기농 제품 샘플 채취를 거절당한 경우

70) <https://www.gov.uk/guidance/organic-produce-tests-and-inspections>

ding system plan),

- 2) 신청서 작성인 성명, 신청기업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 3)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 인증기관의 기관명 및 신청서 제출 결과(부적합 통보서, 인증거부 통보서, 시정 조치사항 내역 및 증거 등),
- 4) 적법성 판정을 위한 제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인정된 인증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함.

- 인증기관은 합리적 기간 이내에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함.
- 신청 자료 검토 결과 유기 생산 및 취급과 관련하여 해양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신청 사업장이 인증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조사(On-site inspections) 일정 계획을 수립함.

○ 현장조사(On-site inspections)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신청한 생산 및 취급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루어짐.

- 인증기관은 신청 사업장의 적법성 또는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사업장의 유기 생산 및 취급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정보, 신청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검증 등을 진행함.

○ 인증기관은 최초 현장조사 완료 후 물질 분석결과와 사업장이 제시한 정보를 검토하여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경우 인증을 수여함.

○ 만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 사업장에 문서화한 부적합 통지서를 제공함.

-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 사업장은 해당 사항을 시정하고, 관련 입증 문서와 시정조치 세부내용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함.
- 또한, 다른 인증기관에게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초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적합 통지서 및 시정 조치 세부 내용을 함께 제공함.

○ 유기 인증은 인증받은 사업장이 매년 인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됨.

- 인증기관은 사업장의 연례적인 갱신 예정일 이후 최초 6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서 갱신 여부를 결정함.

□ 위반 시 제재 사항

○ 유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받게되는 제재 사항은 유기

식품생산법(OFPA) Section 651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라벨을 오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0,000 USD(\$)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장관, 관할 주 관료 또는 인증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미국 법령 제18편의 100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함.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통지와 의견 청문기회를 받은 후에 발생일로부터 5년간 인증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인증기관이 유기인증 프로그램의 조항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할 경우 민간 인증기관은 통지 및 청문의 기회를 준 후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증 지위를 상실함.
 - 결정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음.

3) 일본

□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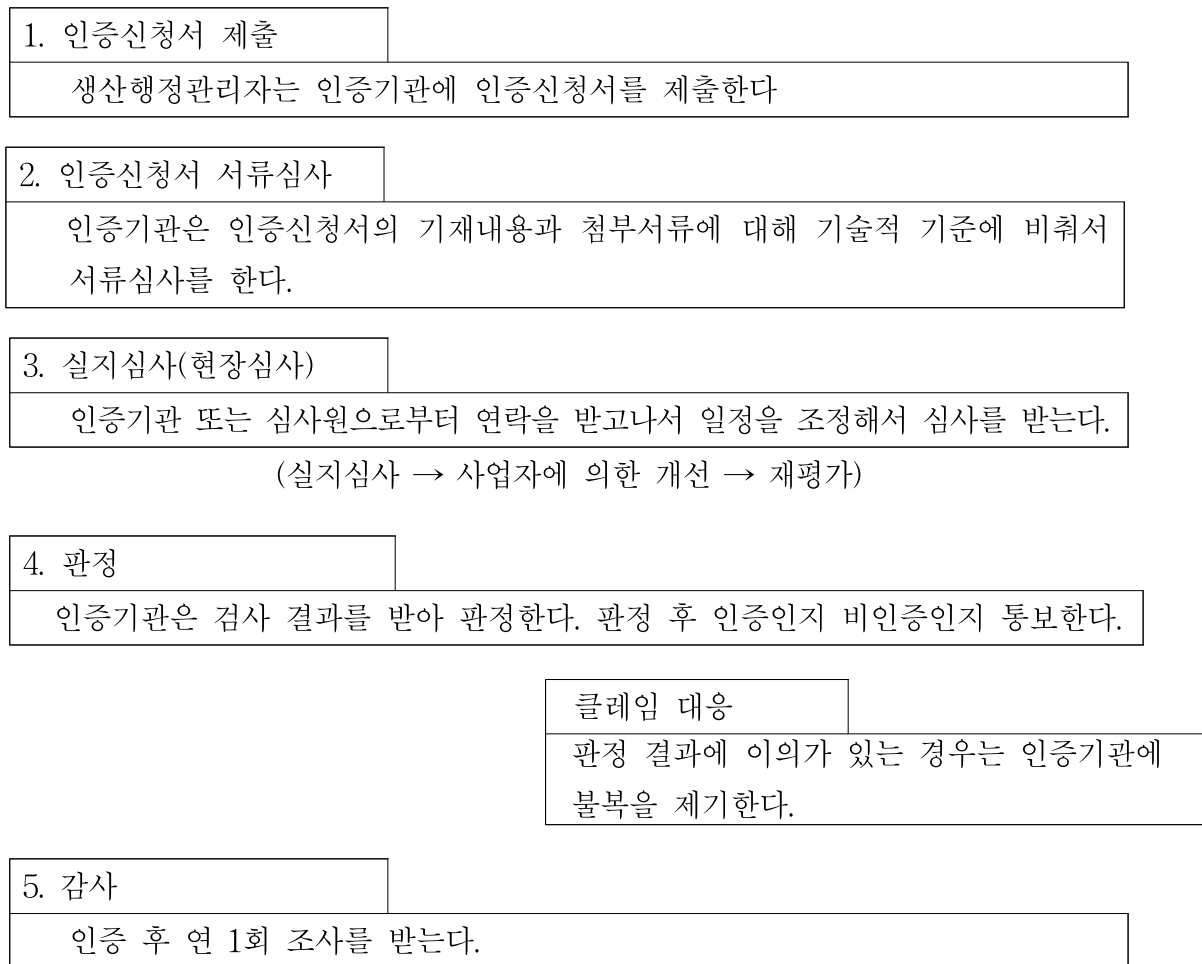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 : 인증기관이 결정되면 신청서를 제출함.
- 서류 심사 : 인증기관은 신청서 수리 후 서류심사를 실시함.
- 실지조사(현장조사)
 - 인증기관에서 파견한 심사원이 심사매뉴얼을 바탕으로 신청 내용과 실제 작업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 판정
 - 심사 종료 후 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판정원이 '인증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함.
- 개선 요구
 - 심사·판정 실시 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을 지적받는 경우도 있음.
 - 개선 요구 사항은 모두 개선해야 함.
 - 기록은 앞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 시 제출된 기록에는 허위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령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여 포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규정은 사무국이 작성한 것으로 생산자에게는 전혀 배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정은 작성되었지만 그 내용과 실태가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부적합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 취득은 어려움.

○ 인증을 위한 조건

- 인증 신청자는 인증을 취득할 때 다음 사항에 합의하는 것을 인증조건으로 하도록 성령(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림 3-4〉 인증신청에서 인증까지의 흐름도



□ 위반 시 제재사항

○ JAS 명칭 및 마크 사용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적용

- JAS 명칭 사용 금지 : 어느 누구도 JAS가 아닌 농림물자의 규격에 대해 JAS 또는 이에 혼동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JAS법 제8조).
- JAS 마크 사용 금지 : 어느 누구도 JAS 격부를 받지 않은 농림물자에 대해서 JAS마크를 붙여서는 안 됨.(JAS법 제8조).
- 위반 시 벌칙 적용 : JAS 명칭 및 마크 사용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 76조에 규정하는 벌칙 적용(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지적, JAS 마크 부착 일시 정지, 인증 취소
 - 조사 결과, 인증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이 보이는 경우, 다음 3단계로 대응이 취해진다.

- 조사 종류 :
 - 조사에는 정기조사와 부정기조사가 있음.
 - 정기조사는 대체로 1년에 1회 연차조사를 받는 것임.
 - 부정기 조사는 ①인증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변경 신고가 있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나 정보가 전해진 경우, ③JAS나 인증의 기술적 기준이 변경된 때 새로운 규격에 따른 업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이 경우 통상은 정기조사에서 재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④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등임.

- 조사 방법 :
 - 심사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실시.
 - 생산행정관리기록, 등급검사기록 등의 기록 확인
 - 일정 기간마다 심사원을 변경하여 실시함.

- 조사 결과 인증 부적합의 경우, 다음의 3단계로 대응이 취해짐.

<표 3-9> 부적합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 대응 단계 | 부적합의 내용 | 인증기관의 대응 |
|-------------------------|---------------------------------------------------------------------------------------------------------------------------------------------------------------------------------------------------------------------|-----------------------------------------------------------------------------------------------------------------------------------------------------------------------------|
| 개선요구 | 다음과 같은 부적합이 있지만 단기간에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해질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경미한 부적합이 있을 때 • 격부 및 JAS 마크의 표시에 관한 법의 규정에 경미한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때 • 광고 또는 표시에 대해 부적절한 것이 있을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시정된 대책의 검증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증기관은 시정된 내용의 실지확인을 실시하여 향후 위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심사한다. |
| 격부업무 및 JAS 마크 부착품 출하 정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범위에서 JAS법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1년 이내에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것이 전망될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격부업무 재개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시정된 방법의 검증에 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증기관은 시정된 내용의 실지확인을 하고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신청 시 서약한 항목의 위반, 보고징수의 거부, 허위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심사 거부·방해·기피가 있을 때 | <p>단된 경우에는 격부업무를 재개 가능하게 한다.</p> |
| 인증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항이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도 전망이 없을 때 • JAS 법의 JAS마크 표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 위반, 보고 미실시, 허위 보고, 심사 거부·방해·기피한 것을 이유로 농림수산대신이 취소를 요구할 때. • 인증기관의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인증을 취소하면 1년간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 재인증시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시정된 내용 검증에 대한 개선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증기관은 시정된 내용의 실지확인 을 하고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인증 처리를 한다. |

주) 중대한 과실의 사례로서는 ①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JAS 부적합이 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경우, ②장기간에 걸쳐 잘못하여 제품의 격부검사를 하지 않고 JAS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경우, ③장기간에 걸쳐 격부 기록의 기입을 잊고 있었던 경우, ④장기간에 걸쳐 격부 기록부에 잘못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4) IFOAM의 인증서 발급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인증서 발급절차 (심사원의 역할)

○ 신청자에 대한 정보 확보

- 해당 규격의 현재 버전
- 검사, 인증,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 계약 샘플 사본 또는 계약 조건 설명서
- 수수료 납부일정 사본

○ 신청서 양식 검토

- 원하는 인증의 범위
- 검사원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정보
- 다른 인증기관의 유기 인증 거부 역시 공개하며, 거부 사유도 함께 공개한다.

○ 사업자의 의무사항 검토

- 규격을 따르고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인증 받고자 하는 생산의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급하는 데에 대한 동의
- 인증 및 인정 담당자에게 생산단위 내 비유기 생산이나 근처 (소유 및 경영되는)

- 단위 모든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인증 및 인정 담당자에게 재정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사업자 문서 검토

- 인증기관은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가 관리하는 문서들과 그 밖에 검증에 도움이 되는 문서들도 확인함.
- 생산 및 가공 방법을 정의한 문서 절차가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인증기관은 이 절차를 요구함

○ 검사 준비

- 인증기관은 인증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증 범위가 신청자가 원한 것이 맞는지 인증 신청서를 검토함
- 인증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검사원에게 제공.
- 인증 신청서, 이전 검사 결과, 생산/공정의 설명서, 지도/계획서, 제품 사양 및 사용된 투입재, 이전 법률 조항 등이 정보에 해당됨.

○ 검사원의 임명

- 검사원 임명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가능한 지 고려해야 함.
- 원칙적으로 4년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검사원이 임명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임명되지 않음.
- 사업자는 검사 전에 검사원에게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기타의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현장심사 방문 절차

- 사업자의 유기관리시스템은 규격 및 인증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됨.
- 검사 절차는 비차별적이며 객관적인 검사 절차를 돕는 특정 프로토콜을 따름.
- 시설, 지역, 저장 단위를 방문하여 사업자의 생산 및 가공 시스템 평가
- 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제공한 최신 정보 확인
- 위험 지역 확인 및 조사
- 기록 및 청구서 검토
- 농장의 생산/판매 조정: 최소 3년마다 확인
- 가공 및 취급 내 투입/산출 조정과 역추적 감사
- 퇴직자 및 책임 관계자와의 면담
- 사업자가 인증기관의 규격과 요구사항 변경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확인
- 인증기관의 시료 채취 정책에 따라 시료 채취

- 이전에 부과된 조건들이 충족 되었는지 확인
- 인증 절차
 - 인증 부여, 유지, 철회 및 시행 중지
 - 인증의 범위 확대 또는 축소
 - 운영 재평가
- 검사 기록
 - 검사 일자 및 기간
 - 면담자
 - 방문 지역 및 시설
 - 실시한 문서 감사의 종류(투입/산출, 수출/판매, 역추적 등)
- 표본 채취 및 시험
 - 표본이 발생한 경우를 표시
 - 규격의 금지된 물질 사용이 의심되면, 표본이 증거가 될 경우, 분석을 위해 표본을 요구
 - 제품, 투입재, 토양 등 잔류 및 오염 물질의 허용 한계 규격을 설정할 때, 분석이 이루어져야함을 요구
 - 표본 채취 요구 및 방법에 대한 검사원 지침
 - 표본의 금액 지불 책임 지시
 - 분석은 관할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함.
- 인증 결정
 - 범위를 포함한 모든 인증 결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기록해야 함.
 - 초기 검사에 대한 인증 결정을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사업자는 자신의 인증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 인증의 거부, 철회, 중지 시,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함.
- 적합성 인증서
 -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 인증기관의 명칭과 주소
 - 사업자가 인증 받은 프로그램
 - 해당 규격에 따른 인증의 범위, 제품 또는 제품 카테고리, 각각의 인증현황 (전환기 또는 유기)
 - 발행일
 - 유효기간

- 인증기관의 공식 서명

□ 위반시 제재사항

○ 제재

- 인증기관은 규격에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의 범위를 문서화해야 함.
- 인증기관은 규정의 부적합이 경미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며 경미한 부적합이 아닌 경우, 기타 자격을 갖춘 유기 사업자라도 지속적인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함. 인증기관은 적절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야 함.
- “경미한” 부적합에 해당되는 사례
 - 직원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우
 - 규격에 따른 심각한 부적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적합은 기록 보관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며, 경미한 부적합이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적합으로 여겨질 수 있음.
- 제재의 문서화 절차가 있어야 함
- 유기적 순수성에 영향을 주는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 마크 또는 기타 인증표시를 부적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생산 운영 및 제품에서 제거하도록 요구
- 사업자에게 심각한 부적합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인증 철회
- 인증기관은 검사원이 명백한 부적합 또는 기만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증을 즉시 중단하는 절차를 가짐.
 - 기만이 의심되거나 초기 가능성이 있을 때 인증기관에 의해 비준되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긴급 조치로써 검사원에 의한 즉각 철회를 포함함.
- 제재 이유를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이의제기

- 인증기관은 인증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숙려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짐.
- 이의제기는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함.
- 이의제기가 결정되면, 문서화된 해결책을 만들어 항소자에게 전달해야 함.
- 인증기관의 역할
 - 이의제기에 대한 기록 보관
 - 적절한 후속 조치
 - 취한 조치와 그 효과의 문서화

5) CODEX의 인증서 발급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인증서 발급절차

-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인증권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당해 단위를 물리적으로 충분히 검사해야 함.
- 본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시료는 그 제품의 용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채취하는 게 좋음.
- 검사 보고서는 방문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수시로 예고 없이 하는 추가적인 방문도 필요에 따라 또는 무작위로 실시되어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

- 사후관리는 별다른 기준이 없음
- 인증 건 중 일부(5~10%)만 사후관리 실시
-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의 로트(lot) 또는 생산품 전체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없음.
-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인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함.
-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인증 불가

6. 심사원의 권한 관련 규정

1) 영국

(1) 인증서 발급절차

- 인증서의 발급과 관리(기간, 재발급) 기준⁷¹⁾
 - (EC) 834/2007 27조 1항과 4항, 28조 1항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생산, 저장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반드시 독립된 공인 인증기관과 함께 유기농 인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⁷²⁾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을 위한 관련

71)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 9~14p

72)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유기농 인증 관련 사무를 공인된 유기농 인증 기관에 위임하

유기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C) 834/2007 27조 3항, 28조 1항 & 2항에 따라 유기농 제품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인증 획득 희망자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 가공, 포장, 저장, 라벨링, 수출입, 도매, 유기농 수입제품에 대한 1차 유통업자, 기타 유기농 제품 또는 재료에 대한 물리적·금융적 소유권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⁷³⁾.
- (EC) 834/2007 29조 1항과 3항, (EC) 889/2008 63조 1항 (d)호와 68조에 근거하여 인증서는 영국 토양 협회(Soil association)⁷⁴⁾에서 유기농 인증 희망자의 영농활동내역을 확인하여 유기농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전자문서 형식 (electronic format)으로 발급⁷⁵⁾하며, 인증서에는 유기 인증을 받은 영농활동 목록과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목록(작물·가축·제품)을 등록하게 됨.
- 유기농으로 전환중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인 경우 ‘유기농으로 전환중인 농경지에서 생산된 제품(product under conversion to organic farming)’이라는 표식을 인증서 내에 기록된 거래 기간(trading schedule)에 표시할 수 있음.
- 매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하고, 인증 갱신전 갱신 관련 서류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고 있음.
- 유기농 인증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기농 기준 준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농경지 구매 및 추가, 새로운 가축품종 추가, 기업 신설, 가공 또는 포장 방식 도입 등) 인증기관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유기농 기준 준수 계획 작성 시 농경지 현황(유기농 또는 유기농 전환중), 유기농 기준 도입 시 투입이 불가능한 농화학 자재 마지막 투입 일자, 상품 보관·저장과 라벨링·가공·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보유 여부, 상품 운송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기농 활동 수행 계약을 제3자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체결한 경우, 유기농 기준 준수 계획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한 목록(제3자가 수행할 활동목록과

고 있으며,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그중 하나임. 영국 토양협회로부터 지정된 인증 기관은 영국 유기농 기준(The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에 따라 유기농 여부를 검사하고 인증할 경우 영국 토양협회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73) 최종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됨(소매점, 식당, 카페 등).

74) 토양협회는 1973년에 설립된 단체로,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식품, 제품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곳임. 토양협회의 인증은 토양협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정부보조사업임.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에 EU 위원회 Regulation No. 834/2007에 근거하여 유기농 식품 생산과 가공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음.

75) 인증서에는 인증 유효 기간, 인증 받은 사람 이름, 주소, 인증서 번호, 유기농 제품 거래기간, 생산자, 인증기업 여부, 유기농 방식을 적용하는 농경지 주소(지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제3자가 인증을 신청한 기관 등), 유기농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영농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제3자와의 계약 문서, 유기농 제품의 완전한 이력 추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보장 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계획 작성 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 이행 선언문(declaration)에 서명하여야 함.

- a) 유기농 기준 준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하였음.
 - 농경지의 상태(유기농 또는 유기농 전환중), 유기농 기준 도입 시 투입이 불가능한 농화학 자재 마지막 투입 일자, 상품 보관·저장과 라벨링·가공·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보유 여부, 상품 운송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b) 유기농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농 영농 활동을 수행할 것임.
- c) 유기농 인증 기준 미 준수시 어떠한 강제사항도 수용하겠음.
- d) 소비자 등 구매자에게 본인의 상품이 유기농 인증을 상실하였음을 고지하겠음.
- e) 이중 인증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인증 기관 또는 인증 기준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본인이 수행 하는 영농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을 허용함
- f) 인증기관 또는 인증 관리 공무원 변경 시, 본인의 인증이력 관련 정보 제공을 허용함.
- g) 제3자 또는 다른 유기농 활동 수행자로부터 받은 유기농 제품이나 유기농 인증자가 생산한 제품의 유기농 인증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통보하겠음.
- h) 인증 철회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인증기관 또는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겠음.
- I) 인증기관 또는 관리 담당 공무원이 최소 5년간의 인증 이력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함.

자료 :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2) 심사원의 역할

- 심사를 위하여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 영농활동 실시여부에 대한 방문점검이 1년에 1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유기농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또는 불시에) 추가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포장된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일 경우 방문점검 빈도가 낮을 수 있음.
-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목적으로 유기농 인증 관리 담당 공무원이 방문점검에 동행할 수 있음.
- 토양협회 등 기관이 방문하여 점검 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함.

- a) 계약 이행 선언문에 언급한 유기농 기준 준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함.
- b)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이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함.
- c) 혹시 모를 유기농 기준 미준수·결함 등이 발견될 수 있는 활동 결과 보고서 수집.

- 심사를 위한 방문 점검 시 인증기관 또는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의 물건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자재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⁷⁶⁾ b)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임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회계계정과 관련서류. c)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임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d)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유기농 품질보증 프로그램 실시 결과물 |
|-----------------------------------------------------------------------------------------------------------------------------------------------------------------------------------------------------------------------------------------------------------|

- 토양협회가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사용 금지 물질 잔류 여부와 유기농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인증심사원의 자격과 관리에 관한 규정⁷⁷⁾)

- 영국 인정청(UKAS)는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인증 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 심사원의 경우 인증(Certification)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⁷⁸⁾에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대상 : 교육대상은 상품, 공정, 서비스 인증을 수행하는 개인⁷⁹⁾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 및 품질 지원 활동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을 통하여 상품과 공정, 서비스 등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습득하여 업무 수행 시 최신 규정에 근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에는 아래의 주제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품 및 공정 인증에 대한 개요(Overview of Product and Process Certification)
 - 인증기관 운영 구조(Organisation & Management Structure)
 - 공정성 유지(Managing Impartiality)
 - 업무에 필요한 자원(Resource Requirements)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Process Requirements)

2) 일본

□ 심사원의 역할

- 심사원은 신청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을 보고해서 적합성의 평가를 실시함.
 - 검사 시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자에게 언급할 수 없음.

76) 비유기농 제품 생산 도구, 투입 농자재 보관 창고 등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임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77) <https://www.ukas.com/training-and-advisory/training/courses/iso-iec-17065-awareness/>

78) 인증 업무의 경우 ISO/IEC 17065:2012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함.

79) 기술 관리자(Technical managers), 품질 관리자(Quality managers), 코디네이터(Coordinators), ISO/IEC 17065 기술 평가자(ISO/IEC 17065 Technical Assessors) 등

□ 심사 순서(절차)

○ 일반적으로 ①검사 수락, ② 서류심사 실시, ③ 실지심사 실시, ④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심사활동이 진행됨.

○ 서류심사 방법

-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기 JAS 규격에 준거한 생산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실지심사

-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확인 사항을 점검함.
- 개시 회의 개최
- 청취조사, 현장방문, 서류·기록 확인
- 심사소견 작성과 종료 회의 개최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보고서는 서류와 실지심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함.
- 판정원은 심사원의 보고서와 부수 정보를 보고 평가함.

□ 유기농산물의 심사사항

○ 생산 및 보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심사

- 실지심사에서 생산관련시설(포장, 육묘시설)과 보관 관련 시설이 JAS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함.

○ 생산계획 확인

- 연간(또는 작형에 맞춘) 작부계획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등에 대한 대응 확인
- 생산 관련 내부규정 확인
- 사용금지물질 혼입 대책 확인
- 생산행정의 관리 또는 파악 상황 확인
- 생산행정의 근거서류(기록) 확인
- 격부규정 확인
- 생산로트별 격부 확인
- 격부 시기 및 방법 확인
- 격부규정의 내용 확인
- 시행되지 않은 장래 격부 확인

- 실시되지 않은 장래 표시 확인
- 격부 담당자의 인원수

□ JAS 규격에 관한 사항

○ 포장 조건

- 포장 주변으로부터 사용금지자재의 유입 방지
- 신규 신청 포장의 이력 확인
- 개척 포장의 이력 확인
- 외부 구입 비료 시용 경우 확인
- 비료의 적합성 확인
- 포장에 사용하는 종자, 모종 등의 확인
- 비유기 종묘 사용 경우의 확인
- 농약의 적합성 확인 :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방제를 한 다음에 사용
- 수확 후 공정에서 혼합 방지 확인
- 수확 후 공정에서 농약, 세정제, 소독제 등에 의한 오염 방지

3) IFOAM

□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의 구성과 역할

- IAC는 인증기관이 IFOAM 인정을 받기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ISO 65에 기초하여 유기 농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였음.
- IFOAM 인정은 IOAS(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음.
 - IOAS는 미국에 위치한 독립 비영리기관으로 1994년에 IFOAM에 의해 설립되어 IFOAM과의 공식적인 협의하에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정은 1) IFOAM 요구조건(표준)에 대한 서류 심사(screening), 2) 평가 방문(참고인 심사), 3) 감독(감시) 방문 4) 매4년마다 재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비용은 신청비용과 심사(screening)을 위해 5,000달러, 평가비용 500달러(1일당), 연간회비 약 3,000달러, 감독(감시) 비용 1,200+600달러(1일당), 재신청 및 평가 비용 3,000+500달러(1일당)가 소요됨.
- IFOAM이 인정한 인증기관은 정부, 민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의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며 다만 이해관계에 의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IAC 1.3.1) 인증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원칙 및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켜야 함(IAC 1.3.3).

- 이밖에 인증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는 인증프로그램과 분리되어야 함 (IAC 1.3.4).

- IFOAM 인정 인증기관은 IFOAM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 인증표시는 반드시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표 3-10 > IFOAM 인정 기준의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인증기관 구조 | 책임감, 공평, 객관성,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관계당사자들의 참여, 이해상반 운영, 기능분배, 필요자원 |
| 인증기관 품질 체계 | 품질 정책, 품질 자료(정책+절차 등), 내부감사, 관리 검토, 컴플레인 |
| 서류 관리 | 정보, 서류, 및 기록에 대한 공공의 접근 |
| 신청 및 검사 절차 | 신청, 검사, 보고, 기록 |
| 특수 상황에 대한 요구 조건 | 전환, 분할+병렬 생산, GE, 야생제품, 투입재 인증 |
| 인증 절차 | 결정, 제재, 항소 |
| 기존 인증의 용인 | a) 인증프로그램, b) 서류검토, c) 운영자의 이전 |

□ 인증기관의 인정절차

○ 인정 신청 및 검토 절차

- 인증기관의 신청인은 작성완료한 신청서 서식 및 요구되는 문서를 신청비용 및 평가비용과 함께 IOAS로 보내야 함
- IOAS는 IFOAM 규정에 따라 문서를 검토하며,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검토 보고서는 IOAS 직원 중 다른 요원에 의해 정밀 검토가 이루어진다.
- 해당 규격 및 기준에 따른 모든 부적합 및 결함사항을 나타내는 부적합 보고서는 IOAS에 의해 작성됨.

○ 방문평가와 평가절차

- 인증기관은 동일한 인원에 의해 연속으로 2회 이상 평가받지 않아야 함.
- 방문 평가 단계
 - 신청기관의 중앙 사무소에서 관리책임자와 면담을 함.
 - 인증 사무소의 파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실시.
 - 종사자에 대한 육안을 통한 검토 심사.
 - 최소한 1회 이상의 입회 심사.
 - 중앙 사무소에서 종결 인터뷰 개최.

- 방문평가지 확인 사항

- 모든 문서가 완전하며 갱신 관리되고, 서식류, 조사보고서 또는 인증 결정 사항에 관한 기록이 누락 없이 유지되는지 여부;
- 조사보고서는 포괄적이며,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건전한 인증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
- 인증 결정은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적합성의 수준에 일치하는지 여부;
- 시정조치에 대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인증기관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경우, 그 실행사항이 적절히 모니터링되고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 해당 기관이 IFOAM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재평가인 경우, 인정 조건이 충족되어 왔는지 여부;
- 사업자 심사인 경우, 사업자의 실행기준이 인증기관의 규격에 적합한지와 조사 기록파일이 생산 시스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 인증기관이 본사 소재지 이외에 여러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 평가는 정상적으로는 대상 국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를 선택하여 사무소 및/또는 사업자에 대한 방문조사 포함.

○ 인정 절차

- 인정에 적합한 경우

- 모든 파악된 부적합 사항이 신청기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졌음.
- 파악된 결함사항이 규정된 개수까지 감소되었음.
- 인증기관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나머지 결함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기로 약속함.
- IOAS가 인증기관의 기능적인 운영이 효과적임에 만족함.

- IOAS 인정위원회가 신청한 기관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정 지위 부여

- 신청한 기관이 적합성을 위하여 부여된 조건과 일정계획에 동의하면, 서명을 하여서 연회비와 함께 회신하여야만 하는 인정 계약서(Accreditation Contract)가 송부됨

○ 인정 수여

-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IOAS는 인정 증명서 발행

- 인정을 받고 부가적인 증지 협약(Seal Agreement)이 체결되면 즉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자체 홍보물에 IFOAM 증지를 사용 허용

○ 이의 제기

- IOAS의 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IOAS에게 직접 하여야만 하고, 논의결과

- 통지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짐
- 최초 이의제기 사항은 인정 위원회에서 검토되지만, IOAS의 이의처리위원회에 2차 이의제기가 가능함
- 인정 처분(Sanctions) : 인정 기준 및 기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위반이 존재하여서 인정 계약서에 따른 부적합이 있는 경우
- 경고 서한 또는 견책문서의 발행
 - 부가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일정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함
 - 벌금 부과
 - 인증기관이 지정된 기한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 인정 정지
 - 인정 취소.
- 인정의 취소
- IOAS는 인증기관의 수행성과와 실행사항이 IFOAM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인정지위 취소 가능
- 인정 지위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IFOAM 인정 평가기준이나 IFOAM 기본 규격에 대한 부적합한 경우;
 - 합의된 일정계획 이내에 부적합에 관련된 인정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인정 지위의 오용이 발생한 경우;
 - IOAS의 직원이나 평가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완전한 접근 허용을 거부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 정해진 시점에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내려진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인정 계약기간
- 인정 계약 주기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따라 4년으로 되어 있음
- 인증기관 사후관리(Surveillance)
- 최초 인정 이후에 인증기관은 최초 4년간의 계약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는 1년차 및 3년차에 사후관리 방문조사를 받게 됨.
 - 그 이후의 계약기간에서는 인증기관이 계약기간의 2년차에 해당하는 해에 한 사후관리 방문조사를 받게 됨

□ 인증기관의 역할

○ 문서 관리: 인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문서화 시스템 유지

- 해당 문서의 최신호는 관련 지역에서 이용가능.
- 문서의 모든 변경사항은 수정 권한에 의해 이루어짐.
- 모든 변경사항은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
- 대체 문서는 조직 전체 사용에서 제거
-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경 통보
- 각각의 문제가 확인하고 모든 적절한 문서 등록.
- 문서가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지 판단
- 수행 날짜를 정확하게 문서에 표시 함

○ 기록

- 인증기관은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기록 과정의 무결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 관리, 공개되어야 함.
- 사업자 서류들은 검사 결과, 이력, 제품 특징 등 최신의 관련 정보들을 포함
- 기록은 인증 결정 절차가 적절한지를 입증해 줄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함
- 주요 위반, 부적합, 제재, 판례, 제외,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에 대한 결과 등의 별도의 기록도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함
- 모든 기록은 5년 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업자의 기밀을 유지하며 전산화된 기록은 정기적으로 백업함.
- 검사 보고서, 인증 결정, 인증서 및 기타 관련 기록은 공인된 사람이 서명해야 함

○ 예약된 검사 빈도

- 인증 받은 사업자가 적어도 1년에 한번 검사
- 개인 사업자의 위험을 고려한 검사의 빈도 및 유형
- 생산 및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위협하는 모든 관련 위험 분석
- 기존 인증 받은 사업자의 총 검사 횟수와 동등한 연간 총 검사 횟수
- 사업자는 3년 간 한번 이상 검사
- 인증기관은 검사 시 발생하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감시하기 위한 구조

○ 매년 한번 이상 검사를 계획하는 기준 또는 상황에서 생산의 유형, 사업자의 준수 여부 기록, 생산의 복잡성, 비 준수의 위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문서화 함.

- 불고지(불시) 검사
 - 검사 빈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도 기반 접근의 경우, 사업자의 최소 5%는 불고지 검사를 받음
 - 연간 검사 빈도의 경우, 무작위로 선발되며, 정기 검사를 받는 불고지 검사의 횟수는 인증 받은 사업자의 5% 이상으로 함.
 - 인증기관들은 불고지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음.
 - 무작위 및 표적 선발을 포함하여 불고지 검사를 받는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함
- 허가의 운영 및 범위의 확장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 인증기관은 사업자에게 제품, 제조 공정 수정, 면적 확장, 관리 및 소유권 이전 등 중대한 변경사항 신고 요구.
 - 인증기관은 신고 된 범위의 변화를 확인하고, 검사 기준이나 대체 방안 강구

7. 기타 규정

1) 미국

□ 기타사항(제언 및 논의사항)

- 미국 유기 인증제는 과정과 결과를 양분하여 대립 관계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자체가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유기식품생산법(OFPA)과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관련 연방 규정집(CFR) Part 205 내의 세부 사항들을 과정, 결과, 환경 영향의 세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준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결되므로 전체 과정 틀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아 보임.
 - 구체적으로 생산-가공 및 유통-소비의 가치사슬을 전체 과정이라 설정하되, 현재 결과로 해석되는 부분은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인 소비에 위치시킴으로써 과정의 일부로 해석을 하고 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하여 한 체계(system)로 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결과는 과정의 하위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환경 가치 영향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미국 유기 인증제의 경우 인증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 및 취급 과정, 농산물 및 가공품 등 최종 결과에 대해 전 과정에서 유기 인증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임.
 -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국내에 비해 DB 구축이 잘 되어있다는 점으로, USDA가

구축하여 운영 중인 ‘Organic Integrity Database’와 생산 및 취급 사업장이 인증 심사를 신청할 경우 활용하는 ‘Organic Cerifier Location’ 등은 국내 유기 인증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인증 요구사항 위반 시 사업장이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때 모든 이전 인증 기관 신청 내역과 시정 조치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업장 및 인증 기관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향후 국내 유기 인증제가 과정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과정 중 심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운용과 행정력 요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증 심사의 투명성과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이 화두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인증기관 운영 및 DB 구축 운영에서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인증기관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 국내의 결과 중심 인증제에서 비산 (drift) 농약 및 오염물질이 최종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것이 논쟁의 이슈가 되는음.

- 이는 연방규정집(CFR)의 §205.400 인증 일반 요구사항의 (f)항, 즉 비산 물질의 접촉 시 해당 사안을 인증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기농 생산농가의 경우 유기농 생산 과정에서 준수 사항을 지키더라도 최종적으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될 경우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음.

- 인근 비유기농 농가의 농약 등 비점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인증기관 및 유관 기관에 즉시 사전 신고하고 해당 기관은 신고 이력을 DB화하여 향후 잔류 농약 검출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CFR §205.400 인증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 |
|--------------------------------------------------------------------------------------------------------------------------------------------------------------------------------------------------------------------------------------------------------------------------------------------------------------------------------------------------------------------------------------------------------------------------------------------------------------------------------------------------------------------------------------------------------------------------------------------------------------------------------------------------------------------------------------------------------------------|
| <p>(f) Immediately notify the certifying agent concerning any:</p> <p>(다음 모든 사항에 관한 것은 인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p> <p>(1) Application, including drift, of a prohibited substance to any field, production unit, site, facility, livestock, or product that is part of an operation; and</p> <p>((1) 특정 사업장의 한 부분인 모든 현장, 생산단위체, 장소, 시설, 가축 또는 제품에 대해 금지물질이 날아오는 것을 포함한 이들의 접촉; 그리고)</p> <p>(2) Change in a certified operation or any portion of a certified operation that may affect its compliance with the Act and the regulations in this part.</p> <p>((2) 법률과 이 장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증받은 사업장 또는 그 사업장의 어느 부문에서 발생한 변경사항.)</p> <p>[65 FR 80637, Dec. 21, 2000, as amended at 80 FR 6429, Feb. 5, 2015]</p> |
|--------------------------------------------------------------------------------------------------------------------------------------------------------------------------------------------------------------------------------------------------------------------------------------------------------------------------------------------------------------------------------------------------------------------------------------------------------------------------------------------------------------------------------------------------------------------------------------------------------------------------------------------------------------------------------------------------------------------|

○ 영농기록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대학, 인증기관, 농가 조직 및 협회 등에서

기록관리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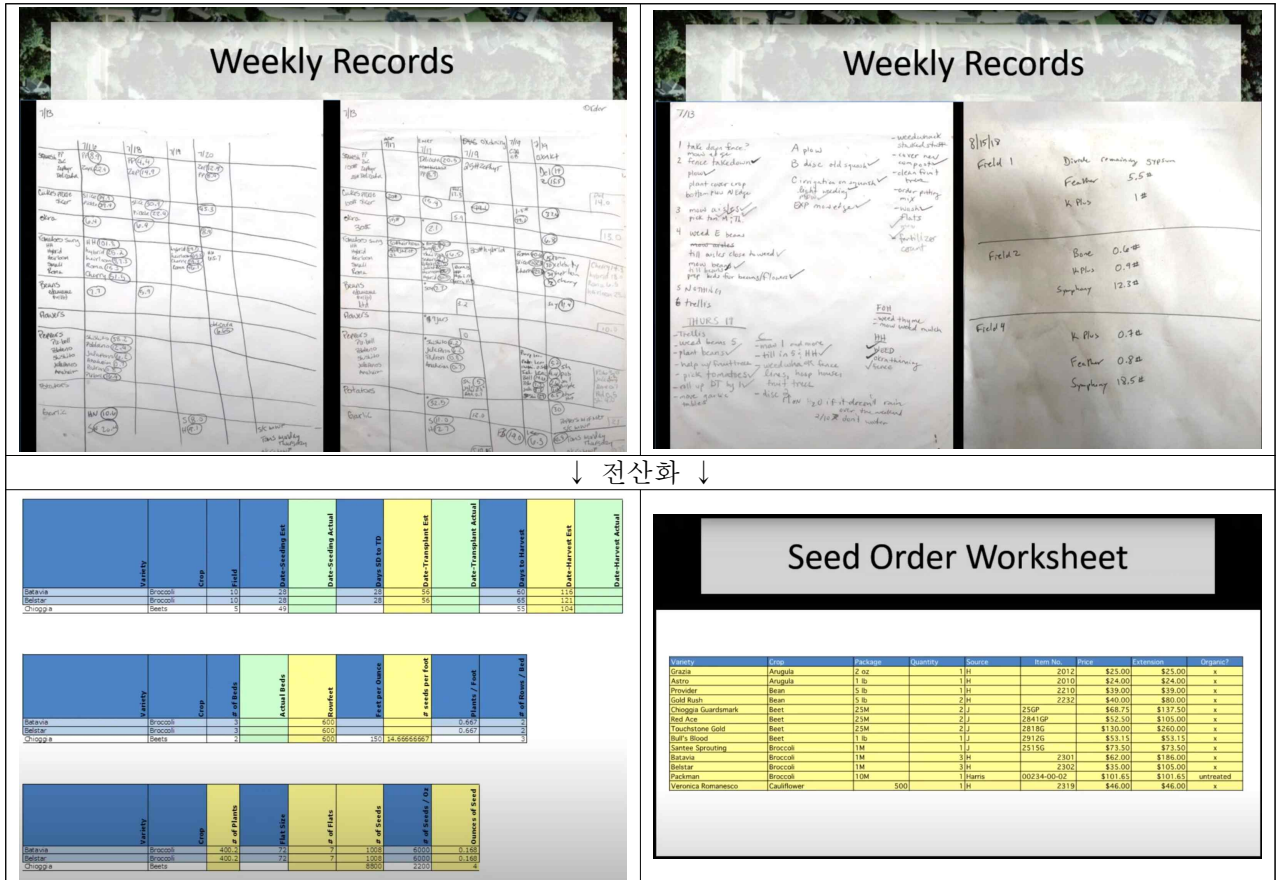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기록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기농 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록 작성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산화, 예를 들어 태블릿으로 전자 기록하는 방식을 정착하여 관련 DB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유기농과 환경 간 영향 정량 계측, 결과물의 잔류 농약 검출 시 이력 추적 등에 활용할 여지가 커 보임.

<그림 3-5> 영농기록 디지털 솔루션 예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ourceTrace website for DATAGREEN Farm Data Management Software.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SOLUTIONS, ABOUT US, CUSTOMERS, RESOURCES, BLOG, REQUEST A DEMO, and CONTACT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DATAGREEN FARM DATA MANAGEMENT SOFTWARE' and features a section titled 'UNLEASHING THE POTENTIAL OF FARM MANAGEMENT APPS'. This section lists four key features: 'Intuitive interface' (easy data upload), 'Works everywhere' (offline mode), 'Extensive modules' (farmer profiling), and 'Customizable for unique needs'. To the right, there is an image of a laptop and a smartphone displaying the software interface. Below this, a video player is shown with the title 'DIGITAL PLATFORM APPROACH TO AGRICULTURE'. The bottom right section is titled 'FARM RECORD KEEPING SOFTWARE LIKE NO OTHER' and describes the software's capabilities in digitizing farm operations and monitoring crop growth.

자료: Sourcetrace, <https://www.sourcetrace.com/farm-management>

<그림 3-6> 영농기록 전산화



자료: CCOF, <https://www.ccof.org/linkedvideo/digital-organic-recordkeeping-growers>

- 궁극적으로 과정 중심의 인증제는 유기 인증이 환경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환경 영향 관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관련 지표나 기준 수치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이에 국내 인증제의 개선 방향은 환경 가치 관련 측정 지표의 구체화, 해당 기준 수치의 정량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됨.

8. ISO/EC 1765(ISO 17065)

□ ISO 17065 인증제도 개요

- ISO 17065는 국제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분야별 국제 표준 중 하나임
 - ISO/IEC의 회원국의 국가기관은 특정 기술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통한 국제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데,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ISO 적합성 평가위원회(CASCO)는 국제 표준 및 가이드 개발을 담당함(ISO/IEC, 2012)
- ISO 17065 표준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인증 표준 및 기타 규범 문서의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기농 인증분야에서도 인증기관이 유기농 제품을 인증하고자 할 때 그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이 공정한지와 인증 역량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규범으로 ISO17065 국제 표준이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이 표준은 국내 및 국제적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수용을 쉽게 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 제도 소유자 및 기타 기관의 인정 또는 동등성 평가 또는 지정을 위한 기준 문서로 활용되고 있음 (ISO/IEC, 2012)
 - 우리나라에서 동등성 평가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미 또는 한·EU 사이에 체결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인정협정 체결이 해당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국가 간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평가의 기본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ISO17065의 요구사항에 해당함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가 동등한 수준임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에 대한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면제하여 수출입을 촉진함

□ 인증기구와 인증기관의 구성과 역할

- 인증기관의 최고 경영진은 법령과 인증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책과 목표가 공정성 기반하에 인증기관의 모든 조직에서 인정되고 실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인증기관 경영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책임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증 활동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위원회 등의 기구 운영)을 갖추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인증기관은 경영진, 소속 직원과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한 조직 구조를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인증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서 및 조직을 포함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경영진(the management)은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갖는 이사진(board), 위원회 또는 개인을 임명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임무를 부여해야 함.
 - 즉, 인증기관은 경영진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증기관 운영이 공정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개발
 - 정책 및 절차 이행 감독
 - 인증기관의 재정 감독

- 인증 활동의 개발
- 인증 요구 사항 개발
- 평가 (ISO17065 7.4 참조)
- 검토 (ISO17065 7.5 참조)
- 인증 결정 (ISO17065 7.6 참조)
- 위원회를 대신하여 정해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직원에게 권한 위임
- 계약 합의
- 인증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인력 역량 요구 사항
- 인증기관관리시스템 (ISO17065 8 참조)

○ 이러한 조직 운영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 임명, 권한의 위임 조건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또한,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갖추어야 함

□ ISO 17065의 적용

○ ISO 17065 5.2에는 인증기관이 인증 활동을 수행할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들의 인증 활동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하여야 하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그리고 그러한 신뢰와 공정성을 얻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인증기관이 설립한 하나 이상의 위원회 이거나 제도 소유자, 정부 기관, 위원회 등의 기구 형태도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인식됨

○ 이러한 메커니즘(위원회 등의 기구)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① 인증 활동의 공정성과 관련된 정책 및 원칙
- ② 인증 활동의 일관되고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상업적 또는 기타 고려 사항을 허용하려는 인증기관의 의도(성향)
- ③ 개방성을 포함하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공정성 기구를 설립할 때에는 특정분야의 단일 이해관계가 우세하지 않도록 인증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인력을 포함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어야 함.

- 공정성 기구는 인증기관의 최고 경영진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최고 경영진이 기구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구는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인증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 절차 또는 기타 필수 요구 사항과 충돌하는 조언을 따라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를 유지해야 함.

- 인증기관이 공정성 기구를 설립·운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인증기관의 고객, 고객의 소비자, 제조업체, 공급 업체, 이용자, 인증전문가, 산업 협회 대표, 정부기관 또는 기타 정부 서비스 대표, 소비자 조직을 포함하는 비정부기구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인증기관이 스스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으므로, 내외부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 의한 인증기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받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임.

○ 인증기관은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의 근거를 법률에 따른 법인일 것과 법인으로서의 인증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인증기관의 책임과 능력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법률에서 부여하는 등록된 법인이거나 최소한 법인 소속의 일부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정부의 지위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 됨.

○ 인증기관은 제품 등에 대한 인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책임의 대책을 갖추어야 함. 금전적 책임에 대한 이행방법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채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보험 또는 적립금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 ISO 17065 4.3 항에도 채무 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적립금 마련을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음.

- 이는 ISO 17065 표준에 세부적인 실행 규범을 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임.

□ 인증서 발급절차

-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그 고객(운영자 또는 사업자) 사이에 문서화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증기관과 사업자 사이의 협약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 양자 간에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문서화하도록 하고, 협약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ISO 17065 4.1.2에는 11가지 세부 항목으로 협약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그 주요 내용은 인증기준의 상시 준수,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용하고 문서 및 기록 등을 유지·관리하고, 인증기관의 비방을 금지하고, 인증품의 적합한 마크 및 광고 활용, 인증기준에 대한 부적합 사항 자체관리, 기존 인증사항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협약 사항으로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권위를 보호하고, 인증받은 제품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대외적인 광고, 홍보에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인증기관이 획득해야 하는 정보는 이후 진행되는 인증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함.

- 인증 신청인은 인증 신청과 관련되는 규정의 요구사항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인증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생산하는 곳이 신청인의 사업장과 다른 경우에도 그 외부위탁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인증 조사 또는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처리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신청 검토 단계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인증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① 신청인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인증활동 수행에 충분한지,
 - ②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할 인증기준에 대하여 신청인과 인증기관 사이에 이견은 없는지,
 - ③ 신청받은 내용이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범위에 해당하는지,
 - ④ 신청인의 인증조사과정에 대한 준비, 인증기관의 자원 등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인증기관은 확인하고 인증 신청인과 확인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인증 조사를 수행하는데 신청받은 품목, 규범문서(인증기준), 인증제도 등이 경험이 없는 분야인지를 파악하여 인증 조사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증 경험이 없는 분야라도 축적된 지식에 의하여 충분히 인증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봄.
- 이러한 인증 활동에 대한 충족 대상은 제품, 인증제도, 인증기준, 관련 지식, 담당 직원의 역량, 시험설비 등으로 인증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건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야로 판단되거나 인증기관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않아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건이 기존에 부여한 인증과 관련되거나,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과 관련되어 인증조사 단계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국제 표준에서 ‘평가’라는 용어는 ‘평가(evaluation)’, ‘조사(inspection)’, ‘감사(audit)’ 등의 용어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됨.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제도에는 ‘심사(inspection)’로 사용되고 있음
- 인증기관은 인증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평가(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직원을 배정하되, 외부에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조직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관여하지 않아야 함.
 - 인증기관은 설계 및 문서검토, 샘플링, 테스트, 조사 및 감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는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또는 문서가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내부자원 또는 외부위탁 자원의 각 수행하는 평가 활동 유형에 따라 평가 활동을 관리하고, 제품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요구사항 및 인증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부적합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부적합을 통보받고도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합이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추가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모든 평가 활동의 결과는 검토(인증심의) 전에 문서화(평가결과보고서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 문서에는 인증 평가가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지, 인증기관의 책임하에 수행되는지 또는 인증신청 전에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인증신청 전에 평가가 완료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ISO 17065 7.5 절은 인증조사관이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인증기준 및 기타 요구사항,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인증 신청 건이 요구사항(인증기준)에 충족하는 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임.
 - 검토는 조사(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와 인증 결정을 동일한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검토자가 작성한 검토 의견에 따라 인증이 결정되도록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ISO 17065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는 인증 조사 → 인증 검토 → 인증 결정 3단계 절차로 각 기능별 담당자의 명칭은 인증조사관 → IR검토관 → 판정관으로 운영됨.
- 인증의 결정은 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 인증기관은 인증 결정의 근거가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인증을 결정하여야 함
 -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증승인을 결정하고,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함.
- 이러한 인증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인증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의사결정 인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이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의한 이해관계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임.
 - 다만, 검토 및 의사결정은 동일한 사람 또는 그룹(심의회)이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한번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 인증 의사결정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조직적 통제(관리)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승인 불가 의사결정을 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신청인이 인증 평가를 지속적으로 희망한다면 인증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음.
- ISO 17065 7.7 절은 인증서의 발행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서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를 인증기관의 명칭과 주소, 인증 승인 일자, 인증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인증범위 및 그와 관련된 근거 규정, 인증 기간 또는 만료일,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ISO 17065 7.9 절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인데, 사후관리 활동은 ISO/IEC 17067를 참조하고, 각각의 인증제도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됨.
- 사후관리에 조사, 검토, 인증 결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7.4(조사 또는 평가), 7.5(검토), 7.6(인증 결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제품에 인증마크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한국 제도에서는 인증갱신 심사에 해당함)가 이행되어야 하고,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이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후관리는 인증승인 후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즉 인증받았음을 표시하는 제품과 인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른 정기조사 시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ISO 17065 7.4~7.6(평가, 검토, 인증 결정)의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짐.

□ 인증심사원의 역할

- 인증기관이 인증제도, 인증기준, 기타 규범 문서와 관련하여 담당(인증조사, 검토, 결정 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무 부여와 관련됨.
-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방침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인증기관의 인적자원의 범위에는 위원회 구성원, 외부 기관의 직원, 인증기관의 직원들이 포함됨.
 - 이러한 인적자원에 포함되는 직원은 인증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법률이나 인증 체계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관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인증조사관 역량관리 요건 및 이력관리(ISO 17065 6.1.2)

-
-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① 제도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업무 과정에서 각 기능에 대한 직원의 능력 기준을 결정한다.
 - ② 교육 요구 사항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규정, 인증기준,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인증 체계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③ 직원이 수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 ④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 ⑤ 직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 한다.
-

■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이름과 주소
 - ② 고용주 및 직위
 - ③ 교육 자격 및 직업적 지위
 - ④ 경험과 훈련
 - ⑤ 능력 평가
 - ⑥ 성과 모니터링
 - ⑦ 인증기관 내에 보유된 권한
 - ⑧ 각 기록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날짜
-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계약서 등의 문서 협약을 통하여 인증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전·현직 직무와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인증기관이 인증제도, 인증기준, 기타 규범 문서와 관련하여 담당(인증조사, 인증기관이 평가활동(인증활동 - 인증 조사, 검토,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자원으로 충분한 평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범을 갖추어야 함.
- 평가활동에 관련되는 인증 규범은 원칙적으로 국제 규범에 동등한 수준의 내부 규범을 갖추어야 함.
 - 대표적으로 시험분야는 ISO/IEC 17025, 검사분야는 ISO/IEC 17020, 경영시스템은 ISO/IEC 17021을 적용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다만, 평가 대상 분야가 인증기관 내부 역량으로 자체 전문지식 등을 이용 가능한 경우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른 평가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 요구사항으로 간주하여 국제 표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평가를 위한 내부자원은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이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규범이어야 함.
 - 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평가(조사, 심사, 감사 등) 활동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평가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범을 갖추고 관리되어야 함.
 - 인증기관이 인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중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은 내부자원에 적용되는 표준과 동일하게 시험분야는 ISO/IEC 17025, 검사분야는 ISO/IEC 17020, 경영시스템은

ISO/IEC 17021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함.

- 또한, 외부 자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은 위탁 업무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외부 위탁기관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ISO 17065 7.11 절은 인증 감독(사후관리) 결과 인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인증사업자에게 인증기관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축소, 정지 등 조치사항과, 인증의 축소, 정지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증을 복권하는 절차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후관리(감독) 등의 조사 결과 인증 요구사항(인증기준 등)에 부적합이 입증되면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인증기관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 인증 지속(예: 사후관리 강화)
 - 부적합한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인증 범위 축소
 - 의뢰인에 의한 시정 조치가 완료 시까지 인증 중단
 - 인증 취소
- 인증이 종료되거나 정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인증기관은 규정에 따라 인증 문서, 정보 공개, 마크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인증 범위 축소 시에는 사업자에게 축소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검토, 인증 결정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인증이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 정지 사항의 처리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능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공식화해야 함.
 - 제품에 대한 인증 정지를 완료하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치
- 정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평가, 검토 또는 결정 과정이 다시 이행되어야 함.
 - 인증이 정지된 후 복원되는 경우, 제품이 인증된다는 모든 적절한 표시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은 공식 인증 문서, 정보 공개,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복권을 조건으로 인증 범위 축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축소된 인증 범위가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인증 문서, 공개 정보, 마크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 ISO 17065 7.10 항목은 이미 승인된 인증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권한 유지 및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또는 인증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축소 확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임.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하여 인증의 권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처리 절차의 운영이 필요한데, 인증기관은 인증 규정에 신규 또는 개정된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인증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인증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인증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ISO 17065 7.4~7.6에 따른 인증 조사, 검토, 인증 결정 과정 이행과 인증의 확대 축소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및 사후관리도 포함될 수 있음.

IV. 환경가치 중심 인증 심사 · 관리 체계 도입 방안 제안

1. 기본 방향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함.
 -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농업환경 보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인 영농 기술 상황과 한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함.
 -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들이 다시 관행농업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국제적인 유기농업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 외국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 규정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친환경농업 생산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함.
 -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환경보전에 관한 높은 인식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 이를 통해서 기존의 식품 안전 외에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로의 개편을 인식하도록 함

- 일반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다만, 친환경농산물은 안전성 외에도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 환경가치에 기여한다는 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인증 관련 규정 개정 방향

1) 인증체계의 관점 개선

□ 현황

-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과정과 결과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우리나라 인증체계를 결과 중심인증 특성을 가진 제도로 주장하고 있음.
 - 핵심적인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실제 국내 인증취소의 대부분이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산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규정 준수 활동보다도 잔류농약이 인증적부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점을 들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결과 중심 인증제도' 라고 주장하는 것임.
- 실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적용되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과 농관원 고시를 살펴보면, '일반', '재배, 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생산 과정과 결과물인 품질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생산 과정을 확인하는 것임.
 - 따라서 규정만으로 보면 과정보다 결과(결과물인 생산물)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가 '결과 중심 인증'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현실적으로 인증심사과정에서 농약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생산 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산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배방법에 대해서는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러나, 토양이나 제품 검사를 통해 판정하는 농약 검출 여부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농민이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농민은 결과 중심이라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인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표본 검사의 비중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높고 부적합에 대한 원인파악이나 구제 방안이 미흡하여 생산자에게는 매우 엄격한 인증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증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제품' 인증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생산 과정에서 농민들의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인증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고품질 식품 공급에 중점을 둔 인증체계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처음 출발했던 1998년 당시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변화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 가치 중심 인증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임.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짐.
 - 현행 기준이 농산물의 안전성 즉, 각종 화학 자재의 투입 여부가 검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이나 토양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 외국의 규정을 참고로 일부 규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특성을 “환경가치 중심 인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의 환경가치 중심 관점에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증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임.

□ 주요 인증제도 개편 내용

(1) 현행 인증 규정 개정 필요 부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목적이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토양 및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규정 개정
 - 토양 및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표본 비율을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 위험평가 체계 및 관련 규정 도입
 - 친환경농산물 위험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위해 요소에 근거한 인증심사 및 검사를 추진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 농산물의 위험평가 절차를 친환경농산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개정
 - 영농기록에 환경 관련 활동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 환경가치 제고활동의 평가 근거로 활용함.
 - IT를 활용한 간략한 양식과 직접 기입하는 서류 작성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함.
-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을 고려한 인증 심사 규정 개정
 - 인증 심사과정에서 농업인의 활동에 대해 점수 또는 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일정 점수나 등급 이상이면 인증 승인을 하는 제도로 변경함.
- 인증 부적합 판정 체계 및 규정의 개정
 - 생산과정에서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을 고려한 인증 심사 시행 체계로 변경
 - 인증부적합 판정 시 농업인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벌칙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함.
- 인증 부적합 판정 시 재심사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증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를 원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현실성 있게 명확히 설정함
- 비의도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인증 규정 개정
 - 비의도적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다양하게 정의함.

- 비의도적 요인에 대한 농업인의 행동 수칙 개정
- 비의도적 요인에 따른 인증 영향을 고려한 구제방안 및 대응 수칙 개정

- 인증 심사원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 규정 개정
 - 인증 심사원의 농업 환경 관련 교육을 강화함.

(2) 인증 관련 정책 개편을 위한 고려 사항

- 국제적인 인증인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면적)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의 규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유기농산물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농업환경프로그램의 환경가치 평가 부분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
 -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수월하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활동 내용을 조정함.

(3) 종합

- 환경 가치 중심 인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세부 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정책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세부적인 제도 개혁 추진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2) 인증 체계의 지향 목적 명시 필요

□ 현황

- 현재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인증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에서 법의 목적 명시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라는 표현에 친환경농업을 통한 보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 인증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제시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의 목적에 환경가치 증진에 대한 부분과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목적이 환경 가치를 증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인증제도 개편 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의 목적에 친환경농어업의 환경보전 가치를 제고한다는 언급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임을 인식하고 농어업 일반에 대한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환경오염 저감에 관한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친환경농어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친화적 관리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함.
- 또한, 이 법 제19조의 내용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환경 관련 기준 및 잔류 농약 검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황

- 친환경농어업법은 제2조(정의) 1항과 3항에서 친환경농어업과 유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항)“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3항)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 제 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과 활동 촉진’, ‘화학자재의 사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출하 과정 조사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화학자재’를 검출하기 위한 조사 위주라 볼 수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생산, 출하과정 조사

- (1)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 (2) 조사 항목
 - ①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 ② 재배관리 상황 조사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물별 추천 시비량을 준수여부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
 - ③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유입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한다.
 -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④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 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 ⑤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 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 ⑥ 수확후 관리 상황 조사
 -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 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 ⑦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 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 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⑧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 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3)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2022,

http://www.nfcf.or.kr/forest/KoresDownload.tdf?file_path=/upload/20091026184544861033_1.hwp&del=

* 본문 12p의 내용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는 대부분 잔류 농약 검사 및 처리에 대한 민원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농업인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표본 샘플에 의해 실험실에서 검사한 잔류 농약 검출이 주로 인증 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물만으로 인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임.
- 특히, 화학자재의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검사한 결과 외에 현재 수행하는 서류, 현장심사시 농자재 사용·혼합 여부에서 원인 파악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 기준(친환경농어업법 제6조의 2 관련)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세부 사항 중 농약 관련 내용

| | |
|-----------------|------------------------------------------------------------------------------------------------------------------------------------------------------------------------------------------------------------------------------------------------------------------------------------------------------------------------------------------------------------------------------------------------------------------------------------------------------------------------------------------------------------------------------------------------------------------------------------------------------------------------------------------|
| 가. 일반 | 2)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되 그 기간은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
|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 <p>1) 재배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p> <p>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에서 제공하는 논토양 유기자재 처방서를 참고할 수 있다.</p> <p>9)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p> |

| | |
|----------------|------------------------------------------------------------|
| | 만, 배지의 원료에서 기인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 다. 재배방법 | 1) 화학비료·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라. 생산물 품질 관리 등 | 8)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마. 기타 | 7) 농장(포장) 내에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이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만이 제시되어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이러한 규정을 인증심사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서 실제 심사원들의 인증 승인 결정 권한은 약화되고 최종 검사기관의 권한만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잔류 농약 검사 규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은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 |
|---------------------------------------------------------------------------------------------------------------------------------------------------------------------------------------------------------------------------------------------------------------------------------------------------------------------------------------------------------------------------------------------------------------------------------------------------------------------------------------------------------------------------------------------------------------------------------------------------------------------------------------------------------------------------------------------------------------------------------------------------------------------------------------------------------------------------------------------------------------------------------------------------------------------------------------------------------------------------------------------------------------------------------------------------------------------------------------------------------------------------------------------------------------------------------------------------------------------|
| <p>○ 생산자들에게 '과정 중심 인증'이라는 용어가 공감을 얻게 된 이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억울한 생산자의 경우 본인의 친환경농업을 위한 노력(과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증품 판매 정지,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재의 인증제도 때문임. <p>○ 생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과정 중심 인증'과 대치되는 절차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오히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의 정직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한국인들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서구와는 차이가 있음. 코로나 검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동선을 추적조사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바엔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죽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서구의 의식이면 한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나와 내 가족이 위태롭게 되는 것보다는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보편적임. 즉,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의식이 서구보다 좀 더 높다고 인정해야 됨.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생략하거나 대폭 줄이는 것은 정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임. - 문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처리 방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생산 농가에게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오염이라 판단되면 검출치가 허용기준치의 1/20이하면 인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검출되어야만 인증품으로 인정되고 있음. -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친환경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을 고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함. - 국민 의식이 '개인의 안전' 보다 '자연 환경'에 우선 순위를 먼저 두는 서구인들에 비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의 불이익과 어려움은 일정 부분 감내하되 제5차 5개년 계획에 나온 대로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될 것임. |
|---------------------------------------------------------------------------------------------------------------------------------------------------------------------------------------------------------------------------------------------------------------------------------------------------------------------------------------------------------------------------------------------------------------------------------------------------------------------------------------------------------------------------------------------------------------------------------------------------------------------------------------------------------------------------------------------------------------------------------------------------------------------------------------------------------------------------------------------------------------------------------------------------------------------------------------------------------------------------------------------------------------------------------------------------------------------------------------------------------------------------------------------------------------------------------------------------------------------|

- 친환경농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잔류 농약 검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농업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12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친환경 표준매뉴얼을 공표한 바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친환경농업 수행 농업인들의 생물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화학자재의 함유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 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생산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생물 다양성 및 토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률에 농업인들이 생물 다양성과 토양 생태계 및 기타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함
 - 또한 세부 인증 심사 규정에 농업인이 생물 다양성, 토양 생태계 및 기타 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둘째, 잔류 농약 검사 규정을 친환경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검사를 위한 표본 선정 기준을 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새롭게 합리적으로 설정함.
 -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유기농산물 재배 기준에 외국정부와 IFOAM의 기준을 인정⁸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의 적용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 유기농산물 인증 검사 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증 규정 개편 필요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의 환경 관련 규정 추가 도입 관련

- 친환경농어업법의 관련 조항에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킨다는 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80)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나) 7)항의 가), 외국 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재배지: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역할) 부분에 추가 검토.

- 현재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없음.
-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가 화학합성 자재 사용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언급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제5조에서도 민간단체를 단지 생산, 유통,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시되어 있음.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서도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계획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즉, 이를 통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이 단지 산업으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 기타 다른 조항에서도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어업법이 환경보전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2) 세부 인증심사 기준에 환경 관련 규정 추가 도입 관련

- 세부 인증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생산의 각 단계에서 “생물 다양성 증대 및 토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은 그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기준에서 구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특히, 농업생산활동에서 구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영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심사기준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함.
 - 다만, 농업인이 유기농업을 수행하면서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함.
 - 실제, 유기농업 시행 농업인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농업생산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지속 하는데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인증 심사과정에서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수행 여부는 영농기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검사 과정에서 인증 심사원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농업인이 생물 다양성과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업생산과정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방법이나 가시적인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인증 심사원의 활동을 통해서 가능함.
- 따라서 인증 심사원에 대한 환경 관련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IFOAM의 인증 심사원 교육 메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농업인이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배과정을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있음.

4.3.3. Inspect Crops and Soil

심사원은 작물의 잔재, 양분투입물의 잔재, 잡초의 밀도, 작물의 건강 상태, 곤충, 투입 물질의 증거 및 상태, 냄새, 토양 등 작물과 필지의 관찰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적어 두어야 한다. 작물은 일관된 색상과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작물에 영양 결핍 징후가 있는가? 작물에 영양 과다의 징후가 있는가? 다양한 도서와 대학 출판물에는 작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사진이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현장 검사를 위해 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가지고 가지 못 했다면 생산자에게 삽을 빌려서 사용하면 된다. 흙을 파서 토양을 관찰하라. 토양이 경화되었는가? 침수되었는가? 쉽게 헤치고 잘 부서지는가? 흙의 냄새가 달고 부식질(산흙)의 향이 나는가, 아니면 윤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가? 흙에 투입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기 물질이 보이는가? 지렁이, 지렁이 배설물, 토양에서 서식하는 벌레, 연체동물, 선충류, 조류, 진균류 또는 방선균과 같은 생물체 활동의 징후가 있는가?

작물과 잡초의 뿌리 구조를 관찰하라. 약간의 잡초를 뽑아보라. 생산자 허락을 받고 작물을 삽으로 파내어 보라. 농작물과 잡초의 뿌리 침투력이 좋은지,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는지, 뿌리가 비뚤어졌는지, 뒤틀렸는지 관찰하라. 두과작물이라면, 뿌리에 결절이 관찰되는가? 잡초 근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잡초근락의 구성과 건강성을 보면 토양의 비옥도를 알아낼 수 있다.

- IFOAM 심사 메뉴얼

- 위에서 보는 것처럼 IFOAM을 비롯한 국제인증에서는 대부분 토양과 잡초, 작물의 상태를 보고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이행 정도를 평가함.
 - 수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가 토양과 작물에 나타날 수밖에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비의도적인 영향에 의해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즉, 인증 심사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더욱 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

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인의 환경가치 중심 이행점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잔류 농약 검사 관련 규정 개정 관련

-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표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
 - 현재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표본 선정 기준과 절차 및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그리고 현재 토양 샘플은 시비처방을 위하여 모든 농가들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토양 잔류 농약 검사는 현장심사과정에서 특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생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과정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영농기록에 대한 검사나 현장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인증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농약 검출 여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외국 사례에서는 농약 검사 관련 규정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 표본을 추출하여 농약검사를 시행함
 - 농약 검사를 위한 표본 선정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매년, 인증 받은 농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유기농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동등성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증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내에서 농약 검사를 강화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낮은 수준의 농약 검사를 시행한 유기농산물을 동등성 협약에 의해 수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우리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이 외국이나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국제적인 동등성 협상

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음.

4)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를 고려한 인증 승인 기준 개선

□ 현황

○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심사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별표 9 「인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관련)」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여기에 따르면, 일반기준, 개별기준, 행정처분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먼저 일반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2>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일반기준

| |
|----------------------------------------------------------------------------------------------------------------------------------------------------------------------------------------------------------------------------------------------------------------------------------------------------------------------------------------------------------------------------------------------------------------------------------------------------------------------------------------------------------------------------------------------------------------------------------------------------------------------------------------------------------------------------------------------------------------------------------------------------------------------------------------------------------------------------------------------------------------------------------------------------------------------------------------------------------------------------------------------------------------------------------------------------------------------------------------------|
|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p> <p>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p> <p>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p> <p>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금지·판매정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등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p> <p>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p> <p>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위반사항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제조·가공 또는 취급한 자, 품목, 제조·가공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을 말한다)</p> <p>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와 인증품등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p> |
|----------------------------------------------------------------------------------------------------------------------------------------------------------------------------------------------------------------------------------------------------------------------------------------------------------------------------------------------------------------------------------------------------------------------------------------------------------------------------------------------------------------------------------------------------------------------------------------------------------------------------------------------------------------------------------------------------------------------------------------------------------------------------------------------------------------------------------------------------------------------------------------------------------------------------------------------------------------------------------------------------------------------------------------------------------------------------------------------|

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9

○ 이의신청 절차, 재심사 내용 등이 법(제20조, 21조, 24조 등), 시행규칙(18조, 24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강조나 이를 장려하고 회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다음으로 개별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와 인증품에 대한 두 가지 취소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4-3>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결과 행정 처분 기준

가. 인증사업자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 3) 법 제19조 제2항 또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 | | |
| 가) 공통기준 | | | | |
|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 인증취소 | | |
| (1)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인증취소 | | |
| (1)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 인증취소 | | |
|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 | | |
|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 | 인증취소 | | |
|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3)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인증취소 | | |
| 다) 유기축산물 | | | | |
| 라) 유기양봉 제품 | | | | |
| 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 | | | |
| 바) 무농약농산물 | | | | |
| (1)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라목3)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인증취소 | | |

| | | | |
|-------------------------------------------------------------------------------------------------------------------------|---------|---------|------|
| (2)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3) (2)외에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 사) 무항생제축산물 | | | |
| 아) 취급자 | | | |

나. 인증품 등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 |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
| 3)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
|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

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9

○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과 ‘인증취소’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비의도적인 경우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처분에서 인증취소가 적용됨.

- 이와 같은 단순한 인증 취소 처분은 제품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일 경우는 타당한 방법일 수 있지만, “생물 다양성과 토양 생태계 및 기타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인증 심사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수행하는 생물 다양성 증진 및 토양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친환경농산물’만 생산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환경자원’을 생산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인증 심사를 하는 것임.

- 한편, 이러한 생산과정은 공공재인 ‘환경자원’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대, 수질과 대기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일정한 결합생산물로 생산함.
- 따라서 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과정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이러한 ‘환경자원’이 적절하게 생산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환경자원의 생산활동은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 외에 농업인들의 환경보전 활동을 일정한 점수나 등급으로 평가하는 체계 도입 검토도 필요

□ 주요 인증규정 개정 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의 세부 인증기준에 생산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환경 관련 영향을 농어업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가치 관련 규정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함.

- 외국 사례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정은 포괄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토양, 수질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별, 품목별로 적용 농법과 세부적인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모든 과정에서 적용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토양, 수질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만을 포함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을 인증하는 기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방법과 함께 환경자원 관리 방법까지 적용한다면 이중의 체계가 될 수 있음.

- 외국 사례에서 보면, 유기농업 지원 정책과 농업환경지원 정책은 서로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 개정 필요 내용 제시하면 ‘가, 일반’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함.

- 농지 주변의 환경자원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도록 함.
- 이러한 기록은 사전에 양식에 다양한 환경자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완적인 사항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가, 일반규정’ 4)항에 환경 관련 교육 및 환경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 여부를 일정한 점수나 등급으로 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함.

-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을 고려함.
 -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 생물 다양성 증대 및 수질오염을 고려하여 생산함을 인식해야 하는 문구 추가 필요
 - 유기 퇴비의 저투입을 통해서 토양 생태계 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 추가 필요
 - 이러한 인식의 정도를 일정한 점수나 등급으로 심사하도록 함.
- ‘다, 재배방법’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을 고려함.
 - 우선적으로, 재배과정에서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 생물 다양성 증대 및 수질, 대기 영향을 고려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 추가 필요
 - 1)의 규정 ‘화학비료,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추가 필요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가급적 저투입으로 유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인식하는 문구 추가 필요
 -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일정한 점수나 등급으로 심사하도록 함.
- ‘라,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을 고려함.
 - 우선, 농업인이 생산물 품질관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생산물의 운송 이전 단계까지만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후도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각 단계별로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만약, 판매 중인 농산물의 표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역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5) 위험평가 체계 도입 방안

□ 현황

-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에서는 위험평가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상황을 규정에 적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증심사 매뉴얼에서 검사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윤덕훈 외, 2018)
 - 주로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약 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를 위험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4-4> 인증 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 | |
|-------------|---------------------------------------------------------------------------------------------------------------------------------------------------------------------------------------------------------------------------------------------------------------------------------------------------------|-------------------------------------------------------------------------------------------------------------------------------------------------------------------------------------------------------------------------------------------------------------------------------------------|
|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폐수유입지역 • 원광석·고철 야적지 주변지역 •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 폐기물 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 금속광산 주변지역 •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 | 토양(잔류농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 •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 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 |
| 생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 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 신규 개인신청 농가 | |
| 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 |

자료 : 윤덕훈 외,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매뉴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p.65-66.

○ 결국, 친환경농어업법 제정 당시의 인식에 근거해서 여전히 최종 농산물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검사 외에도 국민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그러므로, 환경 보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의 위험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 방식을 도입함.

- 영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위험평가 체계 도입을 고려함.

- 위험평가 체계 도입 단계 중 필요하면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도 시행함.
 - 그러나 그 대상은 사전에 제시된 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해요인에 따른 평가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의 위해성에 관한 검사 절차, 기준은 다른 모든 식품 검사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게 친환경농산물에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함.
 - EU에서는 일반 식품 검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유기농산물 이행 점검 기준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에서 자국의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EU 규정 2017/625)
 - 특히 검사와 관련해서는 EN ISO/IEC 17025 on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서류검사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시각적 검사와 물리적 검사는 위해요인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인증 규정 개정 내용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기농산물 인증을 한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그리고 표본 추출에 의한 실험 검사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인증 심사는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자가 검사 표본을 채취하거나 농업인이 일정한 표본을 제출함.
 - 즉, 외국의 사례는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한 표본 추출과 실험 검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인증기관이나 관련 책임 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외국 규정이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실험 검사를 위한 ‘표본 추출 대상자를 최소한의 비율’(the minimum percentage of additional controls, as well as the minimum number of samples to be taken and of operators to be controlled within a group of operators)⁸¹⁾로 시행하는 것임.⁸²⁾
 - 즉, 표본 추출이나 실험 검사는 그 위험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81) EU 유기 생산과 표시에 관한 규정(EU 규정 2018/848) 서문 (117).

82) EU 유기 생산과 표시에 관한 규정(EU 규정 2018/848)의 제38조 3항에서는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면제조건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농약 검사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되는 농업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율로 표본 추출과 실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 평가 체계의 도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행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서류검사와 현장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비율에 대해서 실험 검사를 수행한다는 점을 친환경농어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에 ‘위험 평가 체계의 도입’과 ‘서류와 현장 검사를 통한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보전 활동을 점검한다는 것’과 ‘표본 추출과 실험 검사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비율로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것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법률에 포괄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세부 기준에서 매우 자세하게 실험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인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환경 가치 중심 인증체계’로 바꾸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위험평가 체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영국 사례를 참고함.

<Box 2> 영국의 위험평가 체계 시행 절차

1. 위험성 평가 단계 1 : 위해요인이란 무엇인가?(What are the hazards?)
 - 도보로 농장을 돌아보거나 근로현장을 관찰하면서 위해요인이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
 -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less obvious) 위해요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과거 사건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해볼 것.
 - 근로자들에게 위해요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위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것.
 - 위해요인 점검 시 장비에 대한 사용지침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기록들을 활용할 것.
 - 장기적인 위해요인과 명확하게 드러나는 안전 위해요인도 같이 고민할 것.
2. 위험성 평가 단계 2 : 피해를 받을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받고 있는가?(Who might be harmed and how?)
 - 위해요인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받게될 대상(ex-근로자, 일반시민, 미

숙련 근로자, 신규채용된 근로자, 방문객, 유지보수 관리자 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위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함. 예를 들어, 곡물 수확 시 발생하는 먼지를 흡입하거나 농장비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있을 수 있음.

3. 위험성 평가 단계 3 :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사전예방조치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Weigh up the risks and decide on precautions).

-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재 근로자가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what you are already doing), 작업장 내 위험요인 통제방법(the controls you have in place)은 무엇인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the way the work is organized)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
- 위 3가지를 관련 법령과 비교분석하여 미준수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하지만, 제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여야 함.
 - 덜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ex-화학물질 사용 시, 독성이 적은 물질로 교체)
 - 위험요인 접근 제한(ex-슬러리 저장공간 출입 통제 등(securing a slurry pit))
 -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방식 도입(ex-근로자와 위험요인(기계, 화학물질 등) 간에 장벽 등을 도입하여 공간을 분리할 것)
 -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할 것(ex-보호복, 보호신발 등)
 - 복지시설 제공(ex-응급조치장비,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한 샤워시설 등)

4. 위험성 평가 단계 4 :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것(Put the results into practice)

- 위험성 평가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농장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하고, 농장주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또는 관리통제수단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인지·이해하고 있어야 함.
 -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 시, 농장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5. 위험성 평가 단계 5 : 농장 내 관리통제수단 이행여부 확인 및 위험성 평가 결과 재검토(Check controls stay in place and review the assessment)

- 농장 내 관리통제수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위험성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일로부터 1년간 중대한 변화가 없었지만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거나 이를 놓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 농장 등에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할 경우, 위험성 평가를 받은 농장주는 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현재 IFOAM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업환경 지표에 관한 위험평가 사례를 참고함.

□ 농업환경 지표에 대한 위험평가 사례(IFOAM 심사매뉴얼)

| 지표 | 관찰 | 평가 |
|------|-----------------------------------------------------|-----------------------------------------------------------------------------------------------------------------------------------|
| 작물 | 1. 작물은 일관된 색상과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 1. 있는 경우 화학비료를 엽면시비 등으로 과다 사용 징후 등으로 판단(부정) |
| | 2. 작물에 영양 결핍 징후가 있는가? | 2. 있는 경우 화학비료 미사용 징후 등으로 판단(긍정) |
| | 3. 작물에 영양 과다의 징후가 있는가? | 3. 있는 경우 화학비료 과다 사용 징후 등으로 판단(부정) |
| 토양 | 1. 토양이 경화되었는가? | 1. 경화된 경우 유기물 부족,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판단(부정) |
| | 2. 침수되었는가? | 2. 10m이상 버퍼존이 없다면 농약 침투 가능성 의심(부정) |
| | 3. 쉽게 헤지고 잘 부서지는가? | 3. 토성에 따라서 관찰 필요 하나 충분한 유기물 투입의 증거로 판단(긍정) |
| | 4. 흙의 냄새가 달고 부식질(산흙)의 향이 나는가? | 4. 충분한 유기물 투입의 증거로 판단(긍정) |
| | 5. 윤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가? | 5. 유기물 부족 및 화학 자재 사용 정황(부정) |
| | 6. 흙에 투입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기물질이 보이는가? | 6. 충분한 유기물투입의 증거로 판단(긍정) |
| | 7. 지렁이, 토양에 서식하는 벌레, 연체동물, 방선균과 같은 생물체 활동의 징후가 있는가? | 7. 충분한 유기물투입 및 화학 자재 미사용의 증거로 판단(긍정) |
| 뿌리 | 1. 뿌리 침투력이 좋은지,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는지? | 1. 화학비료 미사용 정황으로 판단(긍정) |
| | 2. 뿌리가 비뚤어졌는지, 뒤틀렸는지? | 2. 바람이 심한 곳에서 생기는 현상, 시설 하우스에서는 염류집적 의심(부정) |
| | 3. 두과작물의 경우 뿌리에 결절이 관찰되는가? | 3. 바람이 심한 곳에서 생기는 현상, 염류집적 의심(부정) |
| 잡초 | 1. 잡초군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1. 잡초군락이 다양하고 건강하면 토양의 비옥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긍정) |
| 천적 등 | 1. 재배 포장에서 발견되는 천적 및 곤충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진딧물의 천적인 칠성무당벌레 등이 발견된다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판단(긍정) - 재배 포장에 거미, 잠자리, 지렁이, 우렁이 등의 동물이 존재한다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판단(긍정) |

6) 영농 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세부규정에 따르면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정보”는 인증 심사를 위해서 작성, 제출 및 제공해야 함
 -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일부만 생산할 경우 관련 자료를 최소한 2년 이상⁸³⁾ 보관하여야 함.
- 현행 제도하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은 많은 서류 작성을 요구받고 있음.
 - 현재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요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4-5>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서류의 종류

| 서류 종류 | 개인인증 | 단체인증 |
|--------------------------------------------------------------------------------------------------------------------------------------------------------------------------------------------------------------------------------------------------------------------------------------------------------------------------------------------------------------------------------------------------------------------------------------------------------------------------------|-------|------------------------------------------------------------------------------------------------------|
| 인증신청서 (생산자용) | 1 부 | 1 부 |
|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산물용) | 1 부 | 소속 농가별 1 부 |
| 경영관련자료 | 1 부 | 소속 농가별 1 부 |
| 사업장 경계면 표시 지도 | 1 부 | 소속 농가별 1 부 |
| (해당 시) 생산과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1 부 | 소속 농가별 1 부 |
|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관리자 지정 • 생산지침서 배부 • 소속 농가 교육 |
| 예비심사보고서(농산물용) | - | 소속 농가별 1 부 |
| 각종 분석결과 등 | 각 1 부 | 소속 농가별 각 1 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서류심사 방법 【II. 인증심사절차 - 4.1과 4.2】에 따라 지정된 인증심사원이 수행 •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 생산계획량 적정여부 확인 : 신청인의 3개년 평균 생산량, 작물별 생산량 통계(국가통계포털), 해당 지역 3농가 이상의 평균 생산량 등 확인 •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 | |

자료 : 윤덕훈 외,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매뉴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p.33.

83) 일반적인 자료를 어느 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일부 생산인 경우도 자료를 2년 이상하도록 해서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역시 부재함.

- 소위 영농기록이라고 하는 경영관련 기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4-6> 경영관련 자료 구입 내용

| | |
|-------------------------------------------------------------------|--------------------------------------------------|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 기록자료 | · 품목명 · 파종·식재일 · 수확일 · 자재명 |
|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 기록 자료 | · 일자별 사용량 · 사용목적 ·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기록 자료 | · 품목명 · 생산량 · 출하처별 판매량 |
|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 기록 자료 | · 자재명 · 일자별 구매량 ·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 구매 영수증 |

자료 : 윤덕훈 외,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매뉴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p.19.

- 이와 함께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다양한 증빙자료도 포함되어야 함.
- 여기에는 토양검정결과, 용수분석결과, 잔류농약분석서, 기타 자재 구입 영수증 포함됨.
- 결국, 매우 세부적으로 영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수질오염 등에 대한 영향은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현행 영농기록과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토양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 및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의 활동을 농업인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현재 과도하게 농산물 품질 제고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영농기록 작성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 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주요 인증 규정 개정 내용

- 영농기록과 함께 근거자료로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우선, 1년

이내에 실행한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그것도 국가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것이어야 함.

- 특히,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범위를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함.

○ 무엇보다도, 토양개량의 부분은 농업인의 자율적인 농사시행 영역이므로 인증체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오염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하면 되는 것임.

- 그런데, 농산물을 일정한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함.

- 따라서 토양검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해야 할 부분임.

○ 재배 용수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용수검정결과를 제시해야 함.

- 세부 실시요령 「별표2」 1-다-7에 총 8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규정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비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농업인이 자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도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농업기술센터나 인증기관에 통지하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재배과정에 자문없이 결과에 대해서만 인증기관이나 인정기관이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이와 같이 영농기록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농기록에는 농업인들의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해서 체크하는 문항이 전혀없다는 것이 문제임.

- 즉, 농업인들이 생물 다양성이나 토양 생태계 및 각종 오염과 관련해서 일정한 대비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는 것임.

- 재배과정에서 오염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다기 보다는 대부분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점검 위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농산물 생산 위주 영농기록 관련 체계를 환경 가치를 고려한 영농기록 방식을 추가하여 도입할 필요
-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농기록을 기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확산 시킬 필요가 있음.
 - 도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양식을 IT 기반으로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7) 비의도적인 요인 관련 규정 검토 필요

□ 현황

- 친환경 재배지가 관행 재배지에서 유입된 농약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경우 1차와 2차에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인증취소를 하고 있으나, 농가는 비의도적인 오염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함.
-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9월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중 4개 과제는 개선 완료하고 1개 과제는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음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제도개선 현황>

- 농관원 9개 지원에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운영 하여 인증 취소 등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확인조사 후 개선 조치('22.11월 시행)
- 비의도적 농약오염 확인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함 ('22.12월 시행)
- 농업인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제기 시 공정한 재심사 기회 제공을 위해 제3의 인증심사원이 재심사를 담당하도록 개정('23.2월 시행)
- 인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지표를 인증기관 평가항목에 반영('23.2월 시행)
- 농가가 비산오염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재심사를 요구하면 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재심사 요건 구체화(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중)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완료되고 현장에서 정착되면 그동안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해 현장 애로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인증기준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을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 하더라도 해당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할 수 없어 친환경농업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유기농산물 생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영향(비산 등)이나 현실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성농약 잔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토양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질과 대기오염을 감소시켜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을 강화하는 것임.
 - 따라서 인증 심사과정에서 농업인의 영농기록에 대한 점검과 현장 검사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며 생산한 것이 확인되면, 실험실의 잔류농약 검출결과에 따른 적합·부적합 판단 외에,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 즉, 인증기준을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이행을 더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주요 인증 규정 개정 내용

- 비의도적인 상황별 적용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그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시 국가별 적용기준을 참고하되, 각 나라별 재배환경과 여건 등이 다양하여 이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할 필요
 - 즉, 비의도적 상황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확인하고 국내 제반여건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농약검출 경위를 조사하여 비의도적인 요인에 의해 검출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절차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의도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증 대상 농가의 농업활동이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영농 활동 기록을 제시하고
 - 심사원이 영농기록을 통해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규정을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농지 주변 환경과 작물 생육 상태를 보완적으로 점검하는 현장 점검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농업인 스스로 이를 입증하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여 필요시 농관원, 농업 기술센터,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8) 인증 부적합 처리 방안 개정 필요

□ 현황

- 친환경농어업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증 재심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재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규정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제시되어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
|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심사를 원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세부 내용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제14조2(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제시되어 있음.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
| 제14조의2(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 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3.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를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 |

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③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요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
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3.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를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의 절차로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즉, 인증취소의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1조·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실시
2.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 영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징수 요청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 규칙 제25조 및 별표 5의3의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징수 요청
5. 기타 행정지도 사항 :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

○ 그러므로 현행 제도에서는 재심사에 관해 외국의 사례처럼 별도로 체계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즉, 기존의 심사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거치는 정도의 심사를 재심사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부적합 처분 규정의 영향

○ 이와 같은 현재 인증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은 주로 인증취소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절차의 미비에 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증취소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증 취소 처분이 행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반 공산품에서 “KS” 마크나 “품”자 인증 마크처럼, 일정한 기준에 제품이 도달하지 않으면 인증취소하는 방식과 개념을 그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적용하는 것임.
 - 이 경우에서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목적이 생물 다양성 증대나 생태계 보전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고품질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특히, 일반 공산품의 생산이 제조공정에서 일부 과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보충하거나 투입원료를 바꾸는 것에서 그 과정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업은 장기간의 생산과정에 대해서 이를 개선해야 하거나 또는 인근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산품에서의 인증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 이러한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 활동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수의 농민을 선발하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유기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은 되도록 자제하는 상황.
 - 고의로 인정기준을 위반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한하여 인증취소를 부여함.
 - 이는 유기농산물 인증의 목적이 유기농업 시행 농가의 수와 농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인증 규정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치도록 하지 않음.
 - 만약, 이들이 전환기간을 다시 거치게 되면, 별도의 큰 비용이 없이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 전환기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되는 재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토양이나 농산물 표본 채취하여 검사(분석)하는 것은 전체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서류검사와 현장방문 검사로 검사가 이루어짐
 - 만약, 허용물질 이외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 재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검사에 대한 표준방법을 모든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Skal Bio Controle, 유기농 인증업무)를 보면(유병덕 외, 2016), 인증 심사가 주로 위험평가에 따라 기준 이탈 위험이 큰 사업자에 관리 역량 집중하고 있으며, 부적합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함
- 첫째, 경부적합(輕不適合, Minor Non-Conformity):
 -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지만 시정이 필요한 부적합사항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면 인증이 유지됨. 일정 기간 또는 다음 심사 시에도 경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중부적합 사항으로 상향 적용함. 대부분의 중부적합 사항은 경부적합 사항이 부실하게 시정되어 제기된 것임.
 - 예) 유기 인증을 받지 않은 출처에서 자재(가축, 종묘 등) 구입
 - 예) 제품 표시(Label) 및 거래 문서 관리 부실
- 중부적합(重不適合, Major Non-Conformity):
 - 제품 또는 유기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으로 인증기관은 최대 3개월의 시정조치 기한을 제시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 부적합사항으로 전환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할 수 없음.
 - 예) Skal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관행 종자 또는 관행 모종을 사용한 경우
 - 예) 유기가공 공정에서 비유기 원료의 잔류물과 혼입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리점(Control Point)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 결정적 부적합(Critical Non-Conformity):
 - 유기농 원칙을 위반하여 제품 생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함.
 - 예) 농장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한 경우
 - 예) 유기가공 공정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투입된 경우, 해당 로트(Lot)의 제품만 인증취소 할 수 있음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인증취소 처분은 기본적으로 '영농기록'을 포함하는 서류 검사와 현장 검사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되도록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인증 심사원이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작물 생육상태, 주변 환경자원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잔류농약 검출유무보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증규정 위반의 경우, 발생 원인별 처분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도입 필요

- 즉,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인증규정 위반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의 경중으로 고려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의도적/비의도적 위반으로 구분함.
- 또한, 태만/과실/중과실/고의 위반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함.

○ 각 상황에 대해 벌칙 내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큰 문제가 없는 한, 해당 농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친환경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사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재검사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예를 들면, 2개월 이하)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심사기관 이외에 재검사를 담당할 제3의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제시 권한 부여하여 농업인들이 판정 결과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어야 함

9) 심사원의 권한 강화

□ 현황

○ 현재 친환경농어업법 제2절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제26조~29조까지 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제32조와 33조에 추가 규정을 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절의 제 32~43조까지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심사원 관련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인 내용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제시되어 있고, 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도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음.

○ 세부적인 인증기관의 자격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에 제시되어 있음.

- 인력 및 조직, 시설, 인증업무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또한 인증심사원 자격 규정(제39조 제1항 관련)도 「별표 11」과 「별표12」에 제시되어 있고, 취소 관련 규정도 「별표 13」에 제시되어 있음.

○ 인증 심사원의 세부적인 업무 기준은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 윤덕훈 외, 2018.

- 인증기관의 현황에 대한 연구(유병덕 외, 2016)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문제를 인증기관 신뢰성 저하, 인증기관의 낮은 국제 경쟁력, 인증기관의 영세성, 인증기관 간의 과당 경쟁, 인증기관 신뢰성 개선 동기의 부재 등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방법에 대한 연구(유병덕 외, 2018)에서는 인증 심사원의 육성과 관련해서 물리적 관찰 방법의 훈련, 기만행위 적발 및 대처 요령의 숙지, 위험평가 및 유기관리 이론 숙지, 그리고 추적심사의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업무에서의 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기존 보고서를 참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 인증제도 개편 방향

- 환경 가치 중심 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심사원들이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즉, 생산 과정에서 농업인의 환경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농가 현장심사에서 심사원이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인증심사를 통해서 서류 및 현장검사 수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원이 판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판정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10) 잔류 농약 기준 개정 필요

□ 각 국가의 잔류농약 검사 특징

(1) EU

- EU는 전체 회원국을 대표해야 하는 특성상, EU 규정 자체에서는 별도의 잔류 농약 검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국가별로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특히, 회원국이 잔류 농약 검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EU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U는 일반 농산물 검사절차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에 관한 검사절차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5조)
 - 여기서 유기농산물 인증에 관한 문서, 현장, 물리적 검사 규정도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검사 규정에 실험실 검사를 위한 샘플 획득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2) 영국

- 영국은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을 유기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에 적용하고 있어서 유기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
 - 다만,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유기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있음.

(3) 일본

- 일본도 일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치를 유기농산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영국과 동일함.

(4) 미국

- 미국은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에 대해 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치의 5% 이내(MRL 1/20 이내)로 검출되어야 함을 적용하고 있음.

(5) 종합

- 결과적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심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점검은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영국과 일본이 일반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그대로 유기농산물 인증 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독일은 0.01ppm 이하, 이탈리아는 불검출, 미국은 일반 농산물 허용치의 5% 이내로 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잔류농약 기준이 엄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유리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나 경쟁력 등도 고려할 필요

□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관점

- EU,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잔류 농약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환경, 토양, 생태계 등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농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 농산물보다는 낮은 수준이면, 그런 농법 자체가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임.

□ 잔류농약 기준 관련 인증 규정 변경에 대한 홍보 관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용과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 필요
- 잔류 농약보다는 환경살리기에 유기농업이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 필요

V. 맺음말

□ 국제적인 인증인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편 필요

- 유기농산물 인증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농산물 인증제도임.
 -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이와 같이 국제적인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유기농산물 인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음.

- 특히, 유기농업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대,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로 고품질 식품 생산위주로 역점을 두는 면은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환경 가치 중심’ 인증제도로 변경하면서 차제에 유기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친환경농업의 환경 관련 활동 규정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사례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 동안에는 농업환경정책에서 일반 농가에게 주는 보조금 이상의 금액으로 유기농업 전환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기농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소액의 유기농업 지속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외에 유기농업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참여 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즉, 유기농업은 농가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월하게 농업환경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도 농업환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과는 별도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렇게 해야 친환경농산물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연오, 2005,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개선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 김명호·오승용·최성욱·이현성·김유리·오정민·김혜현·권은지·이슬이·이슬기·강나을·최수진, 2017,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김우선 외, 200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우선, 2006,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국내외 현황”, 『식품과학과 산업』, 9월호.
- 김창길,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방안”, 친환경/GAP 인증제 발전 방향 워크숍 자료.
- 김태연, 2004, “영국 유기농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시사점”,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2권 3호, 333p-343p,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태연, 2008, “EU 유기농업정책의 개혁과정 분석 및 시사점”,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 16권 4호, pp349-366,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태연, 2015, “EU 농업환경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23권 3호, p.401-421,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태연, 2018, “농업환경의 개념에 관한 법률적 논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26권1호, p.83-97,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태연·김배성·이명현·박재홍, 2014,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농식품부 연구용역.
- 김태연·배민식·이명현, 2019. 『공익형 직불제 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농식품부 연구용역, 단국대학교.
- 김태연·이관률·조영주, 2017, 『선진국 농촌자원관리정책의 현황과 법률운영체계: EU 와 영국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국회입법조사처.
- 김태연·이정환, 2020,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 직불제 및 농촌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국회입법조사처.
-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2025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박정수, 2006, “외국의 유기농업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유기농업연구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 박종서(2015). “저농약 인증 폐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논단.
- 법제처(20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손상목, 2003,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농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단국대학교.
- 신용광·박진기(201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신뢰도 제고방안: 민간인증기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농수산연구지』, 17(1) p.113-124,
- 신용광·황윤재(2007),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R5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병덕·김난영·이승영·김호·양성범·L. Coody·作吉むつ美(2017), 『해외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 유병덕·김난영·이승영·이선헌(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방법론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 유병덕·유진채·김난영·차성령(2016),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 윤덕훈·오소영·남기웅,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매뉴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환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영아·성재훈·정학균·추성민, 2020,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기능 강화 방안 연구』, C2020-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학균·문동현(2013).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동근, 2021,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 개정 경과 및 의의”, 「故서종혁박사 1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한국유기농업학회 학술토론회」, 2021.08.12. 한국유기농업학회.
- 최윤실, 201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현황과 전망』, 국내IP 환경동향보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관리 방안』,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 Agence BIO, 2019, *Organic farming and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Agence BIO.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online consultatio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Brussel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2004) 415 final, 10.06.2004, Brussel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EC(2004) 739, 10.06.2004, Brussel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17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amending Regulations (EC) No 999/2001, (EC) No 396/2005, (EC) No 1069/2009, (EC) No 1107/2009, (EU) No 1151/2012, (EU) No 652/2014, (EU) 2016/429 and (EU) 2016/2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Regulations (EC) No 1/2005 and (EC) No 1099/2009 and Council Directives 98/58/EC, 1999/74/EC, 2007/43/EC, 2008/119/EC and 2008/120/EC,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854/2004 and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89/608/EEC, 89/662/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and 97/78/ EC and Council Decision 92/438/EEC (Official Controls Regulation)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19, *Organic farming in the EU: A fast growing sector*, EU Agricultural Markets Briefs. No 13, March 2019, 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20, *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20.5.2020, COM(2020)381 final, Brussel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21, *On the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 SWD(2021) 65 final, 19.4.2021, COM(2021)141 final/2 Brussels.
- Fibl & IFOAM, 2021,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Frick and Bonn.
- Lampkin, N., C. Foster, S. Pader & P. Midmore, 1999, *The Poli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Organic Farming in Europe*, Hohenheim.
- Weissenberger, J., 2015, *Organic production and the European Union, In-Depth Analysi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

영국 토양 협회(UK Soil Association), 'Organic Standards for Great Britain
Farming and growing(2022)'

영국 인정청(UKAS) 홈페이지(www.ukas.com)

영국 토양협회 홈페이지(www.soilassociation.org)

영국 토양협회 '생명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 홍보 홈페이지(www.foodforlife.org.uk)

붙임 1 | 작물 재배 계획 양식(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가.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 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You can record the details of how you ar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tandards 2.5 (Fertilisers and soil conditioners) and 2.6 (controlling pests and disease) in this 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Please submit this to your certification officer for review and keep an up to date copy on file for your inspection.

Licence Number:

Date Completed/ of last review:

Name and position in business:

1. Please detail your planned crop rotation(s) below:

| |
|--|
| |
|--|

Crop inputs:

2. Do you use the following strategies to build and maintain fertility?

| | |
|-----------------------------------------------------------|--------------------------|
| Varied crop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Including legumes in the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Including green manures in the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Application of livestock manure or other organic material | <input type="checkbox"/> |

Other:

| |
|--|
| |
|--|

| |
|--|
| |
|--|

3. Standard 2.5.1 allows the use of a restricted list of fertilisers and soil conditioners if the measures and practices required in standard 2.4.1 are not adequate to meet the nutritional needs of your plants.

You must keep records to demonstrate why you need to use these products, this could include soil analysis, nutrient budgeting or foliar symptoms.

Please list below inputs that you may use throughout the growing year:

| Input (brand name if appropriate) | Name | Crop | How will you identify a need for use of this supplementary nutrient? | Maximum quantity of nutrient applied per ha. | How is the nutrient, application method and timing appropriate to your soil type and crop needs? |
|------------------------------------------|------------------------------------|-------------------------------------|-----------------------------------------------------------------------------|-----------------------------------------------------|------------------------------------------------------------------------------------------------------------------------------------------------------|
| <i>(Example)</i> | <i>PAS 100 Green Waste Compost</i> | <i>Potatoes (prior to planting)</i> | <i>Nutrient budgeting.</i> | <i>8 tonne fresh weight/ ha</i> | <i>Nutrient budget used to quantify crop offtake and match application rate to the crops needs. Application made early spring prior to planting.</i> |
| | | | | | |
| | | | | | |
| | | | | | |

Plant protection products

4. Standard 2.6.1 requires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your organic system to rely primarily on organic preventative measures and practices to control and prevent damage caused by pests, diseases and weeds.

Please indicate below which strategies you use for pest and disease management on your farm:

| | |
|-----------------------------------------------------------------------------------------|--------------------------|
| Creating fertile soils with high biodiversity | <input type="checkbox"/> |
| Choosing appropriate species and varieties resistant to pests and diseases | <input type="checkbox"/> |
| Grafting onto resistant rootstock | <input type="checkbox"/> |
| Appropriate crop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Protecting and encouraging natural enemies of pests/ introducing natural predators | <input type="checkbox"/> |
| Mechanical and physical methods of control. | <input type="checkbox"/> |
| Managing planting dates for greater pest and disease control | <input type="checkbox"/> |
| Pre-emergence and post-emergence mechanical weeding | <input type="checkbox"/> |
| Thermal processes | <input type="checkbox"/> |
| Using steam to sterilise buildings and equipment | <input type="checkbox"/> |
| Using good husbandry and hygiene practices to limit the spread of any pests or disease. | <input type="checkbox"/> |

Other:

5. Standard 2.6.2 allows the use of a restricted list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if plants cannot be protected by the organic preventative measures and practices described in 2.6.1

You must keep records to demonstrate why you need to use these products.

Please list below the plant protection products that you may use throughout the growing year:

| Plant Protection Product – Active Ingredient | Crop | Target pest or disease | Application Method | Rate and | How are pest and disease levels monitored? | Threshold for use. |
|----------------------------------------------|------|------------------------|--------------------|----------|--------------------------------------------|--------------------|
|----------------------------------------------|------|------------------------|--------------------|----------|--------------------------------------------|--------------------|

| | | | | | |
|-----------------------------------|---------------|--------------|---------------------------------------------------------------|-----------------------------------------------------------------------------|---------------------------------------------------------|
| <i>(Example)</i> Ferric phosphate | <i>Salads</i> | <i>Slugs</i> | <i>5kg/ha to be surface spread between cultivated plants.</i> | <i>Crop damage is monitored as percentage of leaf surface area damaged.</i> | <i>When there is > 30% crop damage due to slugs.</i> |
| | | | | | |
| | | | | | |
| | | | | | |

6. Please describe how when using any plant protection products, you prevent damage to non-target species: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plan, please return this to the producer certification team at cert@soilassociation.org or post it to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AD.

붙임 2 | 심사 신청 서류(영국 토양협회 사례)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arming & growing**



You can email this form to goorganic@soilassociation.org. For help please call 0117 914 2406

| Main holding under your management | | | |
|------------------------------------|--|-----------------------------------------------------------|--------------------------|
| Your name | | Fax | |
| Trading | | Mobile | |
| Farm name | | Email | |
| Road/lane | | Holding number | |
| Town | | Conversion start date* | |
| County | | Land for | hectar |
| Postcode | | Total farm size | hectar |
| Telephone | | LFA/SDA (Less Favoured Area/Severely Disadvantaged Area)? | <input type="checkbox"/> |

*Your conversion date starts the date we receive your application - if you wish to start later, please record your preferred start date above.

| | |
|--------------------------------------------------------------------------------------------------------------------|--------------------------|
| My invoicing and/or correspondence address is different from above and I have enclosed/ attached details | <input type="checkbox"/> |
| I enclose an RPA/OS map of the holding/s with fields for conversion marked | <input type="checkbox"/> |
| I am transferring my licence from another certification body and enclose my current certificate and field schedule | <input type="checkbox"/> |

| Additional holdings under your management | | If not applicable move to next section | |
|-------------------------------------------|--|----------------------------------------|----------|
| Farm name | | Land for conversion | hectares |
| Holding number | | Total farm size | hectares |
| Distance from your main holding: | | LFA/SDA? |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ADX
T 0117 914 2400 F 0117 314 5046 E goorganic@soilassociation.org W 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

Reference number: C1673fm

Version No: 10

Issue date: March 2022

| | |
|-----------------------------------------------------------------------------------------------------------------------------------------------------------------------------------------------------------------------------------------------------------------------------------------------------------------------------------------------------------------------------------------------------------------------------------------------------------------------------------------------------------|------------------------------------------------|
| I am applying for organic certification for site(s) in: | |
| <input type="checkbox"/> England, Wales, Scotland, Channel Islands | <input type="checkbox"/> Northern Ireland |
| I am applying for organic certification to the following standard: | |
| <input type="checkbox"/> Soil Association Organic Standards | Other: <i>Click or tap here to enter text.</i> |
| I am applying for organic certification of the following activities: | |
| <input type="checkbox"/> Farming / growing (farming and growing standards) <input type="checkbox"/> Wild harvesting (farming and growing standards) <input type="checkbox"/> Vegetative propagating material / seeds for cultivation (farming and growing standards) <input type="checkbox"/> Local abattoir scheme (abattoirs and slaughtering standards) <input type="checkbox"/> On-farm processing / packing (food and drink standards) Other: <i>Click or tap here to enter text.</i> | |
|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your operation and include details of the enterprises that you wish to be certified, below: | |
| | |
| Do you intend to have organic and non-organic enterprises on the same holding once organic conversion is complete or at another time in the future? | |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 If yes, you will need to discuss the requirements with a member of the producer team as this could have implications for your organic licence. | |

| | | | |
|-----------------------------------------------------------------------------------------------------------------------------------------------------|---------------------------------------|-----------------------------------------|----------------------------------|
| Red Tractor Assurance & Farm Assured Welsh Livestock inspection services | | | |
| We offer various farm assurance inspection services in the UK. Please tick the services you are interested in and we will contact you with details. | | | |
| RTA Cattle <input type="checkbox"/> | RTA Sheep <input type="checkbox"/> | RTA Cereals <input type="checkbox"/> | FAWL <input type="checkbox"/>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ADX
 T 0117 914 2400 F 0117 314 5046 E goorganic@soilassociation.org W 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

Reference number: C1673fm

Version No: 10

Issue date: March 2022

| Details of any organic certification held previously | |
|---------------------------------------------------------------------------------------------------------------------------------------------------------------|----------------------------------------------------------|
| Do you currently or have you previously held organic certification?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If yes, with which certification body? If you are no longer certified when did certification cease? | |
| Have you ever had organic certification denied or revoked?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If yes, with which certification body and when? | |
| Are there any prosecutions, previous or pending, relating to your business or holding which may have a bearing on your application for organic certification?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 |

| Supplier Lists |
|------------------------------------------------------------------------------------------------------------------------------------------------------------------------------------------------------------------------------------------------------------------------------------------------------------------------------------------------------------------------------------------------------------|
| We publish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bout our licensees on the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website. We are often asked by other licensees and consumers to help source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censed products or activities. We search our database for the products or type of businesses they are looking for and provide them with a company name, postal address and email address. |
| If you would prefer your business not to be on the website nor on any Supplier Lists, then please tick this box. <input type="checkbox"/> |

| Payment, contract and your declaration | |
|------------------------------------------------------------------------------------------------------------------------------|--|
| Our fees are based on the licence you are applying for and are payable on application and annually | |
| We will normally charge for any additional inspections we have to carry out when organic production rules have not been met. | |
| Your certificate will have a renewal date one year from the date of your application | |
| All fees are subject to VA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levant fee sheets attached | |
| If you would like to arrange to pay in installments by credit agreement, please contact us on 0117 914 2456 | |
| VAT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 |
| Purchase order number (if applicable) |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DX
 T 0117 914 2400 F 0117 314 5046 E goorganic@soilassociation.org W 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

Reference number: C1673fm

Version No: 10

Issue date: March 2022

| | |
|--------------------------------------------------------------------------------------------------------------------------------------------------------------------------------------------------------------------------------------------------------------------------------------------------------------|--------------------------|
| Your contract | |
| A signed certification contract is required for us to process your application. The template contract is enclosed with your application pack. Contracts must be signed by hand and can be returned to us as a scanned copy or paper copy. We will countersign the contract and return a scanned copy to you. | |
| I have enclosed a signed certification contract | <input type="checkbox"/> |

| | |
|---------------------------------------------------------------------------------------------------------------------------------------------------------------------------------------------------------------------------------------------------------------------------------------------------------------------------------------------------------------------------------------------------------------------------------------------------------------------------|--------------------------|
| Your declarat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ll the information supplied in this application is accurate • I/we have full management control of all land and enterprises detailed in this application • I/we have read and agree to comply with the qualifying standards and any applicable updates • I/we understand that SA Certification is obliged by law to publish a full list of its licensees | |
| I have completed this form electronically and confirm I am in agreement with the declaration above | <input type="checkbox"/> |
| Signature | Date |

| | |
|----------------------------------------------------------------------------------------|--------------------------|
| Before you return your application, have you remembered: | |
| To enclose your RPA/OS maps | <input type="checkbox"/> |
| To enclose a completed copy of the field details and crop codes form | <input type="checkbox"/> |
| To enclose your current certificate and field schedule - if transferring your licence? | <input type="checkbox"/>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ADX
 T 0117 914 2400 F 0117 314 5046 E goorganic@soilassociation.org W www.soilassociation.org/certification/

Reference number: C1673fm

Version No: 10

Issue date: March 2022

붙임 3 | 작물 재배 계획 양식(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1.2.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 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You can record the details of how you ar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tandards 2.5 (Fertilisers and soil conditioners) and 2.6 (controlling pests and disease) in this 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Please submit this to your certification officer for review and keep an up to date copy on file for your inspection.

Licence Number:

Date Completed/ of last review:

Name and position in business:

7. Please detail your planned crop rotation(s) below:

Crop inputs:

8. Do you use the following strategies to build and maintain fertility?

| | |
|-----------------------------------------------------------|--------------------------|
| Varied crop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Including legumes in the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Including green manures in the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Application of livestock manure or other organic material | <input type="checkbox"/> |

Other:

9. Standard 2.5.1 allows the use of a restricted list of fertilisers and soil conditioners if the measures and practices required in

standard 2.4.1 are not adequate to meet the nutritional needs of your plants.

You must keep records to demonstrate why you need to use these products, this could include soil analysis, nutrient budgeting or foliar symptoms.

Please list below inputs that you may use throughout the growing year:

| Input Name (brand name if appropriate) | Crop | How will you identify a need for use of this supplementary nutrient? | Maximum quantity of nutrient applied per ha. | How is the nutrient, application method and timing appropriate to your soil type and crop needs? |
|-----------------------------------------------|-------------------------------------|-----------------------------------------------------------------------------|-----------------------------------------------------|------------------------------------------------------------------------------------------------------------------------------------------------------|
| <i>(Example) PAS 100 Green Waste Compost</i> | <i>Potatoes (prior to planting)</i> | <i>Nutrient budgeting.</i> | <i>8 tonne fresh weight/ ha</i> | <i>Nutrient budget used to quantify crop offtake and match application rate to the crops needs. Application made early spring prior to planting.</i> |
| | | | | |
| | | | | |
| | | | | |

Plant protection products

- 10. Standard 2.6.1 requires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your organic system to rely primarily on organic preventative measures and practices to control and prevent damage caused by pests, diseases and weeds.

Please indicate below which strategies you use for pest and disease management on your farm:

- 11. Standard 2.6.2 allows the use of a restricted list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if plants cannot be protected by the organic

| | |
|-----------------------------------------------------------------------------------------|--------------------------|
| Creating fertile soils with high biodiversity | <input type="checkbox"/> |
| Choosing appropriate species and varieties resistant to pests and diseases | <input type="checkbox"/> |
| Grafting onto resistant rootstock | <input type="checkbox"/> |
| Appropriate crop rotation | <input type="checkbox"/> |
| Protecting and encouraging natural enemies of pests/ introducing natural predators | <input type="checkbox"/> |
| Mechanical and physical methods of control. | <input type="checkbox"/> |
| Managing planting dates for greater pest and disease control | <input type="checkbox"/> |
| Pre-emergence and post-emergence mechanical weeding | <input type="checkbox"/> |
| Thermal processes | <input type="checkbox"/> |
| Using steam to sterilise buildings and equipment | <input type="checkbox"/> |
| Using good husbandry and hygiene practices to limit the spread of any pests or disease. | <input type="checkbox"/> |
| Other: | |

preventative measures and practices described in 2.6.1

You must keep records to demonstrate why you need to use these products.

Please list below the plant protection products that you may use throughout the growing year:

| Plant Protection Product – Active Ingredient | Crop | Target pest or disease | Application Method | Rate and | How are pest and disease levels monitored? | Threshold for use. |
|-----------------------------------------------------|---------------|-------------------------------|-----------------------------|-----------------|---------------------------------------------------|------------------------------------|
| <i>(Example) Ferric</i> | <i>Salads</i> | <i>Slugs</i> | <i>5kg/ha to be surface</i> | | <i>Crop damage is monitored</i> | <i>When there is > 30% crop</i> |

| phosphate | | | <i>spread between cultivated plants.</i> | <i>as percentage of leaf surface area damaged.</i> | <i>damage due to slugs.</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Please describe how when using any plant protection products, you prevent damage to non-target species: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plan, please return this to the producer certification team at cert@soilassociation.org or post it to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imited, Spear house, 51 Victoria Street, Bristol, BS1 6AD.